

2015. 11.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 제도화 방안

연구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제 출 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 제도화 방안」의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5년 11월

연구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책임자: 이 계 임 (선임연구위원)

연구참여자: 최 종 우 (부연구위원)

연구참여자: 한 정 훈 (연구원)

연구참여자: 허 성 윤 (연구원)

연구참여자: 제 철 응 (한양대학교)

요 약

연구의 배경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은 2000년대 초반 ‘1사1촌 운동’을 시작으로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육성사업이나 농촌사회공헌인증제 등을 통해 추진되어 왔지만, 중소기업에 제한적으로 실시되거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에 국한되어 왔다. 하지만 농촌지역 인구 감소와 고령화, FTA로 인한 시장개방, 식량안보 등 농업의 위기감이 고조됨에 따라 농업과 타 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협업모델 구축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2013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우리 농산물의 안정적인 수요 확대를 위해 농업과 식품기업간의 상생협력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2014년에는 ‘농식품 상생협력 추진본부’를 설치함으로써 농업계와 기업 간의 연계 시스템을 통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확산을 유도하고, 농업계와 기업 간의 상생협력 추진 기본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는 농업과 기업의 협력이 지속되기 위해서 기업이 사회에 기여하는 경제적 파급효과 측면도 고려한 각종 인센티브 마련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농업과 식품기업 간 상생협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률 및 제도적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의 구성과 방법

이 연구는 ①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 추진배경과 필요성, ② 상생협력 관련 법률 및 정책 현황, ③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 추진실태와 성과 평가, ④ 국가별 상생협력 법률 및 제도현황, ⑤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 제도화 방안 등의 부문으로 구성하였다.

상생협력의 이론적 검토와 추진현황 파악을 위해 관련 문헌 및 자료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농업과 기업 간 상생협력 사례 조사를 위해 정부, 관련 기관, 기업체, 농업경영체, 연구자 등을 대상으로 자문회의와 협의회를 개최하였고,

상생협력의 실태 파악 및 효과, 정부 역할 등을 조사하기 위해 기업체 조사, 농업법인체 조사, 농가 조사, 소비자 조사 등 총 네 건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주요국의 상생협력 관련 법률 검토와 국내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 법제화 방안 마련은 한양대학교 법학대학원의 제철웅 교수에게 연구를 위탁하였으며, 일본의 농업과 기업간 상생협력 관련 정책현황 및 사례 조사는 김태곤 박사가 담당하였다.

연구결과 및 시사점

농업과 기업 간 상생협력 관련 법률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주관부처에 따라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경우 “농지법”과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대표적이며, 산업통상자원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최근 들어 정부주도 하의 농업과 기업 간 상생협력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2014년 농업미래성장산업 대토론회(11.19)와 경제부처 정책점검회의(10.6)를 계기로 농업계와 기업 간의 상생협력 기반 구축을 위해 다양한 협력 부문에서 MOU가 체결되었으며, 대한상공회의소와 농림축산식품부, 농협중앙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공동으로 ‘농식품 상생협력 추진본부’를 설치하여 농업계와 기업간의 상생협력 추진 기본방안을 마련하였다. 2015년 9월에는 상생협력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그 동안의 상생협력 추진 성과에 대해 조명하였으며, 향후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와 6차산업화지원센터, 중소기업지원센터 등과 연계한 포괄적인 상생협력 추진을 계획 중에 있다.

이 연구에서는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을 광의의 개념에서 기업의 농촌사회 기여(CSR), 기업의 농업법인 설립, 농업에서 융복합산업화: 6차산업화 포함, 농업과 기업의 협력활동으로 구분하고, 협의의 개념인 농업과 기업 간 협력활동(농산물의 생산 및 판매과정에서의 농업과 기업의 협력활동, 농업과 기업의 공동투자활동)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상생협력 활동 분야는 생산(가공/외식)

분야, 유통분야, 수출분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상생협력 내용은 사회적 책임활동, 원료 구매, 농자재 지원, 판로 및 마케팅(교육, 홍보 등) 지원, 제품/기술 개발, 자본 투자로 나눌 수 있다. 상생협력 분야와 협력 내용을 기준으로 유형을 구분한다면 ① 사회공헌형, ② 단순계약 원료구매형, ③ 농자재 지원 원료구매형, ④ 국내 판로지원형, ⑤ 수출협력형, ⑥ 기술제휴형, ⑦ 공동출자형 등 7가지 유형으로 구분 가능하다. 상생협력의 농업 부문 지원대상으로는 법인, 생산자단체/조합, 지방자치단체 공사 등을 설정하였으며, 기업부문 지원대상은 규모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상생협력 참여 주체는 농업-기업, 농업-기업-연구기관(대학, 연구소 등), 농업-기업-지방자치단체(중앙정부), 농업-기업-연구기관-지방자치단체 등의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미국과 일본, 유럽 등 주요국에서도 상생협력을 위한 법률과 제도적 방안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미국은 B-Corp(Benefit Corporation) 법안 등 공유가치 창출을 위한 제도적 여건이 구축되어 있으며, 특히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에 대한 인증제도를 실시하고 관련 항목에 생산자 조직형태와 소규모 농민으로부터의 농산물 공급 여부, 인증농산물의 비중 등의 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농상공연계를 중심으로 정책자금부터 제품개발 및 시장 개척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농업관련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일본 정부의 정책방향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유럽 또한 기업의 재무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를 동시에 고려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으며, 영국과 독일 등에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미국과 일본, 유럽의 농업과 기업 간 상생협력 사례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 미국은 사회공헌형과 원료구매형의 중간 형태인 ‘General Mills’와 사회공헌형(CSR) 형태인 ‘코카콜라’ 등의 경우가 대표적이며, 일본에서도 원료조달 형태인 코지마농업생산법인과 카모네, 대형 유통업체의 농업참여 유형인 세븐팜 토마시토, 건설업의 농업참여 형태인 (유)다나카건축공업(田中建材工業)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 유럽에서도 네슬레와 신젠타의 경우가 사회공헌형의 농업과 기업 간 상생협력 사례로 나타났다.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 제도화 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농업과 기업의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지속적인 공동노력이 전제되어야 하며, 정부 또한 기업들이 상호 신뢰 속에서 협력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법률, 추진체계, 협력기반 마련을 중점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추진체계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배정하며, 상생협력 추진본부는 중간지원조직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정·위탁 사업 등 사업 전반을 담당한다. 지역 확산을 위해 시·도별로 지역상생협력본부(가칭)를 설치하여 지역별 상생협력 이행 관리, 사례 발굴, 정보 공유 등의 역할을 수행하여 지역단위 협력의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 활성화를 위해 ① 협력 강화, ② 기반 조성, ③ 공정거래 확산의 3개 분야에 있어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협력 강화를 위해 상생협력 협약의 체계화, 성과공유제 실시, 상생협력 펀드 운영, 동반성장지수 개선 등의 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하며, 기업에 대한 지원사업(기술/자금지원, 판로/마케팅 지원, 컨설팅/교육 확대 등)과 규제 개선(대기업의 농업분야 투자 관련 규제 개선, 특구지역 대기업 진입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기반조성 방안으로는 농업경영체 역량강화, 상생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사회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공정거래 확산을 위해서 표준계약서 보급 추진,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 등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 법률안으로 가칭 ‘농업과 기업 상생협력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이라는 독립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과 식품산업진흥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기타 개별 법률에 상생 관련 규정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특별법을 제정하는 제1안은 단일한 법률에 상생협력과 제반 규정을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정책 목표를 분명히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별도 특별법 제정으로 유사정책이 여러 법률에 규정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개별 법률을 개정하는 제2안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식품산업진흥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 관련 조항을 개정 및 추가하는 방식으로 유사 규정이 분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반면, 다수 개별 규정을 개정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차 례

제1장 서 론

-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1
- 2. 국내외 연구동향 6
- 3. 연구 범위와 방법 21

제2장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 추진배경과 필요성

- 1. 추진 배경 25
- 2.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 필요성 34
- 3. 소비자의 상생협력에 대한 인식 40

제3장 상생협력 관련 법률 및 정책 현황

- 1. 상생협력 관련 법률 현황 43
- 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현황 55
- 3.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 관련 정책과 최근 동향 72

제4장 농업과 기업이 상생협력 추진실태와 성과 평가

- 1.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 범위와 구성요소 89
- 2. 상생협력 현황조사 결과 97

제5장 국가별 상생협력 법률 및 제도현황

- 1. 미국 115
- 2. 일본 124
- 3. 유럽 138
- 4. 시사점 144

제6장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 제도화 방안

1. 추진방향	145
2. 정책분야	148
3. 농업과 기업의 협력 강화	149
4. 협력기반 조성	167
5. 공정거래기반 조성	169
6. 법률 제·개정 대안 검토	172

제7장 요약 및 결론

1. 연구결과의 요약	205
2. 결론 및 정책 시사점	214

부록	217
-----------------	------------

참고문헌	243
-------------------	------------

표 차례

제1장

표 1- 1. 협의회 개최	23
----------------------	----

제2장

표 2- 1. 주요 식품자급률 현황	28
표 2- 2. 식품산업의 원료소비실태	30
표 2- 3. 농식품 관련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현황	33
표 2- 4. 신뢰계층 3단계	38
표 2- 5. 사회적 책임행동과 공유가치창출활동 비교	39
표 2- 6. CSV 3단계	40
표 2- 7.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	40
표 2- 8.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 필요성	41
표 2- 9.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 필요 분야	41
표 2-10. 농업과 기업 간 사업관계의 공정성	42

제3장

표 3- 1. 농업과 기업 간 상생협력 관련 법률 현황	44
표 3- 2. 농지법 관련 조항	45
표 3- 3.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관련 조항	45
표 3-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 조항	47
표 3-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 조항	48
표 3- 6. 농촌 융복합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 조항	49
표 3- 7. 식품산업진흥법 관련 조항	50
표 3- 8.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관련 조항	51

표 3- 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조항	53
표 3-10.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조항	54
표 3-11.	상생협력 정책방향	56
표 3-12.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 주요 내용	57
표 3-13.	동반성장 투자재원 출연 시 혜택	59
표 3-1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61
표 3-15.	성과공유 방법	62
표 3-16.	세부 과제별 지원계획(안)	64
표 3-17.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기준	69
표 3-18.	체감도 조사 평가항목 및 세부 배점기준(제조업 기준)	71
표 3-19.	컨소시엄 선정사업 평가기준 및 배점	74
표 3-20.	컨소시엄 지원사업 자금사용 용도	74
표 3-21.	복합농장 조성사업 자금사용 용도	75
표 3-22.	농공상용합형 중소기업 현장평가 평가기준 및 배점	77
표 3-23.	농공상용합형 중소기업 육성사업 내용	78
표 3-24.	농공상용합형 중소기업 육성사업 부가 지원내용	79
표 3-25.	농공상용합형 중소기업 지정 현황	80
표 3-26.	조직형태별 1사1촌 자매결연 현황	80
표 3-27.	농촌사회공헌 인증기업 선정 현황	81
표 3-28.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 법인	82
표 3-29.	농업법인에 대한 세제지원 현황	84
표 3-30.	대기업의 주요 농업법인 진출 사례	85
표 3-31.	MOU 사례 30건	88

제4장

표 4- 1.	상생협력 관련정책의 형태 및 범위 비교	90
표 4- 2.	상생협력 유형별 단계 구분	93
표 4- 3.	상생협력 사례의 유형구분	95

표 4- 4.	농가경영체 조사 응답자 특성	98
표 4- 5.	기업의 상생협력 경험 여부	99
표 4- 6.	기업의 상생협력 불참 이유	100
표 4- 7.	상생협력 참여 주체	101
표 4- 8.	계약 단가와 시중단가(도매시장) 수준 비교	103
표 4- 9.	농가의 계약서 작성 여부	104
표 4-10.	홍작, 시장가격 변동 등 상황변화에 의한 계약내용 변경 조항 포함 여부..	103
표 4-11.	농가의 계약재배 선택 이유	104
표 4-12.	참여주체별 중요도	111
표 4-13.	농업과 기업 간 상생협력에 있어서의 정부 역할	111
표 4-14.	상생협력 추진에 필요한 정부 정책	113

제5장

표 5- 1.	B-Corp 평가 항목 예시	118
표 5- 2.	미국의 주별 B-Corp 법안 현황	119
표 5- 3.	일본 일반법인의 농업분야 참여 규제 완화 흐름	126
표 5- 4.	계약채소 안정공급사업 형태별 주요 내용	132
표 5- 5.	영국의 2006년 회사법	141
표 5- 6.	네슬레의 상생협력 실적	143

제6장

표 6- 1.	공정거래위원회의 협약 평가항목별 점수배분 사례	150
표 6- 2.	B Lab 평가 항목 중 농업 관련 질문	155
표 6- 3.	분야별 체감도 조사의 주요 항목 평가	157
표 6-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164
표 6- 5.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관련 조항	166
표 6- 6.	농산물 포전매매 표준계약서의 주요 내용	171
표 6- 7.	특별법 포함 내용	176

그림 차례

제1장

그림	1-1.	추진체계도	24
----	------	-------------	----

제2장

그림	2-1.	농업의 비중 축소 추이(농가인구와 농업생산액)	26
그림	2-2.	실질 농가소득 및 농업소득 변화 추이	26
그림	2-3.	농가판매가격과 농가구입가격 지수변화 추이	27
그림	2-4.	농식품 수출입 추이와 무역수지	28
그림	2-5.	식품산업과 농업의 규모변화 추이	29
그림	2-6.	국내산 식품에 대한 관심도	31
그림	2-7.	식품 구입 시 고려 기준	31
그림	2-8.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 기대효과	42

제3장

그림	3-1.	동반성장지수 평가 방법	70
그림	3-2.	컨소시엄 구성 형태	73
그림	3-3.	협력부문별 MOU체결 비중	87

제4장

그림	4-1.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 유형구분	92
그림	4-2.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 참여 주체별 유형	94
그림	4-3.	조사대상 업체의 주요 업종 분포	97
그림	4-4.	기업의 상생협력 추진 계기	100
그림	4-5.	기업의 유형별 상생협력 추진 실태	101

그림 4- 6.	법인체의 계약재배현황	102
그림 4- 7.	기업과 농업과의 관계 측면에서의 상생협력 효과	104
그림 4- 8.	기업측면에서의 상생협력 효과	105
그림 4- 9.	농업측면에서의 상생협력 효과	106
그림 4-10.	소비자측면에서의 상생협력 효과	107
그림 4-11.	공정한 관계협력 가능성	107
그림 4-12.	상생협력의 국가경제발전 및 농업발전 효과	108
그림 4-13.	상생협력의 필요성	109
그림 4-14.	상생협력이 필요한 세부 분야	109
그림 4-15.	상생협력 참여 의향	110
그림 4-16.	정부지원정책이 필요한 분야	112
그림 4-17.	제도개선 의견	113
그림 4-18.	성과공유제의 필요성	114

제6장

그림 6- 1.	상생협력정책 추진체계도	147
그림 6- 2.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149
그림 6- 3.	농식품 상생협력펀드(가칭) 운영체계	154

제 1 장

서 론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1.1. 연구의 필요성

1.1.1.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공유가치 창출

- 시장 경제를 지향하는 국가에서는 전통적으로 경제적 수익성을 추구하는 것이 기업의 본질이라고 이해되어 왔음. 기업의 주요 목적은 이윤 추구이며, 이 과정에서 고용창출, 세금 납부 등을 통해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았음.
- 경제·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기업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기업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어 옴. 이윤추구에만 몰두한 기업이 다양한,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해 오면서 기업 활동에서의 윤리, 기업 활동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등이 강조되기 시작함. 상황에 따라서는 기업의 자선사업이나 사회공헌 프로그램 같은 협의의 개념으로 정의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기업의 윤리적, 경제적, 사회적, 환경

적 책임을 포괄하여 지칭함.¹

- 기업의 자선적인 활동은 기업의 핵심역량과 연계성이 적으므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음.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 지출액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기업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기업의 이윤추구 활동의 부수적인 활동이라는 점에서는 기업들에는 비용적인 측면으로 인식되어 지속적인 경제활동과 연계하는데 한계를 나타냄.
- 소비자가 경제적인 동기뿐만 아니라 사회적·환경적·도덕적인 동기에 따라 소비하는 경향이 확대됨에 따라 최근 들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활동이 기업의 경제적 이윤 창출과 연계될 수 있도록 진화하고 있으며, 지속 가능한 전략으로 등장하고 있음.
- 실제 다수의 글로벌 식품기업에서 공유가치창출활동을 경영활동에 접목하여 활용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건강과 영양 개선 등의 사회적 문제는 그동안 기업 활동을 통해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로 인식하였으나, 종래 맛과 양적 소비증진에 초점을 맞추었던 식품회사가 더 나은 영양에 초점을 맞춘 상품을 개발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 등이 그 예임.

1.1.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현황

- 그동안의 상생협력과 관련된 이슈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서 주로 논의되어 옴. 그 배경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가 확대되고, 대기업의 영업이익률이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인 반면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경제양극화 현상이 심화된 데 있음.

¹ 유럽기업들은 사회적 책임만이 아닌 기업의 다양한 책임의 종류를 강조하기 위해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에서 Social을 생략하고 일반적으로 CR이라고 부르기도 함.

- 2004년 7월 재정경제부에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함으로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정책이 본격적으로 제기되었고, 2006년 6월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발효됨.
 - 동년 8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민·관 공동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위원회’를 개최하여 ‘2006년 상생협력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10개 부처 공동으로 10개 분야 40개 핵심과제 선정·추진

- 2010년 9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을 발표하고 동반성장을 위한 4개 부문 15개 과제를 제시함. 주요 내용으로는 공정거래 질서의 확립, 사업영역 보호 및 동반성장 전략의 확산, 중소기업이 경쟁력 제고 지원, 동반성장 추진 점검 시스템 구축 등임. 동년 12월에는 동반성장위원회가 출범하고, 2011년 4월 중소기업적합업종·품목 선정 가이드라인을 확정함. 그동안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정책은 정부 주도로 진행되어 왔지만, 최근 대기업의 참여에 있어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함.

1.1.3. 2013년 이전까지 국내 농업과 기업의 협력 상황

- 국내에서 농업과 기업의 협력문제는 2000년대 초반 도·농간 소득격차 확대, 시장개방 등을 배경으로 농업과 기업의 갈등구조가 확산됨에 따라 전경련과 농협이 중심이 되어 ‘1사1촌 운동’으로 시작됨.
 - 2003. 11. 4.: 경제4단체와 농민단체 대표 모임에서 ‘1사1촌 운동’ 전개 합의
 - 2004. 6. 8.: 농촌사랑협력조인식 및 1사1촌 자매결연 발대식을 개최

- FTA 등 글로벌 경쟁시대에 들어서 농업에 위기감이 조성되고 우리 농식품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경쟁력 강화 및 수출산업화가 시급하게 되고, 기업의 역량과 보유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농업계의 생산 및 수출역량을 높여 나갈 필요성이 대두됨. 저조한 식량 자급률은 식량안보의 문제로 연결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농업과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한 실정임. 식량 자급률 제고를 위해서는 기업의 적극적인 농업부문 참여가 요구됨.

- 이러한 상황 하에서 사회 전반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기여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정부에서도 상생협력에 대한 의지가 강화되고 있음. 국내 식품기업 중에서는 세븐스프링스, CJ제일제당, SPC 그룹 등에서 관련 사례가 발견됨.
 - 세븐스프링스는 ‘로컬푸드’를 강조하는 건강브랜드로서 포지셔닝하기 위해 주요 농산물을 산지 직거래로 조달하며, 식재료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
 - CJ제일제당은 2011년부터 ‘즐거운 동행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농산물을 사용하는 잠재력 있는 상품을 확보하여 제품의 다양성을 강화
 - SPC는 서울대와 공동출자하여 2011년 설립한 S-Dairy Foods를 통해 고품질 유제품을 출시

1.1.4. 최근 정책추진 현황

- 농림축산식품부는 2013년 9월부터 우리 농산물의 안정적인 수요 확대를 위해 농업과 식품기업간의 상생협력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옴.
 - 2014년 ‘농업미래성장산업 대토론회(11.19.)’와 경제부처 정책점검회의(10.6.)에서 농업계와 기업의 협력이 지속 발전하려면 기업의 단순히 사회공헌활동 차원을 넘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 농민과 기업을 연결시켜서 농민과 기업이 윈윈(win-win)하는 방향으로의 연계 추진 필요성을 언급
- 또한 농업계와 기업 간의 상생협력 기반 구축을 위해 2014년 8월 20일 대한상공회의소와 ‘농식품 수출 및 소비 확대를 위한 MOU’를 체결하고, 9월 15일에 MOU 후속조치로 대한상공회의소와 농림축산식품부, 농협, aT 직원들로 구성된 ‘농식품 상생협력 추진본부’를 설치함. ‘농식품 상생협력 추진본부’를 중심으로 농업계와 기업 간의 연계 시스템을 통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확산을 유도해 왔으며, 농업계와 기업 간의 상생협력 추진 기본방안(2014.10.17.)을 마련하여 추진함.

- 농산물 가공·유통·수출·농자재·종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농업과 기업간 상생협력(MOU) 모델을 발굴하고, 농업계와 식품기업을 대상으로 상생협력 추진 방안·유형·사례 등에 대해 수요조사(4회) 및 설명회(12회)를 개최함.

1.1.5. 제도화 연구의 필요성

- 그동안 농림축산식품부 주도로 추진된 사업은 농업-기업간 상생협력 분위기를 조성하고 협력 사례를 창출하는 성과를 보였으나 초기단계에 그치고 있어 향후 실질적인 성과 창출과 확산의 필요성이 제기됨.
-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 사업이 상시적·지속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협력 사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률과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함.
- 농업과 기업의 협력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소비자 관점에서의 기업 이미지 제고 측면뿐만 아니라 기업이 사회에 기여하는 경제적 파급효과 측면도 고려한 각종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할 것임.

1.2. 연구의 목적

- 이 연구는 우리 농산물의 안정적인 수요 확대와 농식품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농업과 식품기업 간 상생협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률 및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국내외 연구동향

2.1. 국내 연구동향

-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과 관련된 국내 연구동향을 ① 농업·농촌과 기업의 상생협력 연구, ② 기타 산업분야 상생협력 연구, ③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및 공유가치창출(CSV)관련 연구, ④ 상생협력의 성과 평가 및 이론적 접근 연구, ⑤ 상생협력 제도화 및 법제화 관련 연구 등으로 정리함.

2.1.1. 농업·농촌과 기업의 상생협력 연구

- 김태곤 외(2013)는 기업이 농업에 참여하는 경우 기존의 영세한 가족농과 경합하지 않는 부문이나 지역을 중심으로 단계적인 규제완화를 통해 진입해야함을 강조하며 기업과 농가가 상생하는 방안으로 기업진입에 대한 규제완화(농지제도)와 함께 기업의 지역사회 공헌, 지역자원의 활용과 관리, 농지의 알선, 계약해지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가이드라인 작성을 제시함.
 - 또한 이 연구에서는 농업과 기업이 상생하는 경영방식을 ① 기업과 특정 지역의 농가와 연계하는 방식, ② 기업과 지역농가와의 계약거래로서 농가는 생산에 특화하고 기업은 생산관리·판매를 담당하여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식, ③ 기업이 기존 농업생산법인에 출자하여 경영에 참여하는 방식, ④ 기업이 독자적인 농업법인을 설립하거나 일반기업 자격으로 직접 경영하는 방식으로 구분
- 안병일(2010)은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를 위해 정부에서 추진한 지역특산품과 전통식품 위주의 육성정책은 규모의 영세성과 경영능력의 부족, 판로 개척 등의 문제가 잔존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통식품 위주

의 정책에서 벗어나 원료사용의 가능성이 있는 품목에 대해 식품기업이 원하는 조건으로 공급할 수 있는 체계 마련과 식품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정책, 인센티브 부여 등의 필요성을 주장함.

- 김용렬(2011)은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역단위의 자발적 노력의 일환으로 농업과 공업, 상업이 서로 협력하는 ‘농공상’ 연대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농공상 연대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① 농공상 중심의 지역소통 조직체계 구성, ② 농공상융합형 인재양성, ③ 신뢰성 있는 중간지원 조직 육성, ④ 지역의 부존자원 활용, ⑤ 중앙부처간 정책공조, ⑥ 농공상 참여 상생의 자세, ⑦ 계약거래 정착, ⑧ 농어업과 중소기업의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제시함.
- 이상창(2011)은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으로 진행되는 도농교류의 필수요소인 ‘상생’의 취지를 만족시키지 못해 사회적으로 역효과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기업의 전략적 사회공헌활동을 제시하고 ‘H기업의 괴산군 수목농장 활성화 사업’에 적용하여 계획안과 홍보·마케팅 방안과 체험 프로그램을 제안함.
- 강신겸 외(2004)는 도·농간 소득격차 증대와 농업·농촌의 경쟁력 약화 등으로 기업과 농업의 갈등구조가 심화되었으나 기업과 농업·농촌의 협력은 아직 시작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기업과 농업·농촌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상생의 모델의 청사진을 제시함.
 - 기업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시장창출 기반 마련과 이미지 및 위상 제고, 농업의 입장에서는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한 계기 마련과 경쟁력 확보에 주목하고 기업이 농업·농촌 발전의 동반자이자 후원자임을 강조
 - 한편, 이 연구에서는 기업과 농업·농촌의 협력을 ① 농업지원, ② 농촌지원, ③ 마케팅활용, ④ 사업제휴로 구분하여 각 부문별 기업사례를 제시

- 민승규 외(2006)는 1사1촌 운동으로 시작된 기업과 농촌간의 교류를 질적인 측면에서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농촌의 자생력 강화라는 전략적 협력 체계를 제안함. 이를 위해 기업과 농촌 그리고 이 둘을 연결하는 코디네이터 등 각 주체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현행 1사1촌 운동을 1사다(多)촌 운동으로 확장하는 동시에 농촌이 1사1명품 운동으로 수동적 수혜자 입장에서 매력과 가치를 보유하여 자생력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함.
 - 한편 이 연구에서는 기업의 협력 방식을 직접투자형과 간접지원형으로 구분하고 도요타와 아다미, 스타벅스, 삼성그룹의 예를 제시
- 김창현 외(2012)는 우리나라 도농교류에서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농어촌 체험마을’이 일부 잘 알려진 체험마을 외에는 주민 간 갈등, 역량부족 등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으며 교육목적 체험프로그램에만 치우쳐 진정한 의미에서의 도농교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관련 법률의 실효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함.
 - “도농교류촉진법”은 농어촌지역 투자자를 ‘도시민 및 기업’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투자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없고 도농교류 촉진에 대한 규정 또한 명확하지 않은 등의 문제가 노출되었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국토기본법”, “지방자치법”,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관련 법규가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선언적 규정에 불과한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현재 법률적 기반이 미비한 실정이라 주장

2.1.2. 기타 산업분야 상생협력 연구

- 류인철 외(2012)는 우리나라의 SSM 출점과 SSM 개정법을 검토하여 SSM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방안을 제시함. SSM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위해서는 법률적 보호 장치 마련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하며, 중소기업의 차별화를 위한 자구 노력이 필요한 동시에, 대형마트가 자발적인 휴무와 지

역사회에 공헌해 줄 것을 강조함.

- 임영균 외(2006)는 대형유통점과 중소기업과의 자발적 협력에 의한 상생은 기대하기 어려우며, 정부에 의한 강제적인 상생은 경제적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신중한 개입을 강조함. 대형유통점과 중소기업이 필요에 의해 스스로 협력하는 형태를 조성하기 위한 환경을 마련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상생을 유도할 것을 주장하면서 대학생 유통인턴제를 통한 인력지원의 상생협력을 예로 제시함.
- 송창석 외(2012)는 사례연구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생발전 저해요인을 분석하고 정책제언을 제시함. 도출된 정책의 방향은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강화와 상호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및 세제 혜택의 도입 등임.
- 이종욱 외(2009)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성과 및 제도를 검토하고 추후 상생협력 정책을 제시함. 상생협력은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것이 아닌 산업 및 생태계 전체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향해야 함을 강조하며 상생협력 제고 방안으로 상생협력 관련 포상 범위 확대와 기업생태계 경쟁력 강화,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상생협력 규정 보완 및 기업생태계 경쟁력 보고서 발간, 상생협력 펀드 수혜 범위 확장과 협력업체의 투명성 제고 등을 제시함.
- 김기찬 외(2006)는 상생협력에 대한 투자와 노력이 중소기업의 사람역량을 키워 기술력이 개선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가 윈-윈(win-win)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으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비전을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기업생태계 구축’으로 설정하고 역량개발의 길, 신뢰구축의 길, 혁신의 길의 세 가지 철학의 중요성을 강조함.

- 김금숙(2011)은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유형분류를 고찰하고 기업 사례를 제시함. 그러나 수직적 거래관계를 상정한 도급방식의 분류로서 본 연구에 주는 시사점은 제한적임.
- 백종현 외(2012)는 기업의 동반성장 추진 전략 발표를 근거로 대기업의 동반성장 추진유형을 금융지원, 하도급지급조건개선, 연구개발지원, 교육훈련지원, 경영지원, 파트너쉽 문화형성으로 구분하고 이벤트 연구를 실시하여 기업의 동반성장 정책이 기업의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그 결과, 기업의 동반성장 정책 발표가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이유를 대부분의 정책이 대기업이 주도적으로 자원을 협력기업과 중소기업에 일방적으로 분배하는 방식이기 때문으로 풀이함.
- 한국유통물류진흥원(2007)은 유통분야 상생협력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국내외 유통업체의 상생협력 사례를 발굴하고 업체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추진방향을 제시함.
 - 제시된 상생협력 프로그램은 ① 지역 재래상인 교육, ② 해외동반진출 지원, ③ 네트워크론(자금) 제도, ④ 박람회 개최, ⑤ 지역 특산물 매입, ⑥ 정보 공유를 통한 SCM강화, ⑦ PB상품 개발, ⑧ 의견수렴 제도, ⑨ 공정거래 자율준수 제도

2.1.3.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및 공유가치창출(CSV)관련 연구

- 맹경 외(2014)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통해 UN 중심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변천과정을 소개함.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1990년대 까지 노동과 인권문제에 국한되어 있었으나 이후 기업, 지역사회, 환경 등으로 범위가 확대됨.
 - 1990년 말부터 국제적 공조가 시작되어 2000년 UNGC(United Nation Global Compact)가 설립되고 130여 개국 8700여 개 기업이 가입한 국제

기구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사회적 책임에 대한 규범에 따라 이행을 약속하고 관련 보고를 진행하는 체계가 확립

- 국제사회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논의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전환점은 UN의 ‘인권존중책임’과의 연계
 - 학술적으로는 1950년대 Bowen이 기업의 의무를 정의하면서 부터 시작되어 이후 사회적 문제해결과 기업의 영리추구를 일치시키고자 하는 공유가치창출(CSV)로 개념이 발전
- 유창조(2014)는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항상 좋은 경영성과를 가져다주는 것은 아니나 고객, 종업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호의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제품에 대한 성과를 제고할 수 있으며 직·간접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발견할 기회가 제공될 수 있으며, 제고된 시장성과와 새로운 사업기회 창출, 관리의 효율성 증대로 인해 궁극적으로 회사의 재무적 성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함.
- 김재은 외(2012)는 국내·외 기업의 공유가치창출(CSV) 사례를 제시하고 지속가능한 공유가치창출을 위해 ‘나눔성장’을 촉진시키는 시장생태계 조성을 통한 가치순환형 성장모델을 주장함. 나눔성장을 위한 정책목표로 ① 법·제도 기반조성, ② 금융자본(투자) 플랫폼 선진화, ③ 평가·인증체계 확립, ④ 나눔성장 문화조성임.
- 지식경제부 “산업발전법” 18조, 19조와 환경부 “지속가능발전법”의 지속가능경영관련 법규를 간략히 소개
- 박병진 외(2013)는 식품산업은 산업 고유의 특성에 의해 다른 산업과의 동반성장 모델보다는 공유가치창출(CSV)형태의 모델이 바람직함을 주장하면서 CJ제일제당의 사례를 분석하고 CSV형 플랫폼 모형을 도출함. CSV형 모델의 성공을 위한 플랫폼 구축 과정은 ① 사회적 수요와 핵심역량 분석, ②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 구축, ③ 파트너 발굴, ④ 사업실행, ⑤ 생태계 확장으로 구성됨.

- 문정훈 외(2013), 이동민 외(2013) 등은 국내 식품기업의 CSV를 기반으로 창업한 S-Dairy Foods와 S-Farm, 월향도가농업법인의 사례를 분석하고 기업과 농업·농촌의 ‘공동창업형’ 창업모델을 제안함. 제시된 주요 상생 내용은 컨설팅 및 사료공급 지원, 지역클러스터 형태의 협력체제 구축, 판로 확보 및 생산역량 증대 등임.

2.1.4. 상생협력의 성과 평가 및 이론적 접근 연구

- 강정석 외(2012)는 공생발전의 효과적인 방법론 개발 연구를 위해 공생발전 정책 및 성과에 대한 체계를 마련하고자 정부업무평가의 특정평가를 활용하는 방안과 관련 정책 주관기관이 별도 수행하는 방안으로 나누어 대안을 제시함. 각 방안의 장단점을 비교한 결과 정부업무평가의 특정평가를 활용하는 방안이 실행가능성과 비용, 전문성 측면에서 더욱 우수하며, 효과성과 파급효과와 관련한 항목에 대한 지표들은 기존 관련지표들을 참고하여 각 부문별로 도출되는 추진전략에 맞게 구성할 것을 제안함.
- 김의영 외(2012)는 공생발전을 이루기 위한 모델로 거버넌스를 제시하며 정부와 시민사회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기 위한 이론적 기반을 제시함. 특히 공생발전이라는 목표를 위해 사업자단체에 의한 결사체 거버넌스와 지역주민과 정부, 시민단체간의 로컬 거버넌스의 개념을 제시하고 현실적용 가능성을 검토함.
- 고상두 외(2012)는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공생적 사회체계 유지를 위해 국가와 시장 이외에 시민이 참여하는 공생적 체계를 새로운 발전모델로 제시함. 즉, 시민이 정부와 기업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감시하는 네트워크형 발전모델이 필요하며 ‘협력’이라는 메커니즘에 의해 정치와 경제모델이 상호부합되고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정의를 신장시킬 수 있음을 주장함.

- 김현철 외(2011)는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산업별로 상생협력지수를 계측한 결과 미국발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상생협력 수준이 하락하였으나 이후 다시 회복되는 수준에 있음을 제시하고 회귀분석을 통해 상생협력 수준과 생산성 사이에 양의 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함. 그러나 이 연구에서 상생협력 지수 도출을 위해 사용된 표본의 일관성 문제가 연구의 한계로 지적됨.
- 이문성 외(2011)는 요인분석을 통해 상생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신뢰와 상생인프라 구축, 협력/참여태도를 도출하여 협력정도를 종속변수로 각 요인별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함. 그 결과, 신뢰와 상생인프라 구축은 유의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협력/참여태도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협력은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협력의 효과적 달성을 위한 시사점으로 제시함.
- 한정화 외(2006)는 중소기업의 유형을 L형(다수 가격경쟁형), A형(소수 기술경쟁형), J형(지명발주형)으로 분류하고 유형별 특징에 근거한 상생협력 추진전략을 제시하는 한편, 대기업과 정부 그리고 중소기업의 협력이슈별 대안과 효율적인 상생협력 발전의 세 가지 기본방향(=시장친화성의 원칙+지속가능성의 원칙+공감성의 원칙)을 제시함.
- 정완진(2011)은 시가총액 100대 기업의 설문조사와 보고서를 토대로 전략적 파트너십과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운영에 대한 ‘협력지수’를 개발하여 산업별 협력지수를 비교하고 평균 시장 초과수익률을 추정함. 협력활동으로 인해 기업가치가 증가할 수 있음을 설명하는 동시에 정부의 지원과 변화를 강조함.
- 이종열 외(2012)는 지역 간 협력 및 상생발전을 구현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는 연계협력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사업주체, 법규정, 운영방식, 예산으로 구분하고 계층분석법(AHP)을 이용하여 우선순위 분석을 실시함. 분석결과,

연계협력사업의 독립적인 예산확보 부족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나타나 독립적인 예산확보와 운영경비 및 포괄보조금 등의 개선 필요성을 주장함.

2.1.5. 상생협력 제도화 및 법제화 관련 연구

- 이준일(2012)은 비록 공생발전의 이념이 일종의 ‘정치적 아젠다’로 제시되기는 하였으나 거기에 포함된 가치나 이익의 균형 또는 최적화에 대한 요청은 헌법적(실정법적) 이념일 뿐만 아니라 도덕적 이념이기도 하며, 공생발전의 이념을 단순한 정치구호로 머무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헌법적 내용을 찾아 구체화하여 입법으로 관철하고 해당 입법을 사후적으로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함.
- 최은성 외(2012)는 공생발전이라는 궁극적 목적 달성을 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구현하는 구체적인 수단으로 ISO 26000의 필요성을 주장함. 덴마크의 사회적 책임 이사회와 영국의 사회행동 책임위원회의 사례를 설명하며 우리나라의 ISO 26000 정착을 위한 CSR 전담 기구설치를 제안하고 역할을 제시함.
- 정기화(2013)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생발전을 위한 법의 역할을 제시하면서, 법이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업을 규제하는 것은 오히려 중소기업 자체의 발전을 저해하게 되어 공멸을 초래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을 지원하려고 한다면 사업조정 제도를 활용하여 조정기간 동안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함. 또한 상생 발전을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거래를 증대시키고 당사자들의 이익을 동시에 증진시키는 정책이 수반되어야 함을 역설함.
- 현대호 외(2012)는 공생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 과제도출을 목적으로 부문별 구현전략을 제시함. 정부가 추진한 FTA 체결

효과의 불균형 조정을 위해 농축산업 등 취약 산업군과 중소기업 그리고 소비자 측면에서의 보호와 균형의 필요성을 고찰하였고, 수혜를 받은 수출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조와 FTA에 대한 집단 간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 사회적 특별기구 설립, 산업부문에 대한 저가 전기정책 정상화 등을 통해 기업성장과 소비자 후생의 조화를 강조함.

- 권준철 외(2013)는 상생협력의 경제생태계 조성을 위해 갑과 을의 공정한 경제활동과 계약관계 유지를 위한 방편으로 공정계약관리제도를 주장하고 구체적인 방안으로 의무적인 공증절차를 거치게 하는 방법인 공정계약 공증인제도와 기업지원기관과 변호사가 모니터링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인 공정계약 국선변호인제도로 구분하여 제시함.
- 전인우 외(2007)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설문조사를 근거로 협력지수를 개발하여 이를 업종별로 비교하고 역량개발과 신뢰구축, 기업생태계 혁신을 상생협력의 3대 요소로 설정하여 협력수준을 분석함. 평균적인 협력수준은 40점대(100점 만점)로 나타났으며, 신뢰구축, 기업생태계 혁신, 역량개발 순으로 협력수준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2.2. 해외 연구동향

-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과 관련된 해외의 연구를 ① 기업의 공유가치창출(CSV) 관련 연구, ② 기업의 농업부문 R&D 투자 관련 연구, ③ 기업의 농업 부문 진출에 있어서의 정부의 역할 관련 연구 등으로 정리함.

2.2.1. 기업의 공유가치창출(CSV) 관련 연구

- Porter, M. E. and Kramer, M. R.(2011)은 공유가치창출(Creating Shared Value, CRV)의 이론적 배경에 있어서 초석이 된 연구임. Porter, M. E. and Kramer, M. R.(2011)은 기업의 공유가치창출 활동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으로 Product와 Market을 다시 이해하는 것, 가치사슬에 있어서의 생산성을 재정립하는 것, Local Cluster의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것 등으로 강조하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과 기능만을 고집하는 것보다 기업의 책임을 일정부분 부여하는 것이 장기적인 기업의 이미지 제고와 비용절감에도 효과적이라고 설명함. 기업의 공유가치창출 활동이 자선활동과 같은 의미가 아닌, 경제적·비용적 가치 창출을 위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Adam Smith의 ‘보이지 않는 손’의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주장함. 만일 모든 기업이 개별 기업별로 공유가치를 창출하고자 한다면, 사회의 전체적인 효용은 증가하게 되며 이는 정부가 공유가치창출을 위한 정책적 입안의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함.
 - 모든 사회적 문제를 공유가치창출 활동을 통해서 해결할 수는 없지만, 기업의 공유가치창출 관련 경제활동을 통해서 각 기업의 기술수준, 인적·경제적 자원 획득, 생산능력 등을 제고시킬 수 있음과 동시에 이를 사회적 가치와 연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공유가치창출은 유의미
 - 기업의 공유가치창출(CSV) 활동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은 엄밀하게 보면 그 의미에 차이가 있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기업의 명성, 이미지 제고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며 이윤창출의 유인이 부재하므로 장기적으로 유지하기가 힘들. 그에 반해 공유가치창출은 기업의 경제적 가치와 전체 사회적 가치 창출을 동반하므로 장기적인 유지 면에 있어서 CSR과는 차이
- Campbell J. L.(2007)은 기업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행동해야 하는 이유를 기업의 사회적 가치 이론을 바탕으로 설명함. 또한 기업이 사

회적으로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을 경제적 조건, 제도적 조건으로 구분하여 제시함. 안정적인 재정 상황, 시장 내 다른 기업과의 경쟁 수준이 극심하지 않은 조건이 기업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제적 조건이며 정부의 정책 방향이 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제한하지 않는 등의 제도적 조건이 함께 뒷받침 될 때 기업의 사회적 행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강조함.

- 기업의 경제활동을 비롯한 미거시적인 경제 상황은 급격하게 변할 수 있으며 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의 강도와 활동 범위는 가변적
 - 기업의 글로벌화는 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는 적절하지 않음. 개방적인 경제하에서의 기업의 경제활동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기 더 수월하며, 오히려 보다 다양하고 광범위한 사회적 가치 창출이 가능
- Crane, A., Palazzo, G., Spence, L. J.(2014)는 공유가치창출(CSV)와 관련된 Porter의 이론적 기초를 재검토함. 공유가치창출 이론은 실무자와 학자들에게 성공적으로 각인되어 사회적 목표의 전략적 수준을 상승시켰지만,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 간의 괴리를 과소평가하였고 기업의 경제활동을 지나치게 단순하게 파악했다는 우려가 있음. 또한 공유가치창출 이론은 기업의 사회적 행동에 있어서 정부가 가져야 할 역할을 명확하게 명시하지만, 사회 안에서 기업이 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는 오히려 불명확하다고 평가함.
- Porter의 공유가치창출 이론은 사회적 공유 가치와 기업의 경제적 가치 간 상호관계를 설명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행동에 대한 이론 정립에 기여하였지만, 기초 이론 안에 내재된 많은 예외 사항과 변환으로 인해 여전히 정립된 이론으로 자리매김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평가함. Porter의 이론 이후에 사회적 가치와 기업의 경제적 가치를 연결 짓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지속적으로 제기
 - Stakeholder의 이론, Integrative Social Contract Theory(ISCT), 이외에도 기업의 정치적 역할을 강조한 최근의 CSR 관련 연구들은 공유가치창출

이론에 대한 보완과 새로운 시각에서의 접근을 시도

- Lea Torpegaard Kvistgaard(2013)는 Porter의 공유가치창출 이론을 방법론적으로, 이론적으로 보완하고 보다 효율적인 방향으로 수정하고자 함. Porter의 패러다임을 뒷받침하는 다양한 이론을 고려하고자 Thomas Kuhn의 idea를 제시하고 CSR과 관련된 기초적인 선행연구와 논쟁이 되는 분야에서의 주요 이슈에 대해 살펴봄. 또한 Porter의 공유가치창출 이론이 가지는 실제적인 함의와 공유가치창출 분야에 존재하는 자본주의와 Stakeholder 이론 간의 논쟁을 심도 있게 분석함.
- Matten D., Moon J.(2008)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 국가마다 어떻게 다른지, 다른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이유로, 어떤 형태로 변화했는지에 대해 설명함. 특히 미국과 EU의 CSR 형태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제시함.
 - CSR의 국가별 차이는 전통적인 구조적 이론인 ‘National business system(Whitley, 1997)’에 의해 설명할 수 있음. Whitley(1997)는 국가의 구조를 Political system, financial system, financial system, education and labor system 등 네 가지 주요 특징으로 정리
 - 미국과 유럽의 political system에 있어서의 가장 큰 차이는 주가 가지는 힘의 상이함임. 유럽의 주가 가지는 영향력은 미국의 그것을 훨씬 상회하며, 유럽정부가 경제적·사회적 활동에 관여하는 정도와 범위 또한 미국정부가 관여하는 그것과는 차이가 있음. 재정적 시스템에 있어서도 미국의 경우 공공적 성격의 중앙 재정 기업들이 대부분이지만, 유럽은 소수의 대규모 투자자에 대다수의 기업들이 속해있는 형태이며 이들 사이에서 핵심적인 조정자 역할을 하는 것은 은행
 - 교육과 노동 시스템에 있어서도 미국은 기업 자체적인 근로 교육 시스템이 발달해있지만, 유럽은 정부 주도의 공공적인 교육 프로그램 및 정책이 발달했다는 점이 주된 차이

- Min-Dong Paul Lee(2008)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설명하는 그동안의 이론적 근거와 앞으로의 발전방향, 그 가운데 내재된 함의에 대해서 제시함. 특히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개념화에 있어서 ① 거시적 사회 관점에서의 CSR이 가지는 효과에 대한 논의로부터 기업 단위 이윤 창출에 CSR이 가지는 효과에 대한 논점으로의 변화, ②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윤리적인 측면에서의 CSR에 대한 이슈에서 CSR의 개념에 내재된 기업의 경영적인 측면에서의 실제적인 이슈로의 변화라는 두 가지 큰 변화에 대해 집중함.
 - 결국 기업은 합법적인 인가를 필요로 하는 우리 사회 구성원 가운데 하나임을 강조하면서, 그 동안의 CSR 관련 연구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 기업의 공유가치창출 활동을 지나치게 강조한 점에 대해 우려를 표방

2.2.2. 기업의 농업부문 R&D 투자 관련 연구

- Alfranca O., Huffman W. E.(2003)는 서유럽의 농업부문 R&D 사적투자를 분석대상으로 하여 경제적 유인, 공공정책, 관련기관의 역할 등이 기업들의 농업부문 R&D 투자·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적 근거를 바탕으로 도출함. 비록 EU가 회원국들 간의 경제적 통합이 가속화 되고 있지만, 여전히 회원국들 사이의 공공정책, 제도, 규모, 농업의 상대적 중요도 등에는 차이가 존재함을 강조하면서 유럽 국가들을 대상으로 기업의 농업부문 R&D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역설함.
 - 분석결과 농업부문 R&D 공공투자가 감소하면, 농업부문에 대한 R&D 사적투자는 공공투자의 감소분을 상쇄할 만큼 증가하며 한 국가에서의 농업부문 R&D 사적투자는 다른 국가에서의 투자와 음의 외부성을 가지는 것으로 드러남. 즉, 사적 R&D 투자는 국가의 경계를 경쟁적인 형태로 드러내는 것으로 분석
 - 농업부문 사적투자에 있어서 기관의 역할이 미비할 것으로 세웠던 가정은 유의하게 기각되는 것으로 도출됨. 강력한 특허제도, 효율적인 시민단체, 지역 기업들에 대한 보호 등은 농업부문 사적투자의 총 투자액을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

- Naseem A., Spielman D. J., Omamo S. W.(2010)는 개발도상국 농업분야에 있어서 R&D 투자를 저해하는 제도적인 요인과 급격한 투자 증가를 촉진시키는 유인 정책에 대해 살펴봄. 특히 R&D 사적투자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공적부문 연구, 세금 정책, 보조금 정책, 기술의 상업화 프로그램, 규제 시스템, 연구 단지 조성, 공·사 간 협력 체계, 혁신능력의 제고 등을 선정하고 이들이 농업부문 R&D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 Kremer M., Zwane A. P.(2002)는 개발도상국의 열대 농업에 대한 사적 투자를 제고하기 위해서 어떻게 정부가 R&D 투자 참여자들에게 보상하는 것이 효율적일지에 대해 고찰함. 개발도상국의 농업에 대한 R&D 투자가 높은 투자 수익에도 불구하고 매우 미미한 수준의 투자만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문제의식 하에서 연구자들로 하여금 적절한 연구 개발 과제를 선택하고, 농민들이 활용하기 원하는 R&D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유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2.2.3. 기업의 농업부문 진출에 있어서의 정부의 역할 관련 연구

- Nathan Wittmaack(2006)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위한 ‘대규모 농업, 소수의 농장’의 미국 농업에 있어서의 변화를 강조하면서 기업의 농업부문 참여를 제도로서 제한하는 것은 미국의 농업 농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고 역설함. 기업형 농업은 결과적으로 보다 효율적인 농업, 더 큰 사회적 잉여를 발생시키며 기업의 농업부문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정리함.
- Holger Matthey and Jeffrey S. Royer(2001)는 네브라스카 비육돈 산업의 사례를 바탕으로 농업부문 기업의 참여 제한이 가지는 의미를 분석함. 네브라

스카 기업의 농업부문 참여 제한은 기업에 의한 농지의 소유 또는 활용을 금지하는 범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Multistate model** 분석결과 네브라스카 비육돈 산업의 적정 재고 조절 능력을 기업 참여 제한이 유의하게 악화시키는 것으로 드러남.

3. 연구 범위와 방법

3.1. 연구 범위

- 농업부문 조사대상은 법인체와 농업인으로 국한하며, 기업체는 업종이나 규모에 제한을 두지 않음. 조사대상 기업체는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 식품 100대 기업, 농자재 기업, 농식품 유통기업 등임. 농협과 시군유통회사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함.
- 기업의 단순 원료조달이나 농촌지역 사회적 책임활동 등을 포함하였으나, 연구에서는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에 초점을 맞춤. 농업부문에는 농업과 농업인이 주가 되는 농산업을 포함함.
- 해외사례에서는 미국, 일본, 유럽을 대상으로 함. 미국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과 관련된 제도 마련에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으며, 일본의 경우 농업경영기반강화나 농상공연계사업을 참고할 수 있음. 유럽의 경우에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법제화 사례를 참고함.

3.2. 연구방법

3.2.1. 관련 문헌 및 자료조사

- 상생협력의 이론적 근거를 검토하기 위해 상생협력의 효과 측정, 공유가치 창출 등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문헌검토를 실시함.
- 상생협력 추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자료 수집과 기관 방문조사를 추진함.
- 주요국의 상생협력 실태 파악 및 국내 상생협력 제도화 방안의 시사점 도출을 위하여 미국, 일본, 유럽에 대해 사례 조사를 실시함.

3.2.2. 전문가 자문회의 및 정책협의회 개최

- <표 1-1>과 같이 대·중소기업 간, 농업과 기업 간 상생협력 사례 조사를 위해 정부, 관련 기관, 업체, 농업경영체, 연구자 등을 대상으로 자문회의와 협의회를 개최함.

3.2.3. 설문조사

- 상생협력의 실태 파악 및 효과, 정부 역할 등을 조사하기 위해 기업체 조사, 법인체 조사, 농가 조사, 소비자 조사 등 총 네 건의 설문조사를 실시함.
 - 기업체 조사는 2015년 6월 29일부터 7월 21일까지 약 3주간에 걸쳐 진행
 - 법인체 조사는 2015년 8월 24일부터 9월 3일까지 전국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법인체 82개를 대상으로 실시
 - 농가조사는 일반농가의 실태파악을 위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가 패널160개 농가를 대상으로 한 우편조사와 108개 농가 대상 개별면접조사를 동시 수행

- 소비자는 이메일을 통한 설문조사 형식으로 2015년 8월 7일부터 8월 13일까지 일주일 간 270명을 대상으로 진행

표 1-1. 협의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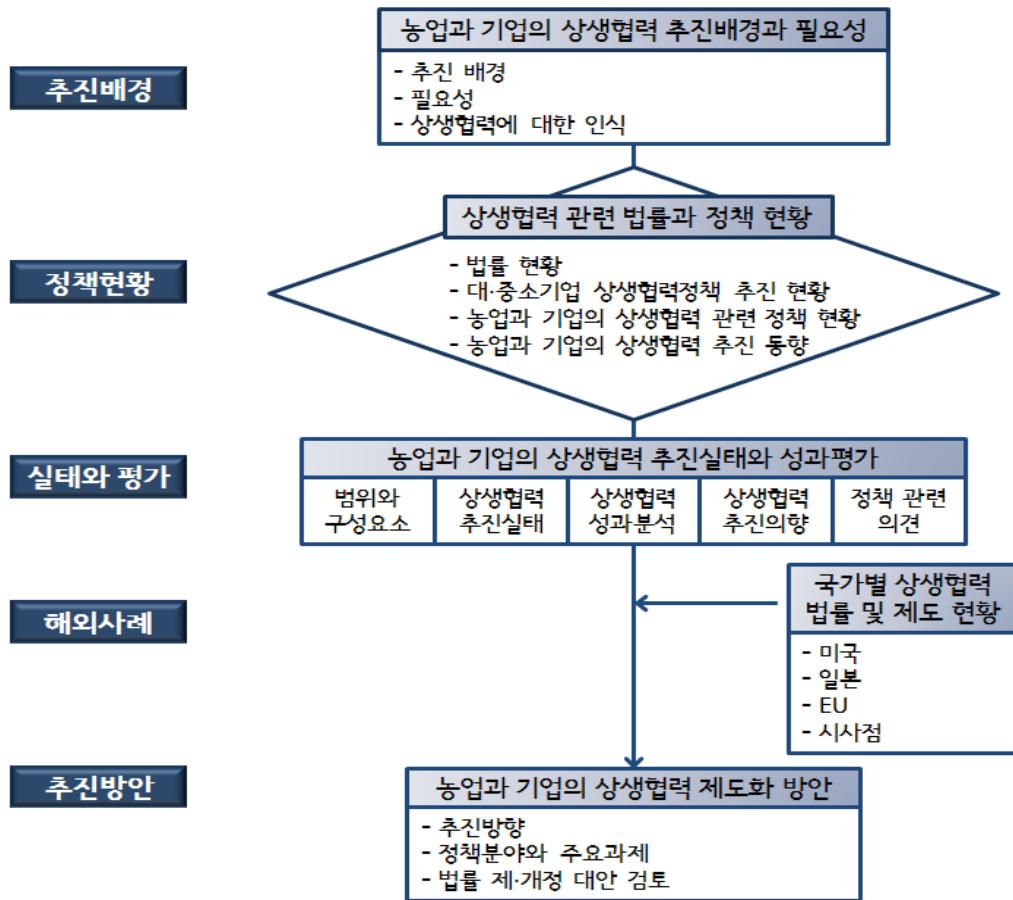
일정	협의 대상	내용
2015년 5월 27일	동반성장위원회	상생협력 실무자 면담
2015년 5월 28일	한국식품산업협회	설문조사표 검토
2015년 6월 1일	CJ 제일제당	상생협력 담당자 면담
2015년 6월 5일	신세계백화점	상생협력 사례 토의
2015년 6월 8일	산업정책연구원	공유가치창출(CSV) 사례분석
2015년 6월 9일	한국체인스토어협회	상생협력 우수사례 발굴
2015년 6월 10일	한화, 충남발전연구원	상생협력 실태조사
2015년 6월 15일	카이스트	상생협력 효과분석 전문가 회의
2015년 7월 2일	경상대학교 등	농업분야 상생협력 실태조사 간담회
2015년 7월 14일	서울대학교, 중앙대학교	농업과 기업간 상생협력 추진 방안
2015년 7월 15일	대상, NH무역 등	수출분야 상생협력 간담회
2015년 7월 16일	채선당, 본죽 등	외식분야 상생협력 간담회
2015년 7월 21일	대·중소기업협력재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농업분야 적용
2015년 7월 27일	산업자원부 기업협력과	상생협력 정부정책 검토
2015년 7월 30일	상생협력 전문가	상생협력 평가 방법 자문
2015년 8월 11일	농업법인체	농업경영체 조사표 검토 및 정책 토의
2015년 8월 20일	법률전문가	상생협력 법률 제도화 방안

3.2.4. 전문가 연구 위탁

- 주요국의 상생협력 관련 법률 검토와 국내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 법제화 방안 마련은 한양대학교 법학대학원의 제철웅 교수가 담당함.
- 일본의 농업과 기업 간 상생협력 관련 정책현황 검토와 사례 조사는 김태곤 박사가 담당함.

3.3. 연구 추진체계

그림 1-1. 추진체계도



제 2 장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 추진배경과 필요성

1. 추진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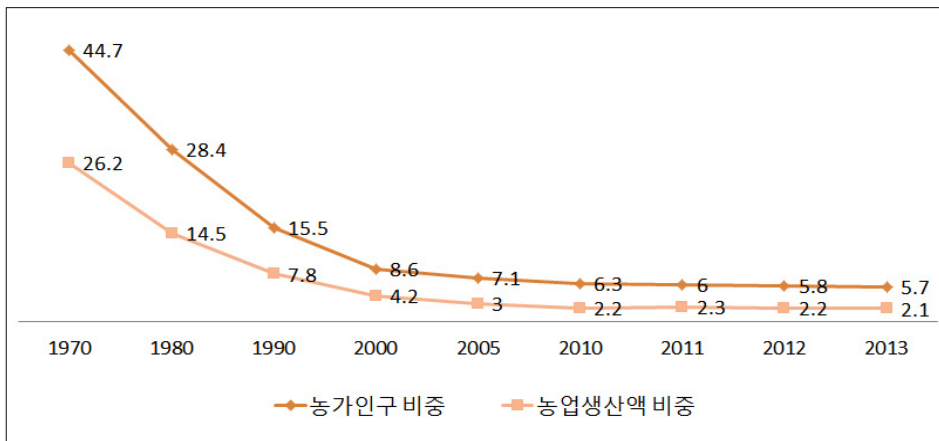
1.1. 농업의 비중 축소와 식량안보 위기

- 우리나라 농업은 산업화 성장정책 기조에 따라 계속해서 위축되어 왔으며 도농이탈 현상과 농가 고령화도 심화되어 농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음.
 - 전체인구에서 농가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1970년 44.7%에서 2013년 5.7%로 급락하였으며, 같은 기간 GDP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26.2%에서 2.1%로, 농가호수도 248.3천 호에서 114.2천 호로 하락
- 자연재해의 영향, 농산물 가격의 불안정성 등 구조적 취약성도 심화되어 농가경제 또한 지속적으로 위축되고 있음.
 - 2013년도 기준 시 소득격차도 도시근로자의 62.4%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며 전업농의 비중도 전체농가의 53.2%로 감소
- WTO체제가 출범한 1994년 이래로 실질농가소득과 실질농업소득 모두 하

락하였고 실질농가소득은 반등하여 등락을 거듭하여 정체되고 있으며 실질 농업소득의 경우,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어 소득원으로서의 농업의 위상이 저하되고 있음.

그림 2-1. 농업의 비중 축소 추이(농가인구와 농업생산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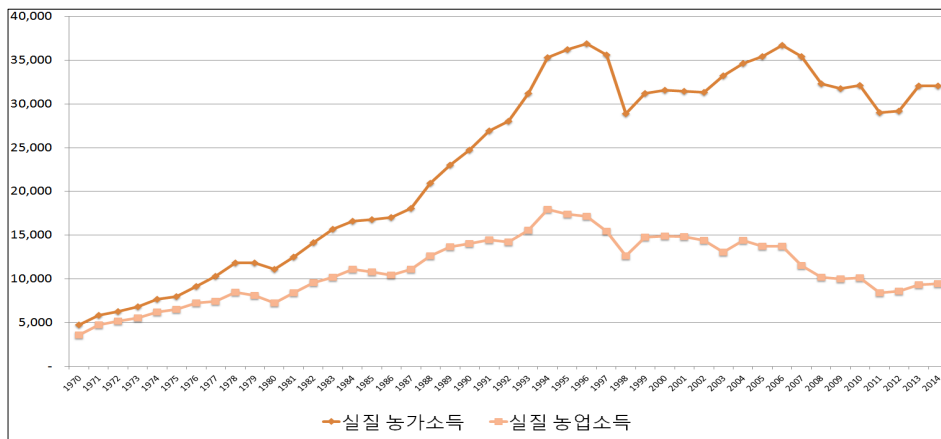
단위: %



자료: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각 연도), 농림축산식품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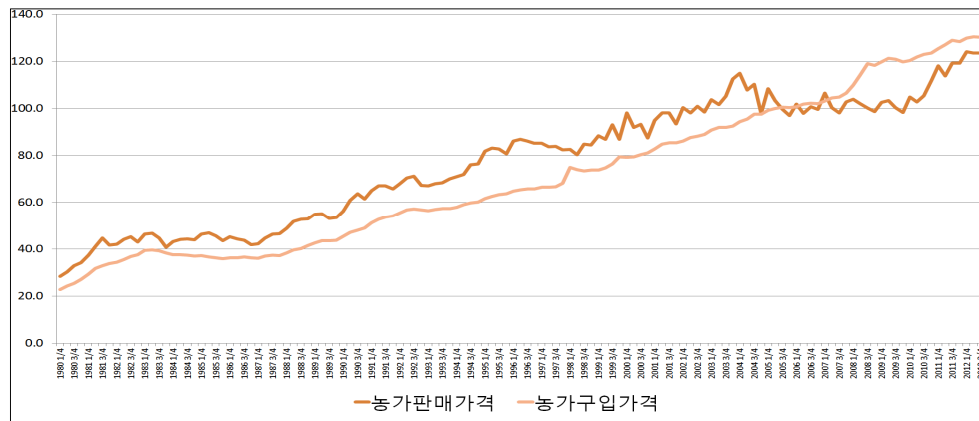
그림 2-2. 실질 농가소득 및 농업소득 변화 추이

단위: 천 원/ 가구



자료: 국가통계포털(www.kosis.kr)

그림 2-3. 농가판매가격과 농가구입가격 지수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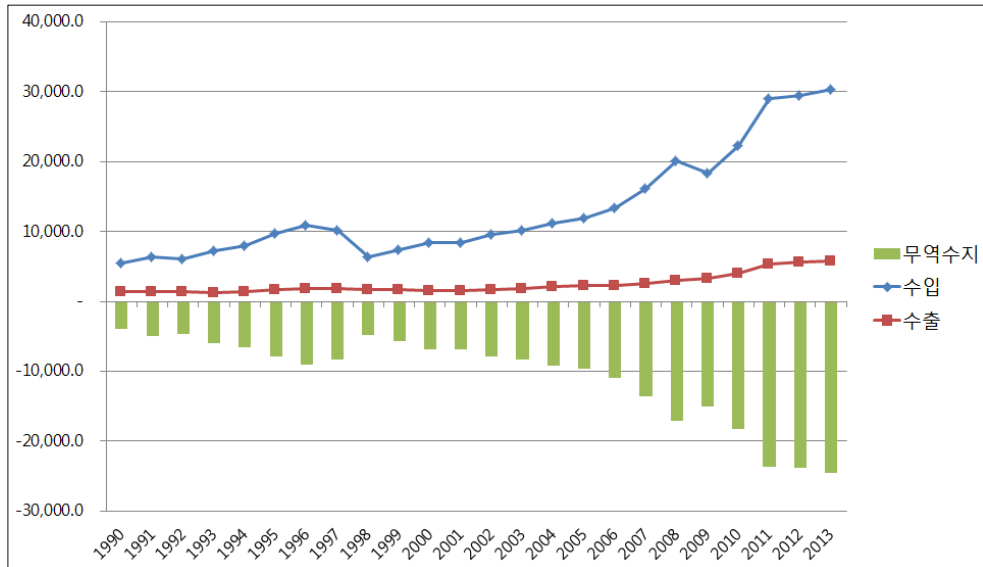


자료: 국가통계포털(www.kosis.kr)

- 더욱이 한-칠레 FTA가 발효된 2004년을 기점으로 농가판매가격이 상당기간 정체되면서, 농가구입가격이 농가판매가격을 역전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등 국내농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 FTA 등 시장개방은 대외 경쟁력 열위에 있는 우리 농업에 큰 위기감을 조성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높은 수입 증가로 매년 적자폭이 확대되는 추세임.
 - 한·미 FTA 발효로 농축산물 수입액은 발효 전과 비교하여 평년 대비 31.1% 증가
 - 2006년 농식품 무역수지 적자는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상회하기 시작하였으며 2013년에는 245억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

그림 2-4. 농식품 수출입 추이와 무역수지

단위: 백만 달러



자료: 농림수산물수출입 동향 및 통계(각 연도),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국내농업의 비중 축소와 외국산 농식품의 수입 증가로 국산 농산물의 수요와 공급이 모두 감소함에 따라 국내 식량안보 마저 위협을 받게 되는 등, 농업의 문제가 국가 전체적인 문제로 확산되어 가고 있는 실정임.
 - 현재 우리나라 식량자급률(곡류기준)은 23%대로 OECD 최하위권 수준

표 2-1. 주요 식품자급률 현황

단위: %

곡류	서류	두류	채소류	과실류	육류	계란류	우유류	어패류	유지류
23.0	95.7	15.5	89.8	78.7	79.5	99.7	58.6	76.8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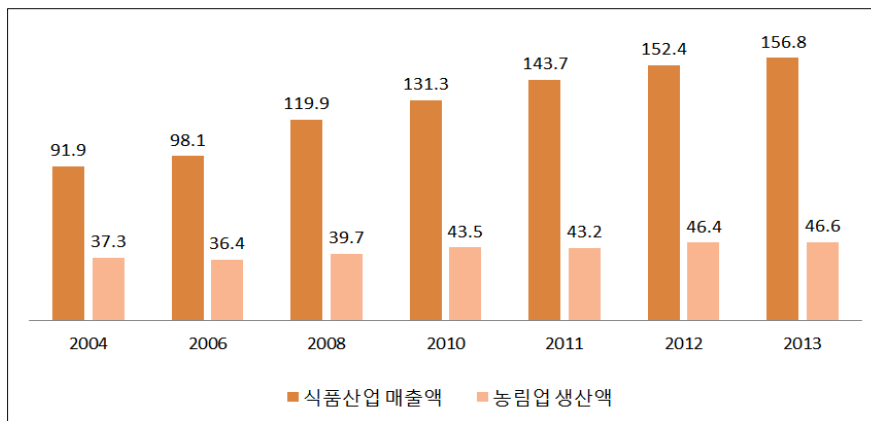
자료: 식품수급표.(201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2. 식품산업과의 연계성 저하

- 식품산업(식품제조업, 외식산업) 규모²는 157조 원(2013년 기준)으로 2004년의 91.9조원에 비해 70%가 증가하여 전체 농림업 생산액의 3.4배에 달하는 수준이 되었지만, 농림업 생산액은 정체내지 소폭 상승하는 추세임.

그림 2-5. 식품산업과 농업의 규모변화 추이

단위: 조 원



자료: 식품산업주요지표(2015),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식품산업의 발전이 농업 생산에 큰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식품산업과 농업과의 연계는 갈수록 약화되고 있는 실정임.
 - 식품제조업체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농축수산물 원료량은 2014년 기준 1,508만 톤이며 이 중 31.2%만이 국산 원료로 사용³
- 산업연관표의 생산자가격을 기준으로 식품가공분야의 농산물 투입금액을 보면, 2000년대 중반까지 80% 가량을 국산이 차지하고 있었으나 이후 70% 수준으로 계속 국산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 가공식품의 국산 농축산물 이용률은 31.2%(2013) 수준

²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도소매업조사 기준이며, 외식업은 주점 및 비알콜음료업을 제외.

³ 식품산업분야별 원료소비 실태조사(2014),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표 2-2. 식품산업의 원료소비실태

단위: %

구분	국산비중	구분	국산비중	구분	국산비중
쌀	69.1	감자	93.7	쇠고기	27.2
보리	26.3	고구마	88.1	돼지고기	77.8
밀	0.6	고추	56.2	닭고기	83.4
메밀	40.0	양파	88.3	버터	18.1
대두	14.1	참깨	8.2	천일염	63.1
팥	30.9	버섯	7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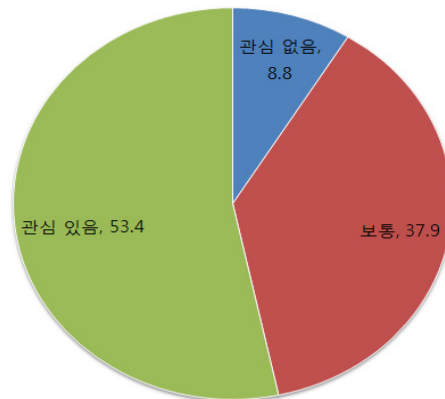
자료: 식품산업 원료소비 실태조사(2014),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1.3. 기업의 소비자 국산/품질 선호 경향 대응 필요

- 식품 구입 시 소비자들은 고품질·안전 농식품을 우선 고려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산 식품에 대하여 소비자의 절반 이상인 53.4%가 관심을 표시함.
 - 2014년 조사결과 소비자들은 쌀 구입 시 품질(32.0%)을 우선 고려, 가공식품의 경우 맛(27.2%)과 안전성(16.1%)이 높은 비중을 차지⁴
- 기업입장에서도 소비자의 식품 선호 변화에 대응하여 농산물 품질 제고와 국내산 농산물을 활용한 제품 차별화로 신시장을 창출하고 식품산업의 부가가치를 제고시킬 필요성이 제기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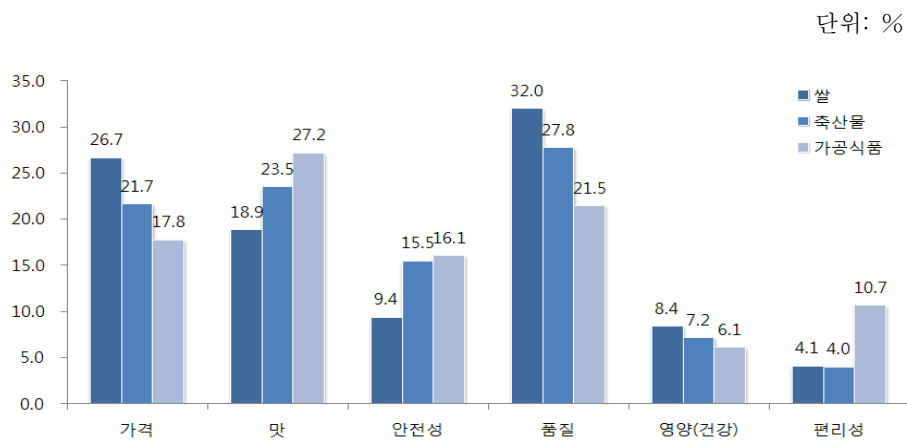
⁴ 식품소비행태조사(201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그림 2-6. 국내산 식품에 대한 관심도
단위: %



자료: 식품소비행태조사(201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그림 2-7. 식품 구입 시 고려 기준



주: 우선순위 응답의 결과에 가중치를 부여(1순위×2+2순위×1)하여 백분율로 계산한 수치임.
자료: 식품소비행태조사(201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4. 타 산업에 비해 상생협력 환경 조성 미흡

- 200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골목상권과 경제민주화 등의 사회이슈가 부각되고 동반성장위원회가 출범하는 등 공생발전, 공존번영, 동반성장 등으로

용어는 다르지만 사회·국가적인 차원에서 상생협력이 추진됨.

- 더욱이 지난 정부에서 공생발전이 국정과제로 다루어지면서 개인과 국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성장과 복지, 개발과 환경의 상생협력을 위한 기반과 제도가 마련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이 제정되고 매년 동반성장 시행계획을 통해 건설, 유통, 전자·전기, 자동차, 기계, 철강, 섬유화학, 영화 등의 타 산업분야에서의 상생협력과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기반확충과 환경조성 등의 노력이 행해지고 있는 가운데, 농식품 분야의 상생협력을 위한 환경조성은 미흡한 상황임.
 - 농업생산이 자연환경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고 생산자가 소규모 다수이어서 협력관계 조성에 어려움이 있고 일반 제조업에 비해 생산성 혁신에 한계가 있음. 경쟁력 있는 농어업경영체 육성을 목표로 정책이 추진되고, 농어업경영체와 기업의 협력이 중요한 사안으로 등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인식과 환경조성이 크게 미흡한 상황임.
 - 실제 동반성장지수 평가나 체감도 설문조사에서 통신·정보서비스·전기·전자는 최우수와 우수에, 건설은 우수와 양호에, 도소매식품은 양호와 보통에 편중되는 등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여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오히려 동반성장위원회 출범과 함께 시작된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는 대·중소기업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을 보호하고자 마련된 정책이나, 농업계와 식품업계에의 성장을 위축 시키고 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2011년 9월 1차로 고추장·간장·된장 등 장류와 막걸리, 재생타이어 등 업종이 지정된 것을 시작으로 2015년 5월까지 총 104개 품목과 업종이 선정, 이 중 농식품 관련 지정현황은 적합업종 31개와 상생협약 9개

표 2-3. 농식품 관련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현황

구분		업종·품목명	개수
적합업종	제조업	기타식사용 조리식품(이동급식), 메밀가루, 떡국떡, 떡볶이떡, 김치, 도시락, 순대, 청국장, 단무지, 간장, 된장, 고추장, 전통떡, 두부, 국수, 당면, 냉면, 앙금류, 어묵, 원두커피, 햄버거빵	21
	서비스업	한식, 중식, 일식, 서양식, 기타 외국식, 분식 및 김밥 전문점, 그 외 기타 음식점, 제과점업, 화초 및 산식물 소매업, 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도매)업(임의가맹점형 체인사업)	10
상생협약	제조업	어분, 막걸리, 녹차, 홍차, 울무차, 유자차, 기타가공차, 식용유, 정제유	9

자료: 동반성장위원회 보도자료를 토대로 저자가 재구성함.

- 김치, 두부, 쌀가공품 등의 경우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과정에서 국산사용에 대한 원가부담의 압력이 있어 국내 농업과의 연계를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으며, 절임류와 장류의 경우 미생물 제어와 안전성 관리 수준이 현재보다 악화될 가능성이 있음.
- 2011년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08:00~24:00로 제한하고 매월 2회내 격주로 의무휴무토록 하는 영업규제 조치가 시행됨. 대형마트의 영업규제로 인해 대형마트로 상품을 납품하는 농산물을 비롯한 식품업체의 납품 물량이 감소하고, 업체가 탈락되는 등의 사례가 증가함.
 - 대형마트 영업규제 이후 산지유통조직의 48.1%가 발주량 감소, 9.1%가 납품단가 인하요구, 1.1%는 실제 납품단가가 하락, 산지유통조직의 고용인력도 15.1%나 감소한 것으로 분석(김동환 외, 2013)
 -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연간 5,500억 원 규모의 매출 손실이 농어민에게 돌아갈 것으로 전망

- 2009년에는 ‘공무원 행동강령’이 시행되어 공무원 선물용도를 3만원 미만으로 제한함에 따라 화훼산업에 큰 타격을 주었으며, 최근에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음식물 및 선물 상한선을 5만원으로 제한하고 농축산물이 이에 포함될 것으로 예정되면서 과일과 축산 농가에 큰 타격을 입힐 것으로 전망됨.
- 이렇듯 농업과 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토대와 환경 조성은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으며, 나아가 농업 여건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2.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 필요성

2.1. 농업 측면 필요성

2.1.1. 판매망 확대

- 기상여건 변화와 해외시장의 영향으로 농산물의 안정적인 가격과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입장에서 기업의 안정적인 원료조달과 판로 지원은 판매망 확대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음.
- 기업의 직접적인 원료 구매 이외에도 기업의 유통망을 활용하고, 기업의 축적된 홍보·마케팅 역량을 공유할 경우 국내 농업의 내수판매망 확대와 해외 수출시장 개척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수출주도형 성장을 이룩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역량과 전 세계로 개척된 판로는 우리나라 농업이 세계 시장으로 진출할 가능성을 높여줄 것임.

2.1.2. 지역브랜드와 전통(향토)식품의 전국적 확산

-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을 통해 지역의 농식품 브랜드가 기업의 전국적인 유통망으로 판매됨에 따라 지역 브랜드 확산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음.
- 국내산(지역산) 원료를 사용하여 전통적인 방식으로 생산되는 전통식품 또는 향토식품의 경우 소규모 가내수공업 형태로 농업경영체에서 생산되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기업의 유통망을 활용한 전통(향토)식품의 전국적 유통은 브랜드 인지도 제고와 판매 확대 등을 통해 농업부문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됨.

2.1.3. 농가소득 안정

- 기업과 상생협력 과정에서의 기업의 원료구매 또는 판매알선 등의 협력은 농업의 판로지원과 수요 확대를 통해 농가소득의 안정화에 기여함.
- 기업의 경영·수출·마케팅·기술·R&D 등의 협력을 통해 신제품 및 신기술 개발이 가능하게 되고, 이는 농업의 고부가가치화와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와 농가소득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2.1.4. 농업의 경쟁력 제고

- 기업과의 상생협력을 통한 농업의 판로지원과 수요 확대는 농가소득의 안정으로 연결되고, 안정된 소득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규모화와 재투자에 의해 경지면적과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선순환 구조로의 전환이 가능함.
- 기업과 농업의 협력과정에서 경쟁력 있는 요소를 공유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성과를 가져올 수 있음.

을 것으로 기대됨. 농업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인적, 물적 역량을 활용하여 역량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2.2. 기업측면 필요성

2.2.1. 불확실성 감소

- 농식품 기업의 안정적인 원료 확보는 기업 제품 생산의 불확실성과 거래비용을 감소시켜 기업의 경영성과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됨.
- 시장개방과 FTA 체결 등으로 기업에서는 수입산 원료의 조달이 보다 용이한 환경이 조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료 확보의 리스크도 함께 증가함. 기업은 농가와의 계약재배 등 협력과정을 통해 변동하는 시장 가격으로 부터 발생하는 위험을 감소시키거나 혹은 농업과 기업이 서로 위험을 공동 부담함으로써 원료조달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킬 수 있음(Jensen and Meckling, 1976).
 - 김관수 외(2012)는 안정적인 원료조달 시스템을 확보한 기업과 농업계의 사회 후생이 상승 가능하다는 것을 경제학적으로 증명

2.2.2. 거래비용 감소

- 기업은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데 있어서 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데 경제학에서는 오래전부터 거래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협력을 강조함. 기업의 목적은 거래비용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시장에서 제품을 거래할 때 발생하는 거래비용과 기업조직으로 내부화할 때 발생하는 관리비용을 비교하여 거래비용이 관리비용보다 크면 기업 조직으로 내부화 하는 것이 낫다고 보고,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기업 간의 협력을 강조함 (Coase, 1937 & 1952).

- 기업은 거래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협력을 이용하고, 이를 위해 협력이 잘 될 수 있는 조직을 창출하게 됨. 또한 상호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시장 거래 시 발생하는 거래비용을 최소화한 중간 조직적 기업관계 형성이 가능함.

2.2.3. 제품 구성 다양화와 품질 차별화

- 과거 소비자들은 농식품 구입 시 가격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생각했으나,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에 따라 최근에는 소비자들의 품질 선호경향이 확대되고 다양한 만족을 추구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음. 빈번한 식품위해사고 발생은 농식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갈수록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
- 기업은 농업과의 상생협력을 통해 농업경영체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지역산 농식품을 생산·판매함으로써 다양하고 풍부한 제품군을 형성할 수 있으며, 국내산·안전 농식품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의 기호에 부합되는 차별화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가능함.
- 농업과 기업의 계약재배는 안정적인 원산지 관리 및 수급 안정성 확보, 유통단계 축소로 인한 가격 경쟁력 확보 등을 통해 가격을 안정시키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제고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음.
- 최근 안전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제고됨에 따라 소비자들은 로컬푸드 직거래 및 체험활동을 통한 상품 구매 등 생산자와의 교류 및 소통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농업 간의 상생협력을 기반으로 한 사회공헌이미지 제고 등 제품과 브랜드 인지도를 높인 브랜드를 선호하게 되는 추세임.

2.2.4. 신뢰 제고

- 기업과 농업의 상생협력은 당사자 간의 신뢰를 제고시킴으로써 관계를 유

지하고 상생협력 목표를 효과적·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데 기여함. 기업은 농업부문과의 신뢰를 통해 경제적 및 사회적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래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으며, 이해 당사자 간의 정보 공유를 촉진시켜 줌으로써 거래관계의 가치를 극대화 함.

- 또한 신뢰형성은 이해당사자 간 갈등을 줄여 기업과 농업의 협력과정에서 공동 노력을 기울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이 특화된 자원에 적극 투자할 수 있도록 도와줌.
- 이론적으로는 신뢰는 협력수준에 따라 3단계로 구분이 가능함. 기업간 협력의 일관성을 높이고자 노력하는 가장 낮은 단계의 계약형 신뢰(Contractual Trust), 협력의 완결성을 높이려는 역량형 신뢰(Competence Trust), 비전을 공유하고 고수준의 신의를 요구하는 가치공유형 신뢰(Goodwill Trust)로 구분 가능함(Sako, 1992).

표 2-4. 신뢰계층 3단계

신뢰 계층	주요 내용	상생협력 핵심이슈
계약형신뢰	정직과 계약 이행에 기초한 신뢰	기업과 농업간 계약을 바탕으로 이행되는 합의사항에 대하여 약속준수와 계약이행이 필요
역량형신뢰	전문적 경영과 기술의 표준에 따라 목표를 완성할 것이라는 신뢰	농업의 역량개발을 통해 협력의 완결성을 높이는 단계로 농업에 대한 교육지원이 필요
가치공유형신뢰	비전을 공유하고 기회주의적 행동을 취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	비전공유를 바탕으로 연구개발 및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협력으로써 공동개발, R&D 등이 필요

자료: 김기찬 외(2006), 한정화 외(2006)를 참조하여 재구성함.

2.2.5. 공유가치창출

-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과 연계하여 기업 이윤의 사회 환원 차원에서 추진하는 자선활동과 봉사활동 등은 공익적인 이익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행해짐. 참여 기업과 상생협력 대상에게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대부분 기업의 핵심역량과는 별도로 수행됨.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은 기업의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선행에만 치우쳐져 있는 경우가 많고 지속성이 없다는 한계를 지님.

표 2-5. 사회적 책임행동과 공유가치창출활동 비교

분류	사회적 책임행동	공유가치창출활동
개념	경제적 및 법적 책임 외의 사회적 공헌 활동	기업의 이윤 창출과 사회적 공헌 일체화
목적	시민의식을 전제로 한 자선활동	비용에 대비한 사회적 및 경제적 편익 또는 효용
인식	이윤극대화와 관계없는 활동	이윤극대화를 위한 필수요소
한계	예산 규모에 따른 활동 제한, 지속성 및 성장성 결여	기업의 가치사슬 영역에만 한정
사례	공정무역 등을 통한 구매	품질개선을 위한 조달시스템 자체 혁신

자료: Porter and Kramer(2011), 강충한 외(2014)를 참조하여 작성함.

- Porter and Kramer(2011)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과 다르게 사회적 문제 해결과 기업의 성과도 올릴 수 있는 지속가능한 공유가치창출활동(Creating Shared Value, CSV)의 개념을 제시함. CSV는 기업이 시장점유율, 수익성, 생산성의 향상뿐만이 아니라 기업의 에너지 사용의 감소와 피고용인의 소득 증가 등의 사회적 및 환경적 가치를 함께 추구해야 한다는 상생협력 이론으로서 현재 기업에게 필요한 활동임.
- CSV는 세 단계로 구성되는데 새로운 제품 및 시장을 재구상하는 낮은 단계부터 가치사슬에서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2단계 그리고 지역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활성화 하는 3단계로 구성됨.

표 2-6. CSV 3단계

CSV 단계	공유가치 창출 방법	세부내용
1단계	새로운 관점에서 제품 및 시장의 재구상	시장과 소비자들의 충족되지 않는 사회적 욕구에 초점
2단계	가치사슬에서의 효율성 제고	기업 외부의 환경적 요인과 기업 내부의 생산성 간 상호 관계 인지 후, 생산성 향상과 위험의 감소를 추구
3단계	지역 클러스터의 형성 및 활성화	기업 및 관련 기관들을 지역적으로 집적하여 기업 외부의 조건 변화를 유도

자료: Porter and Kramer(2011), 강충한 외(2014)를 참조하여 작성함.

3. 소비자의 상생협력에 대한 인식

3.1. 인지도와 필요성

표 2-7.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

단위: %

구분	구분	비중
1	전혀 모르고 있다	19.8
2	들은 적은 있다	59.7
3	잘 알고 있다	20.5

자료: 소비자조사 결과

- 소비자의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 가운데 과반수 이상인 160명(59.7%)은 농업과 기업 간 상생협력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사실을 ‘들은 적은 있다’고 대답했으나, ‘잘 알고 있다’라고 응답한 소비자가 2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상생협력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응답한 소비자가 39.5%(106명), ‘매우 필요하다’는 소비자는 53.4%(143명)로 대다수의 응답자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표 2-8.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 필요성

단위: %

구분	구분	비중
1	전혀 필요하지 않다	0.4
2	필요하지 않다	0.7
3	보통이다	6.0
4	필요하다	39.5
5	매우 필요하다	53.4

자료: 소비자조사 결과

- 상생협력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농산물 유통 및 판매’가 가장 높은 응답 비중을 기록함. 농산물 유통 및 판매는 응답자 가운데 61.5%가 가장 필요한 분야라고 응답하였으며, 농어촌 지역사회 개발, 농산물 수출, 농업 생산의 순서대로(각각 13.8%, 13.5%, 11.2%) 필요한 분야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의 공정한 관계에 대해서는 과반수 이상의 응답자가 공정한 사업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다고 응답함. 응답자 가운데 10.1%가 ‘전혀 공정하지 않다’, 47.6%가 ‘공정하지 않다’고 응답하였으며, 7.9%와 2.2%만이 ‘공정하다’와 ‘매우 공정하다’고 응답함.

표 2-9.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 필요 분야

단위: %

구분	구분	비중
1	농업 생산	11.2
2	농산물 유통 및 판매	61.5
3	농산물 수출	13.5
4	농어촌 지역사회 개발	13.8

자료: 소비자조사 결과

표 2-10. 농업과 기업 간 사업관계의 공정성

단위: %

구분	구분	비중
1	매우 공정하지 않다	10.1
2	공정하지 않다	47.6
3	보통이다	32.2
4	공정하다	7.9
5	매우 공정하다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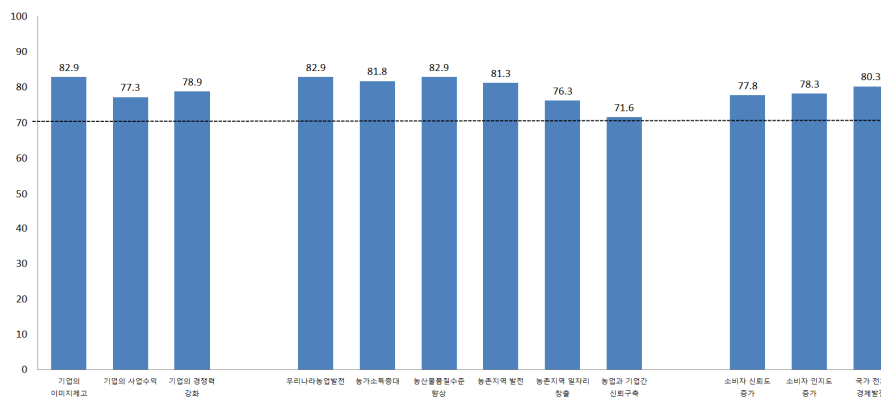
자료: 소비자조사 결과

3.2. 상생협력의 기대효과

-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이 가지고 올 수 있는 효과에 대해서는 농업과 기업 간 신뢰 구축, 기업의 이미지 제고, 농가소득 증대, 농촌지역 일자리 창출, 소비자의 신뢰도 증가 등 12개의 문항을 통해 조사함. 분석 결과 12개 문항 전반에 걸쳐서 소비자들은 상생협력의 효과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난 항목은 ‘기업의 이미지 제고’, ‘우리나라 농업 발전’, ‘농산물 품질 수준 향상’이며 100점 만점으로 82.9점을 기록함.

그림 2-8.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 기대효과

단위: 점



주: 5점척도를 기준으로 계산한 척도 평균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수치임.

자료: 소비자조사 결과

제 3 장

상생협력 관련 법률 및 정책 현황

1. 상생협력 관련 법률 현황

1.1. 법률 개요

- 현재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을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없으나, 간접적으로 기업 간 상생협력과 관련되거나 개별법에 관련성이 있는 법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검토대상으로 함.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 관련 법률은 농업관련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률과 타부처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관련 법률,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로 구분됨.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법률 중에서 대상 법률은 “농지법”,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촌 융복합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타 부처 소관법률 중에서 상생협력에 관련된 법률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며, 거래 공정화에 관련된 법률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 3-1. 농업과 기업 간 상생협력 관련 법률 현황

주관부처	법령명	목적
농림축산 식품부	농지법	농지의 소유·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농촌의 발전,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경쟁력 있는 농어업경영체를 육성하고 농어업경영체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한 직접지불제를 시행
산업통상 자원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해소
공정거래 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1.2.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률

1.2.1. 농지법

-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와 이용,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서 농지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되고 이용되어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삼고 있음.
- “농지법”은 제6조 1항에서 경자유전의 법칙을 명시하고 있으나 제6조 2항에 예외조항을 두어 종묘 및 농업기자재 생산자의 사업목적을 위해 농지를 소유할 수 있으며 제23조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하는 경우에는 기간 내 농지소유가 가능함.
 -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한 임대 등의 방식으로 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

표 3-2. 농지법 관련 조항

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제2장 농지의 소유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농업연구기관·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나 그 밖의 농업 기자재 생산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지·연구지·실습지 또는 종묘생산지로 쓰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제23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할 수 없다.
2. 제17조에 따른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6. 제6조제1항에 따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표 3-3.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관련 조항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9조(농지의 장기임대차사업)
③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임차농지를 전업농업인, 전업농 육성 대상자 또는 농업법인에게 임대할 수 있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 후계농 부족과 농가 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외부의 도시민이나 도시자본의 농업진입을 확대하기 위해 농업법인 육성을 확대하고 법 개정을 통해 농지의 취득자격을 완화함.
 - 2003년 개정을 통해 농업회사법인의 형태중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만 소유할 수 있었던 농지를 주식회사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

- 2006년에는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 요건 중 농업인 출자액이 총 출자액의 1/2를 초과해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
- 2009년에는 농업회사법인의 대표가 농업인이어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 법인의 업무집행권자 중 1/3이상만 농업인이면 농업법인으로서 농지소유가 가능

1.2.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농업회사법인이나 영농조합법인 등 농어업경영체를 육성하기 위한 법률로 각종 직접지불제 등의 정책자금을 투입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임.
- 제16조 1항을 통해 규모화를 통한 생산성 증대와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관광사업의 공동 운영을 위해 농업인 및 농업생산자단체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의 설립을 규정함.
 - 제18조에서 영농조합법인 총 조합원이 찬성하는 경우 농업회사법인으로 조직의 변경이 가능
- 제19조에서는 기업적인 농업 경영을 위해 농업회사법인의 설립 요건을 규정함. 2항을 통해 원칙적으로 농업회사법인의 설립자를 농업인과 농업생산자단체로 명시하였으나 동시에 비농업인의 출자를 허용함.

표 3-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 조항

제16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
①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이하 "농업생산자단체"라 한다)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제18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조직변경)
①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은 총조합원의 일치로 총회의 결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형태인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1. 합명회사, 2. 합자회사, 3. 유한회사, 4. 주식회사
제19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 등)
①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②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농업인과 농업생산자단체로 하되, 농업인이나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의 범위에서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 농업구조 개선의 일환으로 규모화와 법인화를 추진하였으며 기업의 농업법인 설립을 장려하되 기업의 지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비농업인의 출자한도를 제한함.
- 비농업인의 출자한도는 최초 1/3이하에서 1/2, 3/4로 완화되어 왔으며 현재는 농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이 8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총출자액의 100분의 90까지 출자가 허용되며, 총출자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총출자액에서 8억 원을 제외한 금액만큼 출자가 가능함.
- 한편, 설립등기 시 농업인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규정이 없어 그간 일부 농업인 등이 아닌 자가 정부지원, 농지소유 등을 목적으로 허위로 농업법인을 설립하는 사례가 문제로 지적됨에 따라 필수적으로 ‘농업인화

인서’ 또는 ‘농어업경영체(변경)등록확인서’를 발급받아 농업인 신분임을 증명해야하며, 비농업인의 출자한도 준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필수로 제출해야함.

표 3-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 조항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농어업인 등이 아닌 자의 출자한도)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가 농업회사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농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이 80억 원 이하인 경우: 총출자액의 100분의 90
농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총출자액에서 8억 원을 제외한 금액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1.2.3.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반마련과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정된 법률로서 제2조에서 농촌융복합산업을 ‘농업인 또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농촌지역의 농산물·자연·문화 등 유형·무형의 자원을 이용하여 식품가공 등 제조업, 유통·관광 등 서비스업 및 이와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제공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높이는 산업’으로 규정함.
- 제 6, 7조에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해 5년마다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것을 규정하고, 제21조에 중소기업과 협력하여 새로운 제품 또는 수요를 개발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이에 따른 협력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음. 국가의 지원규정은 제18조(연구개발), 19조(전문인력 양성), 20조(창업), 23조(판로지원), 24조(협회설립), 25조(금융지원), 26조(홍보 및 교육),

경영우수자 선정)이며, 제36조에는 법인세·소득세·취득세·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등의 조세를 감면하는 세제혜택을 포함함.

표 3-6. 농촌 융복합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 조항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
제10조(인증의 표시)
제18조(농촌융복합산업의 연구·개발 등)
제19조(전문인력의 양성)
제20조(창업지원)
제21조(관련 산업과의 협력 장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과 협력하여 새로운 제품 또는 수요를 개발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이에 따른 협력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3조(판로지원사업)
제24조(협회의 설립 등)
제25조(금융지원 등)
제26조(홍보 및 교육)
제36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구의 육성을 위하여 지구 안의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1.2.4. 식품산업진흥법

- “식품산업진흥법”은 국민의 경제, 사회, 문화의 기반인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농수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어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이 나아갈 방향과 국가의 정책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식품산업진흥법”에서는 진흥할 식품산업의 대상을 국내농산물을 토대로 한 식품산업, 전통식품을 토대로 한 식품산업에 주안점을 두으로써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의 요소를 다수 포함하고 있음. 그 중 제13조의 계약거래 등 교류협력사업의 증진; 제13조의2의 학교급식 식자재 계약재배에 관한 규정이 좁은 의미의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에 관한 시책임.

표 3-7. 식품산업진흥법 관련 조항

제13조(계약거래 등 교류협력사업의 증진)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식품산업과 농어업의 연계를 강화하여 농수산물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식품산업의 원활한 원료공급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농어업 생산자 또는 그 단체와 식품사업자가 식재료의 계약생산·계약공급 등을 위한 교류협력 약정을 체결하는 등의 교류협력사업을 장려할 수 있다.

제13조의2(학교급식 식자재 계약재배 등)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학교급식과 농어업의 연계를 강화하고 학교급식에 우수한 식자재를 공급하기 위하여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 등과 농수산물 또는 식품을 생산하는 자 간의 식자재 계약재배 또는 직거래를 촉진하는 등의 교류협력사업을 장려할 수 있다.
-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1.3. 타부처 소관 법률

1.3.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4조와 5조를 근거로 기본계획(3년)과 시행계획(매년)이 수립·시행되며, 대·중소기업협력재단(제20조)과 동반성장위원회(제20조의2)의 설립을 명시함.

표 3-8.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관련 조항

제4조(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시행계획의 수립)
제8조(상생협력 성과의 공평한 배분)
제9조(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기술협력 촉진)
제10조(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인력교류 확대)
제11조(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자본 참여 등)
제12조(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환경경영협력 촉진 등)
제13조(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대한 특례)
제14조(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실태조사)
제15조(대·중소기업 상생협력지수의 산정·공표)
제16조(상생협력 우수기업 선정·지원)
제17조(수탁기업협의회)
제20조(대·중소기업협력재단의 설립)
제20조의2(동반성장위원회의 설치)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시책으로 제8조(성과공유제), 제9조(기술협력), 제10조(인력교류), 제11조(자본참여), 제12조(환경경영협력)를 통해 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협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 밖에 제13조에서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제14조(실태조사), 제15조(상생협력지수 산정·공표), 제16조(상생협력 우수기업 선정·지원), 제17조(수탁기업협의회) 등을 운영토록 함.
- “상생법” 제4장은 거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납품대금 지급, 검사기준 합리화 등 위탁기업의 준수사항을 제시함. 제5장은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고자 제정되었으며 동일 업종내 직접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경합하는 경우에 대한 사업조정과 이양에 관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1.3.2. 거래 공정화 관련 법률

- 거래의 공정화와 관련한 법률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포함됨.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크게 독과점적 시장지위 남용금지 와 관련된 조항, 대기업의 규모화·집중화를 감시 및 억제하기 위한 조항, 담합행위 제한, 분쟁의 처리로 구성되어 있어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에 시사 하는 바는 크지 않음.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거래를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균형을 갖추고자 제정된 법으로서 제조위탁(가공위탁)·수리위탁·건설위탁·용역위탁을 모두 포함함. 제3조에 의거 원사업자는 수급자에게 하도급 대금과 지급방법 등의 계약내용이 포함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발급하여야 하며, 제16조의2 제1항에 따라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를 포함해야 함.
- 또한 하도급업체에 대한 공정 거래를 지원하고자 제3조의 4(부당 특약 금지),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제6조(선급금 지급), 제7조(내국 신용장의 개설), 제9조(납품검사), 제10조(부당반품 금지),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을 규정함.
 - 제6, 7조에 따라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 선급금을 지급하며, 제8조를 근거로 부당하게 위탁취소나 변경 불가
- 납품 검사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하게 정하도록 규정하고(제9조),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는 한 부당하게 반품할 수 없으며(제10조) 납품을 받을 날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 대금을 지급(제13조)
- 수급사업자는 제21조에 의거 위탁의 내용에 대한 신의성실 의무가 주어져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공표하여야 함. 제24조를 통해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구성할 수 있음.

표 3-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조항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제3조의2(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제6조(선급금의 지급)
제7조(내국신용장의 개설)
제16조의2(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제9조(검사의 기준·방법 및 시기)
제10조(부당반품의 금지)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21조(수급사업자의 준수 사항)
제24조(하도급분쟁조정협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이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의 거래를 영위하기 위해 제정된 법임. 하도급법과 마찬가지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도 제6조를 들어 납품업자등과 계약 체결 즉시 계약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주어야 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거래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함.

- 공정거래를 위해 납품업자의 책임사유가 아닌 이상 대규모 유통업자는 납품받은 상품의 대금을 감액할 수 없으며(제7조),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 납품업자에 대금을 지급해야 함(제8조). 제10조에 의거 정당한 사유없이 대규모 유통업자는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품할 수 없으며, 신선농·수·축산물의 경우 자발적 반품이 아닌 이상 계절에 집중적으로 판매된다 하더라도 반품조건이 계약체결 시 구체적으로 약정되지 않은 이상 반품할 수 없음(6호, 7호).
- 대규모유통업자는 관측행사시 소요되는 비용을 미리 약정하지 않고 납품업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안되며(제11조) 납품업자등에 고용된 인력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없음(제12조). 또한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도 안됨(제13조).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사이의 상호 지원·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이때 공정거래위원회는 이행을 독려하기 위해 포상 등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함.

표 3-10.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조항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등)
제7조(상품대금 감액의 금지)
제8조(상품판매대금의 지급)
제10조(상품의 반품 금지)
제11조(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
제12조(납품업자등의 종업원 사용 금지 등)
제13조(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
제19조(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 사이의 협약 체결)
제20조(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제29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제30조(서면실태조사)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 제20조에 의거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사이의 분쟁은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두어 조정토록 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법에 위반되는 경우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음(제29조).
 -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사이의 거래에 관한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조사결과를 공표(제30조)

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현황

2.1. 상생협력 추진 과정

- 2000년대 초반까지는 단순히 대·중소기업간 관계에 있어서 발생하는 불공정성을 시정하는데 정책의 중심이 맞추어 있었으나,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의 심화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정부차원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됨.
- 2005년 5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를 글로벌 시대에 걸 맞는 상생협력 혁신 네트워크 관계로 전환한다는 기본 방향을 설정함. 여섯 차례의 상생협력 보고대회를 계기로 상생협력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 및 이론적 기반이 마련됨.
- 2006년 3월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국무총리 소속하에 대·중소기업상생협력위원회가 설치되었으며, 성과공유제 확산 지원을 위해 성과공유제확산추진본부를 설치
 -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은 대·중소기업 간 협력사업의 개발 및 운영지원, 기술협력 촉진사업의 관리·운영 및 평가지원, 기술자료 임치제도 운영, 기업

간 협력증진을 위한 학술연구 등의 기능을 담당해왔으며, ‘9. 29 동반성장 추진대책’에 따라 2010년 12월 13일에 설립된 동반성장위원회를 지원

표 3-11. 상생협력 정책방향

구분	시기	중점분야	추진방향
1차 상생협력 대책회의	2005. 5.16	정부·기업 공감대 형성	·제조업 중심 대·중소기업 간 파트너십 구축 (성과공유제, 부품소재육성 등)
2차 상생협력 점검회의	2005. 7. 5	상생협력 지원체계 구축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범부처적 인센티브 확대 및 협력실태 점검 체계 구축
3차 상생협력 간담회	2005. 12.22	상생협력 확산방향	·수직적 확산: 대기업, 1차→2, 3차 협력업체 ·이업종 확산: 제조업→유통, 건설 등
4차 상생협력 보고회의	2006. 5. 24	상생협력 이론적 기반	·기업경영전략으로서의 유효성 검증 ·역량강화, 신뢰구축, 기업생태계 혁신 등 상생협력 3대 시책 정비
5차 상생협력 성과보고회	2006. 12. 28	업종별 상생협력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산업별 상생협력 방향 제시 ·지역혁신클러스터와의 연계방향 제시
6차 상생협력 성과보고회	2007. 9. 19	성과평가 및 차기과제 도출	·전략적 상생협력 파트너십 강화 ·상생협력의 지평 확대 및 저변 확산

자료: 동반성장위원회 백서(2012)

-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의 주요 전략은 공정거래 질서 확립, 사업영역 보호 및 동반성장 전략의 확산,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지원 등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정책은 정부 주도로 진행되어 왔지만, 대기업의 참여에 있어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함(동반성장위원회 백서, 2012).

- 대기업(30대 그룹) 내 동반성장 전담부서 설치 비율은 2005년 8개 사(26%)에서 2010년 23개 사(79%)로 늘어났고, 대기업의 동반성장 지원 금액도 대폭 확대
- 대기업-협력사-정부 간의 공정거래이행협약을 통해 중소기업 간 하도급 현금성결제 비중이 2000년 44.2%에서 2011년에는 92.2%로 대폭 증가하였고, 불공정거래 비중 또한 2000년 80.5%에서 2011년 44.9%로 축소
- 2012년 지식경제부가 공공기관의 협력기업사 100여 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공공기관의 협력중소기업 중 73%가 ‘동반성장 분위기가 좋아졌다’고 평가하는 등 동반성장을 위한 정책적 노력과 기업의 참여로 중소기업의 체감도가 개선

표 3-12.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 주요 내용

전략	추진과제	내용
공정거래 절서 확립	① 납품단가 조정체계 구축	-협동조합에 납품단가 조정협의 신청권 부여 -신속한 납품단가 조정 Fast Track 제도 -납품단가 조정효과를 2차 이하 협력사로 확산 * 납품단가 조정내역 통지 의무 준수 * 납품단가 조정정보 공유시스템
	② 자의적 납품대금 감액 및 구두발주 방지	-납품대금 감액 시 원사업자 입증책임 전환 -동반성장 협약서에 임원평가 시 동반성장 실적 중시 명시 -하도급계약 추정제정 정착 -업종별 표준하도급계약서 보급 확대 -발주예정 사실 및 물량 통보시스템
	③ 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	-기술자료 임치제 활성화 -원가계산서 등 기술자료 요구 절차 강화 -일방적 사업장 출입 및 실사 금지 -기술자료 탈취 및 유출에 따른 대기업의 손해배상 책임 강화
	④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	-「대규모소매업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 -유통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실태조사 강화 -표준거래계약서 제정 및 보급 -판매수수료의 합리적 결정여건 조성
	⑤ 2차 이하 협력사로 하도급법 적용 확대	-2·3차 협력사에 대한 하도급법상 구제 확대 -2차 이하 협력사의 협약체결 확산 -2차 협력사에 대한 대기업의 동반성장 책임 강화 -협력사에 대한 원자재 공급(사급) 확대
사업영역 보호 및 동반성장 전략의 확산	⑥ 중소기업 적합업종 설정을 통한 사업영역 보호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 선정 -대기업의 자율적 진입 자제와 사업 이양 확대 -부당내부거래 조사제도 및 기업결합 규제의 활용
	⑦ 2·3차 동반성장 전략 확산	-동반성장 투자재원 확충 유도 -대·중소기업 공동 R&D 지원 확대 -2·3차 협력사에 대한 생산성 향상 프로그램 추진 -「특별보증 프로그램」의 2·3차 협력사 지원 확대 -성과공유제 확산(원가절감인증제 도입 등) -업종별 동반성장 추진전략 수립
	⑧ 소대기업과 수요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추진	-[석유화학산업] 1개월 가격 예시제 -[철강산업] 안정적 철강재 확보 -Techno Partnership 지원 사업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지원	⑨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 강화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동반성장 이행실적 및 평가결과 반영 -부당한 계약관행 발굴 및 개선
	⑩ 중소기업의 경영 선진화와 구조개선 지원	-중소기업 경영·회계 투명성 지원 -상시 구조개선 지원시스템 도입방안 마련
	⑪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역량 강화	-핵심역량 제고 지원 -신성장동력 창출 지원
	⑫ 중소기업 현장으로 해소	-인력난 완화 -자금조달 애로 완화
	⑬ 산업단지 환경개선	-첨단 QWL 벨리 프로젝트 추진
	⑭ 민간 동반성장 추진 시스템 구축	-민간 ‘동반성장위원회’ 구성·운영 -동반성장지수 정기적 산정·공표 -동반성장 실적에 대한 포상 및 인센티브 체계 확립 -동반성장 규범 준수를 위한 교육 강화
	⑮ 정부 이행점검 시스템 마련	-동반성장 Cyber 종합지원센터 운영 -동반성장 추진 점검반 운영 -불공정거래 기업에 대한 제재 강화

자료: 동반성장위원회 백서(2012)

2.2. 주요 부처별 추진정책

2.2.1. 산업통상자원부

□ 주요 추진 분야

-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는 상생협력 정책은 대기업의 중소기업 성장지원 강화, 2·3차 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동반성장 생태계 확장, 동반성장 인프라 강화로 구분됨.
- ‘대기업의 중소기업 성장지원 강화’는 대기업의 내부자원을 개방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동반성장형 서비스가 가능한 ‘동반성장 개방형 플랫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대·중소 생산성혁신 파트너십 지원을 통해 협력사의 생산성 제고가 가능한 컨설팅분야 추가 발굴 및 중견기업의 참여 유도를 통한 지원을 확대함.
 - 대기업 출연 연구원의 특허기술의 중소기업 이전 활성화를 위해 ‘기술나눔 확산 MOU’를 체결하고, 기술공여 기관 추가 발굴 및 나눔기술 DB 구축, 이전대상 중소기업 발굴 등을 실시
- ‘2·3차 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해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산업혁신운동’, ‘성과공유제’을 시행함.
 - 산업혁신운동: 2·3차 협력사가 대기업·1차 협력사·전문가 지원 하에 기술혁신, 작업환경·생산공정 개선 등을 통하여 자발적 혁신운동을 전개하고 성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
- ‘동반성장 생태계 확장’을 위해서는 업종별로 지속적인 동반성장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므로 업종별로 개별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상생프로그램의 확산을 추진함.

- ‘동반성장 인프라 강화’는 지속가능경영의 고도화와 공유가치창출 문화 확산을 통해 산업계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임. 지속가능경영 실태조사, ‘사랑받는기업’정부포상, CSV포럼 운영, 우수사례 발굴·보급, 공유가치 전문인력 양성교육, 기업가정신 주간행사 연계 등이 있음.
- 동반성장 투자재원을 출연하여 협력 중소기업을 지원한 출연기업에 대한 혜택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에 따른 세액 공제,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른 지정기부금 인정, 동반성장위원회에서 공표하는 ‘동반성장지수’ 산정 시 가점 부여, ‘공공기관 중소기업 지원계획 및 추진실적 평가’시 중소기업 동반성장 지원 실적 가점 부여를 시행함.

표 3-13. 동반성장 투자재원 출연 시 혜택

혜택	주요 내용
세액 공제	총 출연금액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 법인세에서 공제
지정기부금 인정	해당 출연금은 지정기부금 손금 인정(5년간 이월 가능)
동반성장지수 가점 부여	참여 대기업·중견기업에 대하여 ‘동반성장 투자재원’ 평가항목으로 협약 및 출연한 실적을 반영
공공기관 평가시 가점 부여	총 5점 가점 중 동반성장 투자재원 출연시 2점 가점

자료: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투자재원(2015), 동반성장위원회.

- 인력개발 지원은 협력 중소기업의 인력채용 및 교육·훈련을 지원하고 대기업이 보유한 교육·훈련시설을 활용하도록 지원함. 더 나아가, 협력 중소기업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평생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에 위탁 시 소요비용을 지원함.
- 대기업이 보유한 생산설비를 협력 중소기업에 양도 시 소요비용을 지원하고 협력 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및 개수·보수를 지원하는 생산성향상 지원은 협력 중소기업의 직장보육시설 또는 직장체육시설에 대한 투자를 지원함.

□ 초과이익공유제

- 2011년 2월 제3차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제기된 ‘초과이익공유제’는 대기업에서 발생한 초과이익의 일부를 중소기업과 공유하고 실천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임.
- 한편 초과이익공유제는 ① ‘초과이익’이란 개념이 객관화가 거의 불가능하며, ② 납품 중소기업의 기여도를 측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③ 대기업이 연초에 목표 이익을 높게 설정하여 초과이익의 발생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경우 실효성이 없다는 점 등에서 제도화되지 못함.
- 초과이익공유제는 단순히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중소기업 및 협력사와 나누는 점에서 원가절감이나 기술개발 성과를 공유하는 ‘성과공유제’와는 차이가 있음. 초과이익공유제는 ‘성과공유제’와 마찬가지로 아직 동반성장지수의 가점항목으로 포함되어 있으나, 실제 적용사례는 거의 없음.
- 초과이익공유제의 개념과 유사한 출발점에서 제기된 제도는 ‘무역이익공유제(무역이득공유제)’로 FTA로 수혜를 보는 산업의 순이익 중 일부를 환수하여 농·어업 분야 등 피해 분야 산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임. 2015년 초부터 정부는 한·중 FTA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무역이익공유제의 도입이 논의되었으나, 무역이득공유제는 법리적 타당성 문제와 기술적 구현의 어려움 등으로 도입가능성이 낮음.
 - 무역이득공유제의 대안으로 FTA 피해지원제도를 개선하고, 무역피해금액을 수출세와 부가세에 부과하고 수익자가 부담토록 하자는 의견 제기⁵

⁵ 양승룡(2015)을 참고하여 작성함.

□ 성과공유제

- 성과공유제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하여 시행되는 제도로서 기업 간에 공동의 목표를 미리 약속하고 노력을 투입하여 거둔 성과를 사전에 정해진 방법으로 나누는 제도임.

표 3-1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정부는 수탁기업이 원가절감 등 수탁·위탁기업 간에 합의한 공동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탁기업이 지원하고 그 성과를 수탁·위탁기업이 공유하는 계약모델(이하 ‘성과공유제’라 한다)의 확산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업의 범위에는 제2조 제6호에도 불구하고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포함한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 지난 2012년 4월부터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성과공유제 시행 여부에 대한 판단, 객관적 실적 측정 및 평가를 위해 성과공유제확산추진본부에서 도입기업과 성과공유제를 확인하여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성과공유 확인제’를 운영하고 있음. 지난 2014년을 기준으로 성과공유 확인제를 도입한 기업은 170개 사, 등록과제는 4,859건에 달함.
- 성과공유제의 모델은 신제품·신기술 개발, 해외 동반진출, 기술이전, 공정개선, 성능개선, 원가절감, 관리시스템 개선, 서비스 용역 개선 등 다양함. 다양한 분야에서의 성과공유는 수·위탁기업간의 협의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유가 가능함. 단기적으로는 현금보상과 단가반영이 가장 대표적인 공유 방법이며, 신기술을 공동으로 특허 출원 및 권리를 공유하는 지식재산권 공유, 하도급계약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거래기간 연장(장기계약) 등도 공유 방법 가운데 하나임.

표 3-15. 성과공유 방법

공유방법	내용
현금보상	과제이행으로 발생한 성과 또는 수탁기업의 비용을 현금으로 일시 또는 분할 지급
단가반영	과제이행으로 발생한 원가절감이나 품질개선 등에 대해 가치평가를 통하여 산정된 가치평가액을 구매단가에 반영
구매물량 보장	성과에 대해 연간 단위의 구매물량을 보장 또는 유통업의 경우 거래형태를 직매입으로 전환하여 일정물량 구입 보장
물량확대	수탁기업 해당제품의 구매물량 또는 하도급 계약 물량을 증대
시제품(시작품) 구매	성과공유과제 이행과정에서 제작되는 개발품 또는 초도 생산품(시작품) 구매를 보장
지식재산권 공유	신기술, 신제품 개발 등을 수탁기업(협력사)과 공동으로 특허 출원 및 권리 공유
거래기간 연장(장기계약)	제품공급계약 또는 하도급 계약을 지속적(장기적)으로 유지
유통마진 인하	유사상품 대비 위탁기업의 유통마진을 줄여 수탁기업에 보상
입점기회 제공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입점
수의계약	성과공유과제 관련 제품 또는 용역을 수탁기업과 수의계약
우선구매	성과공유과제 개발 제품·소프트웨어·서비스·기술 등에 대해 우선 구매

자료: 대·중소기업협력재단 내부자료(2015)

- 기존 성과공유제는 수요기업-납품기업간 1:1 성과공유를 계약했으나, 동반성장위원회와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서는 앞으로 성과공유 계약(단가반영, 물량확보, 장기계약 등) 대상 및 범위를 수직적·수평적으로 대기업에서 2·3차 기업까지 확대하여 체결하는 ‘다자간 성과공유제’를 시범 계획 중에 있음.

2.2.2. 중소기업청

□ 상생협력 지원

- 중소기업청에서는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도모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대·중소기업 맞춤형 협력강화, 구매상담회, 동반성장 네트워크 구축, 수·위탁분쟁조정 등을 포함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상생협력지원사업의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하는 중소기업 범위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중소기업(1·2·3차)과 동반

성장을 위해 동반성장 프로그램(교육, R&D, 세미나)등을 지원하는 대기업 및 중견·중소기업으로 명시함.

- 대·중소기업 맞춤형 협력강화사업으로는 원가절감형 대·중소기업 공동사업, 동반성장 복지포인트제도 등이 대표적임. 원가절감형 대·중소기업 공동사업은 대·중소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원가절감 과제를 발굴, 원가혁신 활동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함으로써 글로벌 가격경쟁력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대기업과 협력사가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당해 연도에 완료 가능한 원가절감 과제에 대해 자금을 지원함. 동반성장 복지포인트 제도는 정부와 대기업, 협력사가 공동으로 자금을 조성하여, 대기업의 성장에 기여한 1·2·3차 협력사 종사자에게 복지포인트를 지원함.
- 판로 확보 측면에서 중소기업청은 대기업의 구매 방침 설명 및 납품업체에 대한 비즈니스 상담을 통해 신규 판로 개척 및 협력 기회를 제공하고자 ‘대·중소기업 구매상담회’를 연 4회 개최하고 있음. 이를 통해 대·중소기업간 만남의 장(Business match-making fair)을 마련하고 동반성장 분위기를 확산시키고자 함.
- 대·중소기업의 해외 동반진출을 통한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필요성과 FTA 확장에 따른 글로벌 시장 선점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각종 행사와 지원을 통해 대기업의 네트워크·인프라를 활용한 기존 동반진출 추진 사업을 강화함.
 - 홈쇼핑: 중기제품 해외홈쇼핑 관련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현지어 번역비용 지원 등 사전 준비 강화와 수출상담회사 해외 MD의 품평과 수출교육을 병행하고 사전 번역비용 지원
 - 판촉행사: 기존 행사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해외진출 유통대기업의 매장 인프라를 활용하여 생활용품 분야에 대한 중소기업제품 판촉 강화와 올리브영(CJ), GS25(GS) 등 해외진출 드럭스토어·편의점 활용

- 전시회, 수출상담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유명전시회 동반참가 지원 및 협력바이어를 초청하여 수출상담회를 개최하고 네트워킹 등 부대행사 연계
- 공간인프라: 대기업 해외법인·사무소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초기진출 비용 경감

표 3-16. 세부 과제별 지원계획(안)

구분	세부과제	14년 실적	15년 계획(안)
		횟수(업체수)	횟수(업체수)
홈쇼핑	○ 해외 현지 수출상담회 ○ 소싱페어 개최 ○ 홈쇼핑영상 제작	1회 (15) 1회 (124) (75)	4회 (50) 2회 (200) (120)
관측행사	○ 한류콘서트 연계 판매부스운영 ○ 온라인 쇼핑몰 입점지원 ○ 오프라인 해외매장 관측전	2회 (91) (48) 2회 (53)	4회 (200) (100) 3회 (100)
전시회 수출상담회	○ 전시회 동반참여 지원 ○ 중소기업 수출상담회 개최	5회 (69) 6회 (78)	8회 (100) 10회 (120)
공간인프라	○ 해외 사무·전시공간 제공	3개국 (48)	4개국 (60)

자료: 2015년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시행계획 고시(2015), 산업통상자원부.

- 기술 및 R&D 분야에서 중소기업청에서는 기술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기술획득 정책정보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해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은 수요기관(정부, 공공기관, 대기업)이 구매의사를 밝히고 기술개발을 제안한 과제에 대해 중소기업이 개발하는 사업으로써 개발단계부터 제품의 판로확보를 통해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하고 경영안정을 지원하여 국산화 및 신제품 개발을 촉진함. 또한, ‘기술자료임치제도’는 중소기업이 개발한 핵심 기술자료를 신뢰성 있는 기관(기술자료임치센터)에 등록 및 보관함으로써 기술보호를 위한 증빙자료로 활용하고 임치기업의 도산, 폐업시 사용기업의 안정적인 기술사용을 보장하도록 함. 기술자료임치제도의 지원대상은 핵심기술, 영업비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임.

□ 동반성장 네트워크 확대 구축

- 수탁기업의 교류 활성화의 필요성이 두드러짐에 따라, 위탁기업별·업종별·지역별 수탁기업협의회 결성을 확대하고, 수탁기업협의회 운영지원을 통해 경쟁력 강화 및 교류활동을 통한 협력 과제 발굴에 귀추가 주목됨.
 - 수탁기업협의회는 특정 위탁기업체와 수탁기업체간 대등한 거래 관계 유지를 위하여 시장·기술·경영 등의 정보를 교환하고 수탁기업의 애로 사항을 해결하는 등 협력관계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구성한 협의체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12498호제17조)
- 동반성장 네트워크 구축은 대기업 및 1·2·3차 협력사간 동반성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동반성장 문화 확산 및 확대 유도를 목적으로 하며, 수탁기업협의회(2·3차 협의회 포함), 협의회 운영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경영노하우 전수, 기술교류회, 2·3차 협력사 수탁기업협의회 결성, 교류 및 연구 활동, 협력과제 수행 등의 분야를 지원함.
- 기술·시장·경영정보 교류회 등 회원사간 교류 활동 운영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수탁기업 업무역량을 강화함.

□ 공정거래 제도 활용도 제고

- 중소기업의 불공정한 거래관행(부당반품, 부당단가인하 등)을 개선하고 신규 도입된 제도 활용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는 시스템이 필요함.
- 중소기업의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사전방지 방안을 배포하고, 불공정신고센터를 통한 상시적 법률 서비스를 제공함.
 -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수·위탁 및 불공정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자율조정, 법률자문 지원으로 합리적 해결방안을 제시

-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등 5개 법률 위반 사건에 대하여 고발하지 않아도 중소기업청장 재량으로 중소기업 피해 및 사회적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고발을 요청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의무고발요청권 제도를 실시함.
- 공정거래 제도 홍보의 일환으로 공정거래 관련 제도 활용을 위해 설명회, 홍보물 등을 활용한 지속적 홍보도 진행함.
- 수·위탁분쟁조정은 수·위탁거래에서 발생한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분쟁조정 지원을 통해 소송 이전 단계에서 합리적 해결방안 제시하는 것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간 수·위탁거래에서 분쟁 및 애로가 있는 기업들에 대해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한 자율적인 분쟁조정 및 법률전문가와의 무료 법률상담을 지원함.
- 전문 변호사를 통한 전화·방문 상담, 법무법인을 통한 법률자문 지원 등을 통해서 분쟁·상담·조정 및 법률자문을 지원함. 2014년을 기준으로 전문 변호사를 통한 수위탁거래 분쟁 및 불공정거래 상담은 341건이 접수되었고, 원활한 법률자문을 위하여 2013년에는 대한변호사협회와 MOU를 체결하였고 2014년 105건, 2015년 100건의 법률자문이 법무법인을 통하여 이루어짐. 당사자간 조정이 미합의 될 경우,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에서 자율조정 하도록 함.
- 분쟁 예방을 위한 공정거래 교육도 실시하고 있음. 대기업 및 협력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무료 공정거래를 교육하고(2014년 22회, 2015년 25회), 수·위탁거래 실태조사에 의한 별점 부과 기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지역특화발전 특구

- 중소기업청에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방의 자립화를 위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규제개혁을 추진함으로써 민간의 활력을 최대한 활용한 차별화된 특화사업을 발굴·발전을 제도적으로 지원함. 지역특화발전 특구의 목적은 자치단체의 자발적인 입안으로 지역별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특정구역을 설치하여, 지방 스스로가 특화된 개발전략을 추진함으로써 각 지역 내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지역경제의 발전 및 자립화를 위한 새로운 모멘텀을 창출하는데 있음.
- 지역특화발전 특구의 기본 이념은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규제 완화에 있음. 정부가 사전에 개발모델을 제시하지 않고, 자치단체가 자율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특화된 발전전략을 추진함으로써, 경제사회 활력을 창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발상의 전환을 도모함(‘규제도 지역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새로운 접근으로 지역별 규제특례를 인정함으로써 자치단체가 지역개발사업을 추진).
-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을 제정한 것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로 특구지정을 신청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정된 특구에 대해 운영하며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에서는 특구 운영을 평가하는 것이 지역특화발전 특구의 기본적인 업무 흐름임.

2.2.3. 공정거래위원회

□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관행 근절

- 기획재정부, 산업자원부 등 10개 부처는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 정착을 위해 ‘부처간 하도급정책협력 네트워크’를 설립하여 하도급법 상습 위반 업체와 하도급거래 모범 업체 리스트를 관련부처에 공지하고, 이 리스트를 기반

으로 제재를 가하거나 인센티브를 제공해 불공정관행을 근절하려고 함.

- 별점 누진제도를 도입하여 하도급법 위반 기업에게 유형 별로 경고, 시정권고,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단계의 별점을 부과하고 누적별점에 따라 관계 기관에 영업정지 또는 입찰 자격을 금지하는 제재를 취함.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활동에서 불공정 하도급 피해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접수하면 위원회에서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를 개최하여 불공정 거래의 사실을 확인하고 분쟁 해결 과정을 거치는 분쟁조정협의제도를 운영함.

□ 중소기업에 대한 부당한 차별·배제 시정

- 기술력 있는 중소벤처기업이 시장에서 배제되지 않고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됨.
- 중소기업의 경쟁을 제한하는 시장구조 개선을 위해 부당내부 거래, ICT등 신성장분야에서의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 등을 감시함.

□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 실적 평가

- 실적평가는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량조사로 매년 1~5월 사이 연 1회 실시되며, 평가항목은 실적평가의 경우 협약내용의 충실도(30점)와 협약내용의 이행도(70점)를 포함함. 가점항목으로 동반성장에 적극적 참여정도를 평가하여 반영하며, 감점항목으로는 하도급법 위반 여부와 동반성장에 반하는 행위 여부 등이 고려됨.
- 협약내용의 충실도는 협약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 및 표준협약서 반영 정도, 지원내용의 규모·정도, 1차 협력사의 2차 협력사 지원계획을 감안하여 평가됨. 이행도는 협약 상 공정거래 이행 정도, 상생협력 지원내용 이행 정도, 1차 협력사의 2차 협력사 지원실적을 기준으로 평가됨.

표 3-17.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기준

구분	하도급 분야 평가기준(제조업종)	유통 분야 평가기준
충실도 (30점)	·표준협약서 반영정도(2점) ·상생협력 지원계획(23점) ·2차협력사 지원방안 도입계획(5점)	·표준협약서 반영정도(4점) ·상생협력 지원계획(26점)
이행도 (70점)	·공정거래 인프라 구축(17점) - 4대 가이드라인, 표준하도급계약서 도입·운영 등 ·상생협력지원 이행도(43점) ·2차협력사 지원 이행도(10점)	·공정거래 인프라 구축(29점) - 공정한 유통거래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운영, 표준거래계약서 도입·운영 등 ·상생협력 지원 이행도(41점)
법위반 행위 (△30점)	·협약기간 중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따른 시정조치가 있는 경우(최대 30점 감점)	·협약기간 중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따른 시정조치가 있는 경우(최대 30점 감점)
동반성장 에 반하는 행위 (△10점)	·대기업의 임직원이 협력사와의 관계에서 뇌물수수 등 기업윤리와 동반성장에 반하는 행위로 사회적 지탄을 받은 경우	·대기업의 임직원이 협력사와의 관계에서 뇌물수수 등 기업윤리와 동반성장에 반하는 행위로 사회적 지탄을 받은 경우
적극적 동반성장 참여 (가점)	·기간내 재협약, 연동제 실시, 협력사 경영과 관련된 직간접 지원, 해외동반진출 실적, CP평가 결과(최대 9.5점 가점)	·기간내 재협약, 판매수수료 인하정도, 직매입거래 비중 증감, 경영과 관련된 직간접 지원, 해외동반진출 실적, CP평가 결과(최대 11.5점 가점)

자료: 동반성장지수 평가결과 발표 보도자료(2015), 공정거래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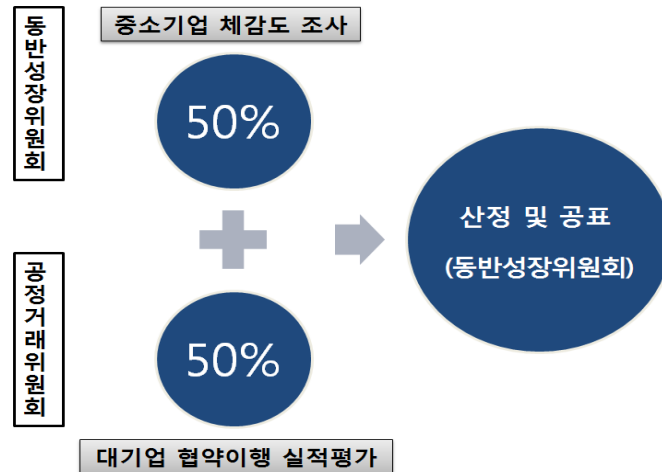
2.2.4. 동반성장위원회

□ 동반성장지수

- 동반성장위원회와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서는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동반성장 추진동력 제공을 위해 동반성장지수를 “상생법” 제2조 제10호에 근거하여 산정 및 공표하고 있음. 평가 대상은 사회적 관심이 크고 동반성장 파급효과가 큰 151개 대기업(2015년 기준)⁶이며, 동반성장위원회가 실시하는 중소기업 체감도 조사 결과가 50%,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대기업 협약 이행 실적평가가 50%씩 반영되어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산정하는 방식임.

⁶ 동반성장지수의 평가대상은 2013년 108개사에서 2014년 132개사, 2015년에는 151개사까지 확대됨.

그림 3-1. 동반성장지수 평가 방법



자료: 대·중소기업협력재단 내부자료(2015)

- 동반성장지수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대기업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에 대한 실적평가와,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체감도 평가를 종합하여 결정됨.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체감도 조사는 거래관계(40점), 협력관계(30점), 운영체계(30점) 평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감점 항목을 포함하고 있음.
- 동반성장지수는 최우수/우수/양호/보통 4개 등급으로 산정되며, 기업의 자율적·창의적인 동반성장 활동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반영하고, 기업 특성 및 실정에 맞는 동반성장 경영전략 수립과 시행, 문화확산 등 자율적인 활동성과를 지수에 반영하는 등 평가체계를 개편하고 있음.

표 3-18. 체감도 조사 평가항목 및 세부 배점기준(제조업 기준)

항목	세부 평가항목	배점
A . 1차 협력사 평가항목		
1. 거래관계 (40점)	(1) 공정거래 구두발주 및 부당한 발주 취소 /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기업과의 거래 금지 / 어음할인료나 대금 지연이자 지급 안함 물품 인수의 부당 지연, 거절 혹은 반품(혹은 준공검사의 부당 지연) / 납품대금의 일부 혹은 전부를 물품으로 지급 / 산업재산권 유용 또는 탈취 /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 부당한 원가자료 요구나 부당한 현장실사 강요 / 부당특약·이중계약 / 전문인력 유출	20
	(2) 거래조건 결제수단(현금, 현금성결제) / 법정기한내 납품대금 지급 / 납품단가 협력사 협의 / 원자재가격 인상요인의 가격 반영 / 추가비용 발생시 합리적 단가조정 / 정당한 사유없는 단가 인가/ 부당한 대금 감액 / 계열사나 관계회사의 부당한 특혜 / 공개(전자) 시스템 운영 / 성과공유제 시행 /	20
2. 협력관계 (30점)	(1) 자금 분야 직접 자금 대여(운영자금, 시설자금, 기술개발자금) / 간접 금융 지원(은행·보증기관 연계지원)	2
	(2) 연구개발 분야 공동 연구·개발 / 연구시설이나 연구개발을 위한 지원 / 공동으로 기술 공유 또는 활용	6
	(3) 생산 분야 공정개선 및 기술(품질) 지도 / 설비 대여/ 원자재 제공	6
	(4) 판로 분야 국내 마케팅 협력 / 해외 마케팅 협력	4
	(5) 경영관리 분야 경영관리, 경영혁신 지원 / 복지·후생 지원 / 애로사항 청취	6
	(6) 인력 분야 교육·연수·훈련 등 지원 / 시설, 비용, 강사과건 등 인프라 지원 / 대기업의 브랜드 활용, 채용박람회, 공동채용 등	6
3. 운영체제 (30점)	(1) 인식 및 비전공유 CEO의 동반성장 의지 / 거래 담당자의 의식수준 / 비전공유 정도	6
	(2) 추진체제 동반성장 계획 수립 / 동반성장 조직 운용 / 공식 협의기구 / 생산·수요정보 채널 구축 / 합리적인 협력사 선정·운영 / 명문화된 보복금지 지침 보유 / 기밀유지약정 체결 / 기술자료 임치제도 운영	16
	(3) 환경 조성 청렴수준 평가 / 인격적 모독이나 일방적 압박 경험 / 산업재해에 대한 부당한 처리요구 / 2차 협력사와의 동반성장 추진 안내	8
* 5점 척도를 기본으로, 일부 협력관계 항목은 '해당사업 없음'의 답변이 가능		
B . 2차 협력사 평가항목(건설·유통·정보통신 등 일부 업종 제외)		
공정거래	대기업의 2차 협력사와 동반성장 의지 / 결제조건 / 납품단가 조정 정보 공유 / 1차 협력사의 동반성장 지원 / 대기업의 동반성장 노력	100
* 1차 : 2차 = 85% : 15%으로 산정		
C . 가감점 평가항목		
	○ 중기적합업종 이행, 성과공유제, 협력이익배분제, 동반성장 투자 및 지원 등 (해외동반진출, 인력개발, 생산성향상, 동반성장 투자채원)	가점 (12점 이내)
	○ 적합업종 위반, MRO(Maintenance, repair and operation) 가이드라인, 기술탈취, 전문 인력탈취,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행위, 골목상권 침해 등 사회적 불의 행위	가점 (-7.5점 이내)

자료: 동반성장지수 평가결과 발표 보도자료(2015), 공정거래위원회.

□ 중소기업 적합업종

- 대·중소기업간 합리적 역할분담,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 및 건강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상생법” 제2조, 제20조의 2에 근거하여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지정기간은 3년이며, 1회에 한하여 최대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함. 2015년 2월을 기준으로 사업축소 15개, 확장자제 52개, 진입자제 4개, 시장감시 8개, 상생협약 25개를 포함하여 104개 업종이 적합업종으로 선정되어 있음.
-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품목은 단무지, 장류(간장, 된장, 고추장), 전통떡, 제과점업, 김치 등 71개이며, 동반성장위원회에서는 적합업종 기업의 취지와 실효성을 제고하고, 관련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자 2015년에 적합업종 기업 R&D에 27억 원 규모의 예산을,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에 6.4억 원의 예산을 각각 지원할 계획임.

3.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 관련 정책과 최근 동향

3.1.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3.1.1. 추진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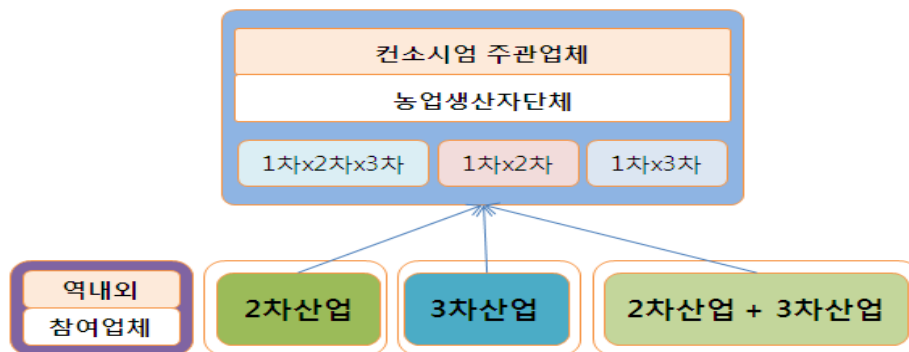
- 농업의 부가가치 향상과 농가 소득 증대, 농촌 활력 증진을 목표로 1차 산업인 농업에 2, 3차 산업을 접목하는 6차산업화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6차 산업화의 체계적 추진과 지원을 위해 2010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

-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농업 6차 산업화의 활성화를 통해 농산물의 부가가치제고를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2014년부터 추진되기 시작함.

3.1.2. 지원내용

-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컨소시엄 지원사업과 복합농장 조성사업으로 구분됨. 컨소시엄 지원사업은 농업 생산자단체(농업법인을 포함)가 주도적으로 2차와 3차 산업분야의 주체 또는 2+3차 산업주체와 연계하여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함.
 - 국비 50%와 지방비·자부담 50%로 구성되며 총 20개소에 대해 3억 원 한도로 지원

그림 3-2. 컨소시엄 구성 형태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 컨소시엄 선정의 심사 평가항목은 ‘구체성 및 타당성’, ‘사업추진 체계 및 수행주체’, ‘사업비조달 및 자부담 분담계획’, ‘성과창출 가능성’ 등으로 구성되며, 기준별 배점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3-19. 컨소시엄 선정사업 평가기준 및 배점

평가항목	주요 심사내용
사업내용의 구체성 및 타당성(40점)	-세부사업계획의 구체성 -사업의 기대효과가 구체적으로 명시 여부 -세부사업내용이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성
사업추진체계 및 수행주체(20점)	-사업에 적합한 컨소시엄 구성여부 -농업인생산자단체(주관업체) 사업수행역량 -참여주체간 역할분담 및 연계적정성 여부
사업비조달 및 자부담 분담계획(20점)	-재정투자계획(안) 적정성 및 자부담 확보여부 -세부사업별 재원별 용도의 구체성여부 및 적절성
성과창출 가능성 (20점)	-사업목표치 달성이 가능하며, 사업목표치를 측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의 제시여부 -제시된 사업계획을 현실적으로 수행 가능 여부
가점(5점)	-6차산업(예비)인증 사업자에 대한 가점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 선정된 컨소시엄 사업단은 공동마케팅과 스토리텔링, 품질관리 및 품질관리 시스템 개발, 상품화(포장, 디자인, 특허출원)비용, 역량개발 교육, 소비자·시장조사 활동 등을 지원받게 됨.

표 3-20. 컨소시엄 지원사업 자금사용 용도

분야	사업내용
마케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마케팅(판로확보, 판촉, 임차료, 브랜드 및 디자인개발 등) ▪ 스토리텔링 * 임차료는 전시·판매를 위한 것이어야 하며, 1차 농산물 운송비, 투어 버스 차량 임차료로 활용 가능
품질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질관리, 품질관리 시스템 개발 등 공동으로 사용가능한 서비스 개발 * 1차 생산물 품질관리(재배기술, 종자개량 등)을 위한 지원사업은 제외
상품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제품 및 포장디자인 개발 비용, 기술이전 비용, 특허출원 비용 등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자의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 * 해외 선진지 견학은 제외
시장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자 트렌드 분석 및 시장조사 등

자료: 농림축산식품 사업시행지침서(www.manual.agrix.go.kr)

- 복합농장 조성사업은 완전한 6차 산업화로 이행하기 어려운 경영체를 중심으로 사업장을 리모델링하거나 시설 및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창업 및 자금지원 사업임. 복합농장조성사업은 기존 가공 및 체험 시설물의 일부(내·외부) 환경개선비와 가공품, 체험프로그램의 홍보 및 관측비, 시제품의 생산비 와 디자인 개발, 체험프로그램 개발비 등의 용도로 이용이 가능함.
 - 국비 50%, 도비 9%, 시군비 21%, 자부담 20%로 구성되며 사업별 1억 원 지원
 - 복합농장 선정의 심사 평가항목은 ‘구체성 및 타당성(30점)’, ‘사업추진 주체의 역량(20점)’, ‘성과창출 가능성(20점)’, ‘사업의 기대효과(20점)’, ‘정부지원의 필요성(10점)’, 6차산업화 예비인증 사업자에 대한 가점(5점)으로 구성

표 3-21. 복합농장 조성사업 자금사용 용도

분야	사업내용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가공 및 체험 시설물의 일부(내·외부) 환경개선 * 신규건축 이나 전면 개보수는 자부담을 활용할때만 가능
체험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험프로그램 온·오프라인 홍보 및 관측비 ▪ 체험프로그램 개발비
제품생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제품 생산비 및 디자인 개발 비용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이외에도 기존에 존재하던 농림어업 및 식품 지원사업을 통합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음.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17개 기관과 9개 지방자치단체가 금융, 컨설팅, 교육, 수출 등 10개 분야에 대해 총 219가지 지원정책을 제공함⁷. 6차산업 활성화 지원센터를 통한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도 함께 추진 중에 있음. 6차산업화지원센터는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별 9개소(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남, 전북, 경북, 경남, 제

⁷ 보다 자세한 내용은 6차산업화 지원정책 매뉴얼(2014)을 참조.

주)가 운영 중이며, 6차산업 사업자에 대한 지원 인프라 지원과 6차산업 사업자 인증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됨.

3.2.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육성사업

3.2.1. 추진배경

- “산업융합촉진법” 시행 이후,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육성사업은 생산자와 제조업체간의 협력관계를 통해 농어업인의 소득창출과 제조업체의 안정적인 원료 확보체계 지원을 목적으로 추진됨. 2010년 7월 제 65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농어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육성전략’을 확정함. 농림축산식품부와 중소기업청이 공동으로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육성 지원단’을 설립하고 정책을 구체화·실천함.
-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은 ‘농어업인과 중소기업이 유기적으로 원료조달, 제조가공, 기술개발을 연계하여 산업활성화 및 지역경제를 발전 시키는 것 즉, 하나의 제품 생산을 위해 농림어업, 공업, 상업이 효과적인 융합체(연대)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함.⁸

3.2.2. 지원내용

-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육성사업은 융자사업이며 농림축산식품부와 중소기업청이 공동으로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참가 경영체)을 선정하여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을 융자·지원하는 사업임.
 - 지원한도는 총 40억 원 규모이며 운영자금만 지원하는 경우 20억 원 한도

⁸ 김용렬 외(2011)를 참고하여 작성함.

-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은 2년 동안 유효하며 기간 만료 후 평가를 통해 최대 3회까지 재지정이 가능
- 업체 선정의 평가항목은 농공상 융합사업의 추진 필요성 및 의지(15점), 융합경영체 구성의 적절성(15점), 융합사업의 안정성(20점), 융합제품의 기술성과 시장성(15점), 자금조달의 적정성과 생산능력(10점), 마케팅 능력(10점), 연구개발 능력(10점)으로 구성됨. 가점항목으로 원재료 국내산 매입비율(5점)과 벤처·이노비즈기업/협업사업승인기업/R&D 선정기업(5점)이 포함됨.
-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유형은 공동출자형(농어업인과 기업이 공동출자하여 중소기업 설립), 전략적제휴형(농어업인과 중소기업이 안정적인 원료조달, 신제품 개발 및 판매를 위한 장기계약), 농어업인경영형(농어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가 직접 제조·가공단계까지 확장)으로 구분됨⁹.

표 3-22.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현장평가 평가기준 및 배점

평가항목	배점	비 고
농공상 융합사업의 추진 필요성 및 추진의지	15	
농공상 융합경영체 구성의 적절성	15	
융합사업의 안정성	20	
융합제품의 기술성 및 시장성	15	
자금조달의 적정성 및 생산능력	10	
마케팅 능력	10	
연구개발 능력	10	
기대효과 및 가점 * 원재료 국내산 매입비율(5점) ** 벤처·이노비즈기업, 협업사업승인기업, R&D 선정기업(5점)	15	가점10점 포함
계	110	

자료: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설명회 자료(2012), 농림축산식품부, 중소기업청.

⁹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설명회 자료(2012), 농림축산식품부, 중소기업청.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내 농수산물기업지원센터가 사업시행주체 및 전담 관리기관으로 지정되어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을 지원함.

표 3-23.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육성사업 내용

재원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대출금리	3%
대출기한	시설자금 10년 (3년 거치 7년 상환)	지원기준	총 사업소요액의 80%이내 융자, 자부담 20% 이상
사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자금: 저장·가공·부대시설의 건축·확보·증설·개보수 및 물류장비 구입비(단, 부지매입비 제외) ▪ 운영자금: 원료구입, 저장, 가공, 운송 등 기업경영비용 		

자료: 농림축산식품 사업시행지침서(www.manual.agrix.go.kr)

-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은 이외에도 기존에 존재하던 중소기업 및 식품관련 지원사업의 수혜를 받을 수 있음. 중소기업청은 농어업과 중소기업의 융합도 일반 중소기업 협력에 준하여 지원하며 농림축산식품부는 6억 원 규모의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활성화 자금을 마련하고 기존 지원사업에 포괄적용을 추진함.
- 2014년 기준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은 총 300곳이 선정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관련예산은 2013년 372억 원, 2014년과 2015년이 각각 172억 원이 확보됨.

표 3-24. 농공상용합형 중소기업 육성사업 부가 지원내용

구분	재원	사업명
농림축산식품부	농공상용합형 중소기업 활성화 자금	농협 하나로마트 테스트판매 및 신규계약지원
		KFS 농공상용합형중소기업홍보관 참가지원
		해외기술로드쇼 참가 지원
		농공상용합형 중소기업 연찬회
		농공상용합형 중소기업 신규 및 재지정, 홍보, 학회 및 협의회
		농공상용합형 중소기업 우수사례집 발간
	연구개발자금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가점 3점)
	식품컨설팅자금	농공상용합형중소기업 컨설팅지원 현장애로 기술 컨설팅 지원
	농공상용합형 중소기업육성자금	농공상용합형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
	중소기업 협력지원자금	중소식품기업 협력지원사업 중소식품기업 판로개척지원사업
우수농식품구매지원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	우수농식품구매지원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	
중소기업청	연구개발자금	중소기업융합지원센터 연계형 기술개발사업(가점 2점)
		중소기업 제품·공정개선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 산학협력기술개발사업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정책자금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신성장기반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투융자복합금융자금
		경영안정자금
	수출지원자금	중소기업 해외인증 획득지원사업
		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가점 2점)
	컨설팅지원자금	중소기업 컨설팅지원(가점 2점)
	기타	농공상용합형 중소기업 건강관리 진단
농수산물가공판매 소규모창업활성화지원		
기술보증지원 PL단체보험지원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13. 2. 12.

- 농공상용합형 중소기업 유형별로는 전략적 제휴형이 71.7%로 다수를 점하고 있으며 농어업인 경영형이 27.0%, 공동출자형은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표 3-25. 농공상용합형 중소기업 지정 현황

단위: %(업체 수)

지정연도	업체유형별 지정 현황			
	전략적 제휴형	농어업인경영형	공동 출자형	합계
2013	78.3(90)	20.0(23)	1.7(2)	100.0(115)
2014	67.6(125)	31.4(58)	1.1(2)	100.0(185)
계	71.7(215)	27.0(81)	1.3(4)	100.0(300)

자료: 농공상용합형 중소기업 지원실태와 육성과제(2015), 산업연구원.

3.3. 농촌사회공헌인증제

3.3.1. 추진배경

- 2003년부터 민간을 중심으로 농촌과 도시간 교류를 활성화시키자는 취지의 ‘1사1촌 농촌사랑 운동’이 전개됨. 농촌과 기업 등 단체가 자매결연을 맺고 도·농간 상생과 교류를 실현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2006년 농협중앙회의 주도로 (사)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가 출범하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2009년 농촌사랑운동본부는 한국표준협회와 1사1촌 운동을 활성화시키고 적극적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1사1촌 자매결연 우수기업 인증제도를 도입함.

표 3-26. 조직형태별 1사1촌 자매결연 현황

단위: 쌍

연도	계	기업체	소비자단체	사회/중고 단체	관공서 등	농협 등	학교 등	기타
2014	11,195	4,546	671	681	1,791	1,226	1,036	1,244
2013	10,446	4,252	595	640	1,721	1,126	960	1,152
2012	9,627	4,035	522	565	1,615	916	862	1,112

자료: (사)농촌사랑운동본부 내부자료

3.3.2. 지원내용

- 2013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가 참여하여 ‘농촌사회공헌인증제’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농촌사회공헌 조직체계, 사회공헌활동 실적 및 활성화, 도농상생 프로그램 운영, 종합평가의 4개 분야로 평가하고 최소 3년 이상의 공헌기간이 요구됨.
 - 농촌사회공헌 인증기업은 자금조달 우대와 정책사업 평가 또는 용역구매 입찰시 가점 등의 혜택을 부여

표 3-27. 농촌사회공헌 인증기업 선정 현황

2013 선정기업(단체)	2014 선정기업(단체)
(주)경농	구미라이온스클럽
고려대학교구로병원	(주)대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대구파티마병원
(주)농협유통	대우인터내셔널
대구광역시시설관리공단	서울특별시강동구도시관리공단
대한저적공사	수원여자대학교 사회봉사단
(주)라인테크시스템	신한금융투자
(주)벤티코리아	아시아나항공(주)
삼성생명보험(주)	(재)자생의료재단
삼성중공업(주)	(사)자전거21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주)중앙고속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청수식품(주)
신동아건설(주)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주)정립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주)한국거래소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사)한국건강관리협회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마사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예탁결제원
해양환경관리공단	현대자동차(주)전북지역본부
(주)현대미포조선	
현대증권(주)	
LIG넥스원(주)구미생산본부	

자료: (사)농촌사랑운동본부 내부자료

3.4. 농어업경영체 육성과 민간투자 활성화

3.4.1. 농업법인제도 추진과 변화

- 1990년 수입개방 압력 등 국제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우리농업의 구조 개선과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이 제정되면서 영농조합법인과 위탁영농회사의 육성이 규정됨.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개정을 통해 영농대행서비스조직에 불과했던 위탁영농회사가 농업회사법인으로 변경되었으며,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설립과 운영요건이 지속적으로 완화됨. 1994년에는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자격 요건에서 영농종사 요건을 폐지하고 농업인이 아닌자도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하고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1999년에는 영농조합법인 조합원 및 준조합원의 출자한도를 폐지하고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비농업인의 출자한도를 1/3이하에서 1/2이하로 완화함.

표 3-28.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 법인

구 분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주식, 유한, 합명, 합자)
설립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5인이상이 조합원으로 참여 - 결원 시, 1년 이내에 충원(미충원 시 해산 사유) ▪ 비농업인은 의결권 없는 준조합원으로 참여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가 설립 ▪ 비농업인은 총출자액의 100분의 90 한도 내에서 출자 가능 - 다만, 총 출자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총출자액에서 8억을 제외한 금액을 한도로 함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의 경영 및 부대사업 ▪ 농업관련 공동이용 시설의 설치 및 운영 ▪ 농산물의 공동출하·가공 및 수출 ▪ 농작업의 대행 ▪ 그 밖의 영농조합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동법 시행령 제1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경영,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 농작업 대행 ▪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공급, 종자 생산 및 종균배양 사업 ▪ 농산물의 구매·비축사업 ▪ 농기계 기타장비의 임대·수리·보관 ▪ 소규모관개시설의 수탁·관리 (동법 시행령 제19조)
농지소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유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유 가능(단,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가 1/3 이상 농업인일 것) * 농지법 제2조 제3호
운영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법인 수 : 10,023개 ▪ 법인당 평균 매출액 : 1,254백만 원 ▪ 매출액 10억 이상 법인 수 : 1,684개 ▪ 법인당 평균 출자액 : 204.3백만 원 (통계청, 2013.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법인 수 : 2,958개 ▪ 법인당 평균 매출액 : 2,720백만 원 ▪ 매출액 10억 이상 법인 수 : 742개 ▪ 법인당 평균 출자액 : 534.9백만 원 (통계청, 2013.11)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서 2000년 “농업·농촌기본법”으로 농업법인제도의 근거 법령이 이관되었으며, 2007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2009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이관되어 농업법인을 포함한 농어업경영체 육성의 법체계를 갖추.

3.4.2. 농지소유 요건의 완화와 세제혜택

- 농업법인제도가 변화하고 민간부문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정부는 “농지법”의 개정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자본의 유입을 뒷받침하고자 함.
- 2003년 개정을 통해 농업회사법인의 형태중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만 소유할 수 있었던 농지를 주식회사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며, 2006년에는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 요건 중 농업인 출자액이 총 출자액의 1/2를 초과해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함.
- 당초 농지소유를 위해서는 농업회사법인의 대표가 농업인이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2009년 개정된 “농지법”은 해당조항을 삭제하여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 여건을 더욱 완화함.
 - 이와 더불어 업무집행권자 중 농업인의 최소 비중도 1/2에서 1/3으로 완화
- 한편, 농업법인의 육성을 위한 방편으로 농업법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해 국세인 법인세 및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의 면제와 감면조치를 실시함.
 - 지방세인 부동산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재산세 또한 면제 및 감면하였으며 조합원 또는 사원에게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도 면제

표 3-29. 농업법인에 대한 세제지원 현황

구분		세제지원 내용
국세	법인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소득 면제 ▪ 기타소득 면제와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농조합법인: 출자조합원당 연 1,200만 원까지 소득공제 - 농업회사법인: 법인세 50%감면(최초 소득발생년 이후 3년간)
	부가가치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경영 및 농작업 대행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제 ▪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지방세	취득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설립 후 2년 이내 취득한 부동산 취득세 면제 ▪ 영농, 유통, 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세 50%감면
	등록면허세	법인설립 등기시: 면제(법 266조 제7항)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 업무 직접사용 부동산 50%감면
조합원	양도소득세	농지출자시 양도소득세 면제
	배당소득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소득의 배당소득 면제 ▪ 영농조합법인: 기타소득의 배당소득세율 5%, 종합소득세 합산 배제 ▪ 농업회사법인: 기타소득의 종합소득세 합산 배제

자료: 김미복·김수석(2011)

3.5. 기업의 농업법인 진출 현황

- 농업법인에 대한 비농업인 출자 제한이 사라지고, 비농업인의 출자한도가 90%까지로 완화되는 등 비농업인의 농업경영 주체로서의 역할이 제도적으로 뒷받침 됨.
 - “축산법”의 개정을 통해 자산 총액 10조 원 이상의 대기업도 축산업에 참여토록 완화
- 농업부문의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농업법인에 대한 출자한도를 상향조정하는 등 민간 자본유입을 통한 활성화 방안이 모색되고 기업의 농업진출의 발판이 마련됨.

- 한편, 2013년 동부그룹은 간척지에 대단위 농지를 활용하여 수출농업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목적으로 2010년부터 3년에 걸쳐 화옹 첨단유리온실을 조성하여 농업 생산에 참여코자 하였으나 농업인의 반발이 심각해지면서 사업을 중단함. 농업과의 직접적인 경합 가능성이 존재할 경우, 기존 농업인들의 저항에 직면할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

표 3-30. 대기업의 주요 농업법인 진출 사례

기업명	사업내용
아모레퍼시픽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회사법인 '장원'을 설립하고 제주도 내 총 190ha 규모 녹차경작 오설록 제품 생산
LG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묘목생산 농업회사법인 '곤지암예원'을 보유하고 리조트 및 수목원에 조경용 수목·화초 공급
KT&G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삼과 한약재 재배를 위해 농업회사법인 '예본농원'을 설립하고 직영농장을 운영
SK	<ul style="list-style-type: none"> 'SK임업'을 통해 조림지를 보유하고 임산물 유통과 산림휴양시설 특화를 위한 중장기 플랜 수립
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회사법인 현대서산농장을 설립하고 현대백화점 등 납품
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회사법인 '새만금팜'과 '세이프슈어', '동부팜' 보유

주: 김태곤 외(2013)를 중심으로 재작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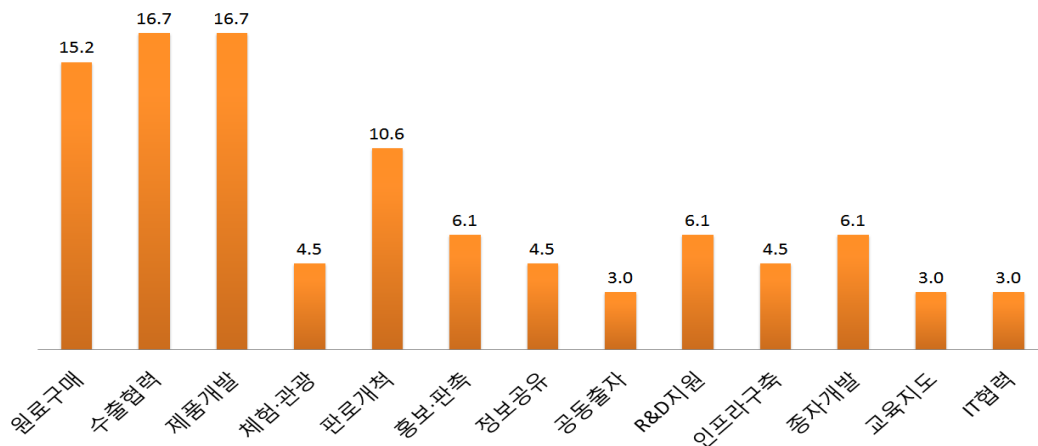
3.6. 최근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 추진 동향

- 농어촌 지역의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농촌 지역을 기반으로 한 자생적 발전이 한계에 다다르면서 타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민·관 협업 모델 구축의 필요성이 확대됨.
- 2013년 9월 농업과 식품기업의 상생협력을 위한 ‘CJ와의 즐거운 동행 협약식’ 추진을 계기로 우리 농산물의 안정적인 수요 확대를 위해 농업과 식품기업간의 상생협력을 중점 추진해 옴.
- 2014년 농업미래성장산업 대토론회(11.19.)와 경제부처 정책점검회의(10.6.)에서 농업계와 기업의 협력이 지속 발전하려면 기업의 단순히 사회공헌활동 차원을 넘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하며, 농업인과 기업을 연결시켜서 서로 윈윈하는 연계모델의 필요성이 제기됨.
- 이를 계기로 농업계와 기업간의 상생협력 기반 구축을 위해 2014년 8월 20일 대한상공회의소와 ‘농식품 수출 및 소비 확대를 위한 MOU’를 체결하고, 9월 15일에 MOU 후속조치로 대한상공회의소와 농림축산식품부, 농협중앙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가 힘을 합쳐 ‘농식품 상생협력 추진본부’를 설치함.
 - ‘농식품 상생협력 추진본부’를 중심으로 농업계와 기업간의 연계 시스템을 통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확산을 유도해 왔으며, 농업계와 기업간의 상생협력 추진 기본방안을 마련
- 농산물 가공·유통·수출·농자재·종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농업과 기업간 상생협력(MOU) 모델을 발굴하고, 농업계와 기업체,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상생협력 추진 사례를 조사하고 지역별로 설명회를 개최함.
 - MOU사례 30건(9.30. 기준), 전국 8개 권역별 사례발굴 및 설명회 개최

- 2015년 9월 상생협력 경연대회를 추진하여 그간의 성과를 집중적으로 조명할 계획
 - 또한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와 6차산업화지원센터, 중소기업지원센터 등과 연계하여 포괄적인 추진을 전개할 계획
- 협력부문별로 30건의 MOU체결 현황을 살펴본 결과, 총 13개 부문 66건의 협력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수출협력과 제품개발이 각 16.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원료구매(15.2%), 판로개척(10.6%) 순으로 나타남.
- 상위 4개 부문(수출협력, 제품개발, 원료구매, 판로개척)의 MOU가 전체의 약 60%를 점유

그림 3-3. 협력부문별 MOU체결 비중

단위: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표 3-31. MOU 사례 30건

순서	협약주체	주요 내용
1	농림축산식품부-CJ-동반위-소비자단체협의회-농식품연합회	• 국산 농산물 원료사용 확대, 농식품 수출 협력
2	농림축산식품부-SPC-동반위-녹색소비자연대-밀산업협회	• 국산 농산물 원료 사용 및 신제품 개발 확대, 수출 협력 지원
3	농림축산식품부-농심-동반위-여성소비자연합-감자연구회	• 秀美칩 등 국산 농산물 활용 가공식품 개발·판매 확대, 해외법인 활용 수출 확대 등 협력
4	농림축산식품부-매일유업-동반위-소비생활연구원-낙농우협회	• 원유 등 국산 농축산물 구매 확대 및 고장 상하테마공원 조성을 통한 체험·관광 등 6차산업 활성화, 對중국 우유 수출 확대 등 협력
5	SPC-익산시	• 익산쌀 활용 찹쌀떡 등 고품질 제품 개발 및 판매 확대
6	SPC-의성군	• 의성마늘 활용 고품질 신제품 개발, 의성마늘 홍보 및 소비 촉진·판매 지원 협력
7	아시아나-aT	• 수출국 현지 시장정보 공유, 농식품 특별 할인 항공운임 등 국산농산물 항공 수출 확대
8	아모레퍼시픽(장원)-차생산자연협회	• 공동출자 방식 차수출협동조합 설립, 시범재배 등 기업의 연구개발 지원 차 수출까지 인프라 구축 등 협력
9	CJ-바이오브리딩-제주콩농가	• 수요자 맞춤형 종자개발 및 보급 (계약재배) 확대
10	롯데마트-한국농축산연합회-한국식품법인연합회	• 롯데마트의 해외망을 활용한 수출 유망품목 지속 발굴, 해외관측 강화 등 농식품 수출활성화 협력
11	하림-전북인삼농협	• 삼계탕 등 고부가가치 가공식품 생산 판매 및 수출 협력, 국산 인삼 소비 확대 협력
12	차오마미(중국 과일가공업체)-과수농협연합회	• 사과 푸딩 등 고부가가치 가공식품 생산 판매 및 국산 과일 해외수출 확대
13	헬튼그레인즈(미국 곡물회사)-한국RFC협회	• 미국, 중국을 대상으로 국산 가공 현미 등 고부가가치 쌀 가공식품 생산 판매 및 쌀 해외 수출 확대
14	신세계푸드-농우바이오	• 기업의 수요와 연계된 가공적성 우수 품종 개발 및 생산 보급 등 협력
15	농림축산식품부-이마트	• 이마트가 국내 우수 생산자 발굴·전략 상품을 개발해서 생산단계부터 품질을 관리하고 매장 특별코너에서 판매
16	CJ-농협중앙회	• 국산 농산물 활용 고부가가치 가공식품 개발 및 수출 확대 밀양물류센터(농협) 공동활용 등 협력
17	SPC-진주시	• 딸기 토마토 등 잔주 주요 농산물 구매 및 소비촉진, 가공 적합 농산물 생산 제도와 기술 협력 등 추진
18	농림축산식품부-SPC-의령군-농진청-국산 밀산업협회	• 의령군 생산 조정밀(빵가공 적합 품종) 수매 및 제품개발 확대, 우리밀 종자 개량 및 전문 재배단지 조성, 농가 재배 교육 등 협력
19	농림축산식품부-롯데그룹-농협-대한상공회의소-동반성장위	• 국산 농산물 사용 확대 및 안정적인 판로 지원, 해외 매장을 통한 수출 확대, 농촌관광 상품 개발 등 6차산업화 협력
20	농림축산식품부-롯데슈퍼-친환경농업인연합회	• 유기농산물 판매장 확대 및 온라인 판매망 구축, 농가 판로확대 및 계약 재배, 유기농 생태마을 조성 등 협력
21	농림축산식품부-CJ중국본사	• 對중국 수출 유망상품 개발 및 시장 정보 공유, TV홈쇼핑·온오프라인을 활용한 수출 확대
22	이마트-농기평-원에특작과학원	• Golden seed 프로젝트와 연계, 우수품종 개발 및 재배기술 확산, 수입대체 품종 개발·농가 보급 등으로 판로 확대 지원
23	농림축산식품부-프랜차이즈협회	• 신제품 개발을 통한 국내 농식품 소비 확대, 우수 산자 생산자 정보 제공, 공동구매 확대 등 협력
24	해남군-커피베이	• 고구마 등 해남 특화상품 구매 및 신제품 개발 확대, 판매 지원, 생산 농가 지도·관리 등 협력
25	농림축산식품부-KT	• 새로운 농촌발전모델인 청학망기가 창조마을 조성을 통한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촌의 생활 개선 등을 위한 협력
26	농림축산식품부-네이버	• IT를 기반으로 한 6차산업 전용 플랫폼 구축 및 관련 정보 검색 기능 강화 등 농업·농촌 비즈니스 확대를 협력
27	농림축산식품부-엘지유플러스	• 모바일 쇼핑이 급증하고 있는 소비트렌드에 따라 기업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농식품 판매촉진
28	농림축산식품부-편의점협회	• 편의점의 우리쌀로 만든 쌀 제품(삼각김밥, 도시락 등) 소비 활성화 및 소비자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협력 및 제품 품질향상을 위한 품종개발 및 재배·가공 기술 개발 협력 등
29	전라북도-공영홈쇼핑	• 공영홈쇼핑(이민쇼핑)을 활용한 전북지역 우수농산물 판로 개척 확대
30	농림축산식품부-설빙	• 쌀 소비촉진을 목표로 한 쌀 제품(디저트) 개발 확대 및 홍보강화 등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제 4 장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 추진실태와 성과 평가

1.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 범위와 구성요소

1.1. 상생협력의 발생형태

-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은 서로 이익 증진을 위해 하는 공동의 활동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 상생협력의 참여주체와 발생방식에 따라 형태를 구분할 수 있음.
-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은 광의의 개념에서 ① 기업의 농촌사회 기여(CSR), ② 기업의 농업법인 설립, ③ 농업에서 융복합산업화: 6차산업화 포함, ④ 농업과 기업의 협력활동으로 구분됨.
 - 기업의 농촌사회 기여: 기업이 사회적 책임활동으로 농촌사회 기여 사례
 - 기업의 농업법인 설립: 기업이 농업법인 설립을 통해 농업부문에 참여하여 기업이윤 창출과 농업부문 간접 영향 도출 사례
 - 농업의 융복합산업화: 농업에서 2,3차 융복합산업화를 통해 고부가가치화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농촌 발전을 도모하는 사례
 - 농업과 기업의 협력활동: 농산물 생산과 판매과정에서 기업과 협력하거

나 농업과 기업에서 공동 투자를 통해 별도 기업을 설립하여 공동 이익 창출사례

- 협의의 개념에서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은 농업과 기업 부문에서 서로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공동의 활동에 국한함. 협의의 의미에서 농업과 기업의 상생활동은 ④ 농업-기업 협력활동으로서 농산물 생산 및 판매과정에서의 기업과의 협력활동과 농업과 기업의 공동투자 사례에 해당됨.
-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 관련 주요 정책을 발생형태와 범위 등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표 4-1. 상생협력 관련정책의 형태 및 범위 비교

주요정책	발생형태	초점	지원대상	참여기업	정책목표	기타
농공상용합형 중소기업	융복합 산업화	산업유형/상생협력행위	농업, 기업	중소기업	농업인 소득 창출, 안정적인 원료 확보	공동출자형과 전략적제휴형은 상생협력과 유사, 농어업인 경영형은 농촌융복합산업과 유사
농촌융복합산업	융복합 산업화	산업유형	농업	중소기업	농촌 소득 증대	6차산업 활성화
농촌사회공헌인증제	기업의 농업 사회 기여	사회적 책임	농업	제한없음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농촌공동체활성화	CSR
민간투자 활성화	기업의 농업 법인 설립	상생협력행위	기업	제한없음	농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일자리창출	농업진입, 규제완화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	농업과 기업의 협력활동	상생협력행위	기업, 농업	제한없음	농업과 기업의 이익증진	CSV

-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 행위에 초점을 둔 정책은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민간투자활성화’,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이 해당됨.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정책의 경우 중소기업을 참여 대상으로 제한한 반면,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은 상생협력과 관계된 농업과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고 있지 않는 차이가 있음. 민간투자 활성화의 경우 내용적으로는 상생협력 사업에 기업이 참여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기업이 농업에 참여하는 형태라는 점에서 기업과 농업이 상호 협력하는 형태인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 정책과는 차이가 있음.

1.2. 상생협력 분야와 협력내용

- 상생협력 활동 분야는 농촌사회, 생산(가공/외식)분야, 유통분야, 수출분야로 구분가능함.
 - 농촌사회는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1사1촌운동, 역량기부, 판매알선이 포함
 - 생산(가공/외식)분야는 기업입장에서 원료를 구입하여 생산하는 단계인 가공/외식부문에 해당
 - 유통분야는 산지 및 소비지 유통단계가 해당
 - 수출분야는 해외시장 수출부문이 해당
- 상생협력 내용은 사회적 책임활동, 원료 구매, 농자재 지원, 판로 및 마케팅(교육, 홍보 등) 지원, 제품/기술 개발, 자본 투자로 구분함.
 - 사회적 책임활동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는 농촌 지역 투자, 교육·문화·복지·의료지원·재능기부 등의 활동
 - 원료 구매는 계약재배를 통한 지속적인 원료 구매지원
 - 농자재 협력은 종자, 비료, 농약, 농기계 등 농업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필요한 제반 농자재 지원
 - 판로 및 마케팅 협력은 국내마케팅과 수출협력을 위한 유통물류, 판촉 지원

- 제품/기술 개발 지원은 신상품 및 신기술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개발, 기술이전 및 지도, 기술정보교환
 - 자본 투자는 직접 자금 대여, 간접 금융지원
-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 분야와 협력 내용을 기준으로 ① 사회공헌형, ② 단순계약 원료구매형, ③ 농자재 지원 원료구매형, ④ 국내 판로지원형, ⑤ 수출협력형, ⑥ 기술제휴형, ⑦ 공동출자형 7가지로 상생협력 유형구분이 가능함.

그림 4-1.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 유형구분

자본 투자	공동투자형			
제품/기술 개발	신제품/신기술 개발형			
판로/마케팅 지원		국내판로 지원형	수출협력형	
농자재 지원	농자재 지원 원료구매형	원료구매형	판로지원형	
원료 구매	단순 계약 원료구매형			
사회적 책임	사회공헌형			
	농촌지역사회	생산(가공)	유통	수출

- 농업과 기업의 7가지 상생협력 유형이 신뢰이론(Sako)과 공유가치창출이론(포터)의 어느 단계에 해당되는지를 평가하면 아래 표와 같음. 단순계약형 원료구매는 신뢰계층 1단계인 계약형 신뢰에 해당됨. 지원형 계약재배는 생산성 향상과 품질 제고를 위해 기업에서 종자, 농약, 비료, 농기계 등의 지원을 하는 유형으로 신뢰계층 2단계인 역량형신뢰에 해당됨. 신뢰계층 3단계인 가치공유형 신뢰는 비전공유를 바탕으로 연구개발 및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단계로 R&D를 통한 제품·기술 개발과 공동출자가 해당됨.

- 공유가치창출활동을 기준으로 한 단계구분에 의하면 사회공헌형은 공유가치창출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에 해당됨. 계약재배와 판로지원은 거래단계를 단축하여 거래비용을 절감하고 판로를 안정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거래파트너를 찾는 탐색비용 등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포터의 공유가치창출이론(CSV)의 2단계에 해당됨. 계약재배 시 종자 등의 농자재를 지원하는 유형이나 판로지원 및 기술제휴형의 경우는 신제품/신기술 개발이나 신시장 개척의 성과와 연계될 수 있으므로 포터의 CSV 1단계와 2단계에 해당됨. 공동출자형의 경우 신제품/신기술 개발과 신시장 창출, 비용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공동투자를 통한 신규사업체 구성을 지역적으로 집적가능한 CSV 3단계가 모두 해당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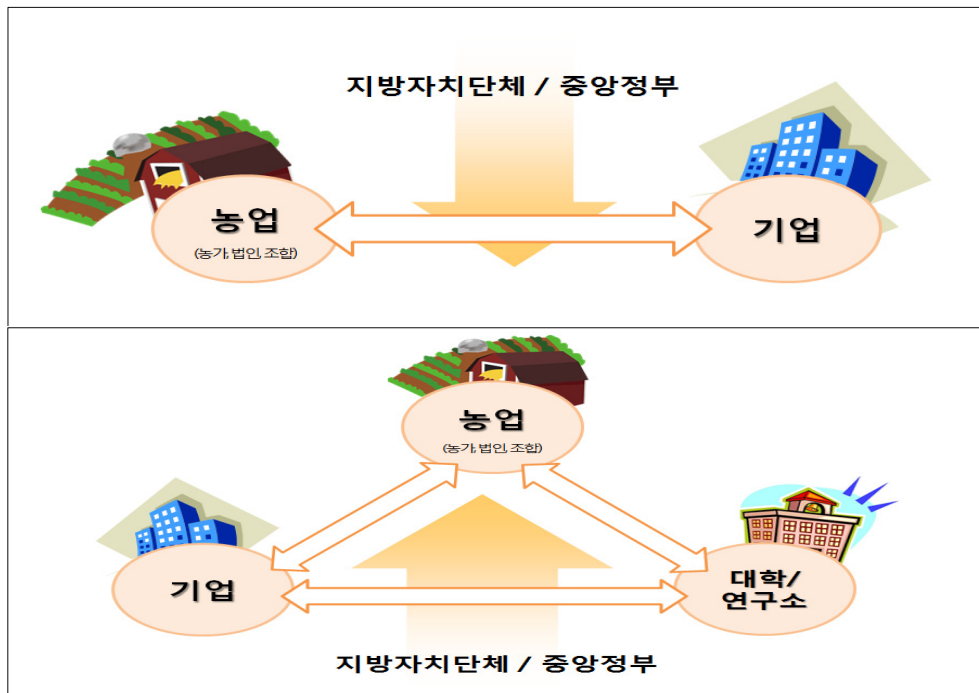
표 4-2. 상생협력 유형별 단계 구분

유형	신뢰계층			공유가치창출			
	계약형 신뢰	역량형 신뢰	가치공유형 신뢰	CSR	CSV1	CSV2	CSV3
사회공헌형				●			
단순 계약 원료구매형	●					●	
농자재 지원 원료구매형		●			●	●	
국내판로 지원		●			●	●	
수출협력형		●			●	●	
신제품/신기술 개발형			●		●	●	
공동출자형			●		●	●	●

1.3. 상생협력 참여주체

- 농업부문 지원대상 유형으로는 법인, 생산자단체/조합, 지방자치단체 공사 등을 대상으로 하며, 기업부문 지원대상은 규모에 제한을 두지 않음. 농업 회사법인의 경우 법인체의 성격에 따라서 농업 또는 기업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음.
- 참여 주체에 의해서는 가장 협의의 범위로서 농업과 기업 간 상생협력형태가 있고, 지방자치단체 참여와 제3기관 참여여부에 따라 참여주체 형태에 차이가 있음.
 - 농업-기업, 농업-기업-연구기관(대학, 연구소 등), 농업-기업-지방자치단체(중앙정부), 농업-기업-연구기관-지방자치단체 등의 형태로 구분 가능

그림 4-2.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 참여 주체별 유형



1.4. 상생협력 사례의 분류

- 선행연구 사례와 추가 사례조사를 통해 수집한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 우수사례 총 61건에 대해서 해당 상생협력 유형을 분류 및 검토하여 현재 추진 중인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 실태를 파악함.
- 농업과 기업간 상생협력 우수 기업들 중, 단순계약 원료구매가 25건으로 다수를 차지하였으며 국내 판로지원과 사회공헌이 22건, 농자재 지원 원료구매 16건 순으로 나타남.
 - 현재 대부분의 상생협력은 원물구매와 판로지원, 사회공헌 유형이 추진 중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수출협력(9건), 공동투자(7건) 는 상대적으로 추진 사례가 적조

표 4-3. 상생협력 사례의 유형구분

구 분	사회공헌	단순계약 원료구매	농자재지원 원료구매	국내 판로지원	수출협력	신제품/기술 공동개발	공동투자
롯데마트	○			○	○		
롯데슈퍼			○	○			
롯데푸드(주)의성군	○	○					
SPC그룹 (우리 밀)	○		○				
SPC 행복한 동반성장	○	○				○	
(주)에스테어리푸드	○		○			○	○
에스팜(S-Farm)	○	○					○
(주)이마트	○			○			
(주)이마트 제주권역	○			○			
신세계 백화점	○			○			
신세계 사이먼				○			
농우바이오/신세계 푸드						○	
CJ프레시웨이	○		○	○	○		
CJ브리딩			○			○	
CJ제일제당(주)대상(천일엽)							○
CJ 즐거운 동행				○	○	○	
이천시/CJ제일제당/농협		○					
농협하나로유통	○			○			
안성시/서안성농협/(주)영풍				○			
횡성군청/서원·안흥농협		○		○			
유비케어/오창농협	○	○		○			
대상(주)		○					
엔자임팜		○		○			

표 4-3. 상생협력 사례의 유형구분(계속)

구분	사회공헌	단순계약 원료구매	농자재지원 원료구매	국내 판로지원	수출협력	신제품/기술 공동개발	공동투자
(주)채선당			○				
(주)엔에스쇼핑		○		○	○		
바이엘크롭사이언스	○						
(주)우리술			○				
한살림안성마춤식품							○
스타벅스/미음영농조합법인	○		○	○			
티켓몬스터		○		○			
네이버	○			○			
(주)죽장연	○	○			○	○	
궁골식품	○	○					
(사)울금식품가공사업단		○				○	○
(주)산들촌		○			○		
(주)새뜰원			○				
정심푸드	○	○					
한성푸드			○				
아시아나항공(주)					○		
국향주조		○				○	
주식회사 케이티	○						
국순당 고창명주(주)			○		○	○	○
(주)더 엘가	○	○					
도선국사마을	○	○					
현대 백화점				○			
창녕군/품무원/창녕로컬푸드				○			
(주)오행생식		○					
과주시		○		○			
샘표식품		○					
청도반시/롯데칠성		○				○	
(주)김가네		○					
세븐스프링스		○					
(주)농심			○			○	
해태제과(가루비)			○				
(주)일화			○				
GS리테일			○	○			
한국버섯수출사업단					○		
(주)빙그레/경상대/농진청						○	
나주시/한화푸드		○		○			
상하 목장/매일유업			○			○	○
세종시/SK	○						
업체: 61개	22	25	16	22	9	13	7

2. 상생협력 현황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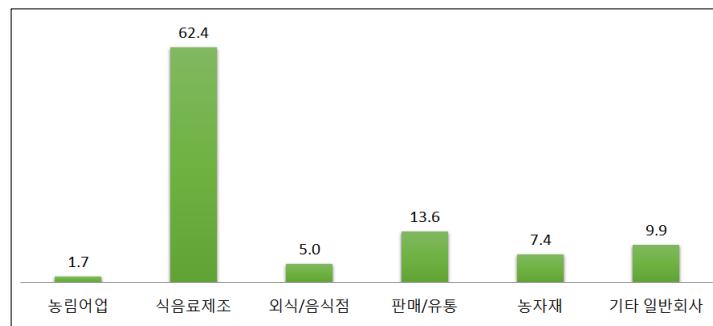
2.1. 조사 개요

2.1.1. 기업체 조사

- 농업과의 상생협력 실패과약을 위한 기업체 조사대상은 농업과 직접적인 상생협력이 가능한 식품, 유통, 외식, 농자재 기업과 일반기업을 포함함.
- 기업체 조사는 2015년 6. 29 ~ 7. 21 까지 약 3주간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사회적인 영향력을 고려하여 대기업을 본 조사에 포함하고자 2015년 8. 17~8. 31 까지 2015년 상호출자제한기업에 대한 추가조사를 실시함.
- 총 713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가 실시되었으며, 226개가 회수되었고 이 중에서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216개 표본을 최종 사용함(회수율은 30.3%).
- 상호출자제한기업 27곳, 식품100대 기업 27곳, 일반기업 162곳으로 구성
- 조사대상 기업의 주요 업종 분포는 식음료제조업이 80.1%로 본 조사의 다수를 차지하였고, 판매유통(19.9%), 기타 일반회사(8.4%) 순으로 조사됨.

그림 4-3. 조사대상 업체의 주요 업종 분포

단위: %



주: 중복을 허용한 값임

자료: 기업체 조사 결과

2.1.2. 농가경영체 조사

- 기업과의 상생협력을 하는 농업경영체(법인, 농가)를 대상으로 상생협력 현황을 파악하고자 농업 법인체 등 82개소와 268개 농가를 대상으로 개별 면접조사를 실시함.
- 법인체 조사는 2015년 8월 24일부터 9월 3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영농조합법인 52개소, 농업회사법인 30개소가 응답함. 사업 분야로는 생산 분야가 51.2%, 가공 42.7%, 유통 70.7%, 판매 30.5%, 수출 13.4%가 도출됨.

표 4-4. 농가경영체 조사 응답자 특성

단위: %(빈도)

구분		응답자	
법인	조직형태	- 영농조합법인	63.4(52)
		- 농업회사법인	36.6(30)
		- 계	100.0(82)
	사업 분야 (중복응답)	- 생산	51.2(42)
		- 가공	42.7(35)
		- 유통	70.7(58)
		- 판매	30.5(25)
		- 수출	13.4(11)
		- 기타	8.5(7)
	농가	-지역	-수도권
-영남권			30.9(88)
-호남권			27.6(74)
-충청			15.3(41)
-강원/제주			11.9(32)
-계			100.0(268)
영농형태		-전업농	66.0(173)
		-겸업농	24.5(64)
		-부업농	9.5(25)
		-계	100.0(262)

주: 전업농은 전체 소득 중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70%이상인 농가를 뜻하며 겸업농은 30~70%, 부업농은 30%미만을 차지하는 농가를 의미

자료: 농가경영체 조사 결과

- 농가 대상은 총 268개로 이 중 160개 농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가 패널에서 추출하였으며, 108개 농가는 기업과 법인체에서 거래하는 농가임.

2.2. 상생협력 추진 실태

2.2.1. 상생협력 현황

- 농업과 기업 간 상생협력 참여 현황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기업체의 경우 참여하고 있다는 응답이 37%,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응답이 63%로 나타남. 세부적으로는 대기업의 경우 상생협력 참여율이 33.3%로 조사되어 기업 형태 가운데 가장 낮은 참여율을 기록했고, 식품100대 기업은 44.4%, 일반기업은 36.4%로 집계됨.
- 조사대상 기업 중 사회공헌이나 상생협력 담당조직이 구성된 기업은 17.1%였으며, 상생협력을 위하여 사내비전을 도입한 기업은 9.7%, 회사로고(C.I: Corporation Identity)를 도입한 기업은 3.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표 4-5. 기업의 상생협력 경험 여부

단위: %(빈도)

구분	있다	없다	계
기업전체	37.0(80)	63.0(136)	100.0(216)
- 대기업	33.3(9)	66.7(18)	100.0(27)
- 식품100대 기업	44.4(12)	55.6(15)	100.0(27)
- 일반기업	36.4(59)	63.6(103)	100.0(162)

자료: 기업체 조사 결과

- 기업을 대상으로 농업과 상생협력하지 않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상생협력으로 인한 이익이 크지 않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34.3%로 가장 많았으나, ‘상생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 몰라서’와 ‘대상 농가를 찾지 못해서’라고 응답한 비중도 각각 20.9%, 11.2%로 나타나 상생협력에 대한 정보부족이 1/3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됨.

표 4-6. 기업의 상생협력 불참 이유

단위: %(빈도)

상생협력 이익이 크기 않아서	비용 부담이 커서	대상 농가를 찾지 못해서	상생프로그램 운영방식을 몰라서	사업연관성이 없어서	관심 및 필요성을 못느껴서
34.3 (46)	10.4 (14)	11.2 (15)	20.9 (28)	12.7 (17)	10.4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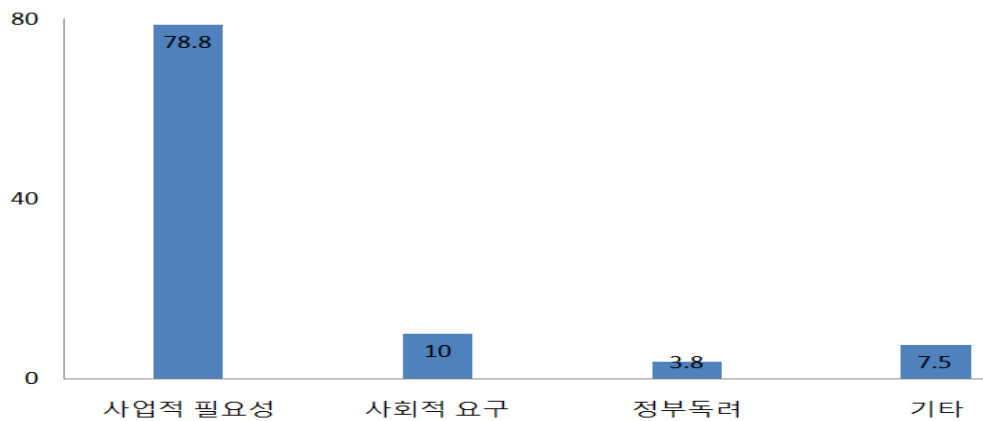
주: 중복응답을 허용하여 조사함.

자료: 기업체 조사 결과

- 상생협력을 진행 중인 기업에게 상생협력을 추진한 계기에 대해서 중복응답을 허용하여 조사한 결과, 사업적 필요성에 의한 참여가 78.8%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대기업의 경우 사회적 요구의 이유로 참여했다는 응답이 44.4%로 가장 높았고, 100대 기업과 일반기업은 사업적 필요에 의해 참여했다는 의견이 지배적

그림 4-4. 기업의 상생협력 추진 계기

단위: %



주: 중복응답을 허용하여 조사함.

자료: 기업체 조사 결과

2.2.2. 상생협력 참여주체와 유형별 추진실태

- 상생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참여 주체를 조사한 결과, 기업-농업이 참여하는 유형이 75.0%로 가장 크고,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정부가 참여한 유형이 20% 정도에 달함. 기업과 농업 이외에 연구소/대학 등 제3의 기관이 참여한 유형은 6.5% 수준임.

표 4-7. 상생협력 참여 주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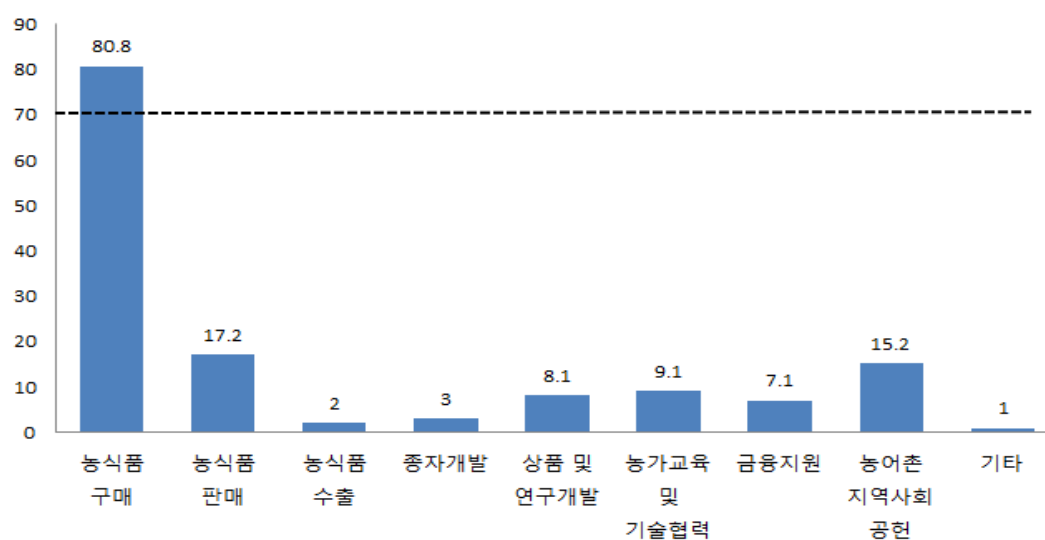
단위: %(빈도)

기업-농업	기업-농업-연구	기업-농업-지방자치단체(중앙정부)	기업-농업-연구-지방자치단체(중앙정부)	계
75.0 (69)	4.3 (4)	18.5 (17)	2.2 (2)	100.0 (92)

자료: 기업체 조사 결과

그림 4-5. 기업의 유형별 상생협력 추진 실태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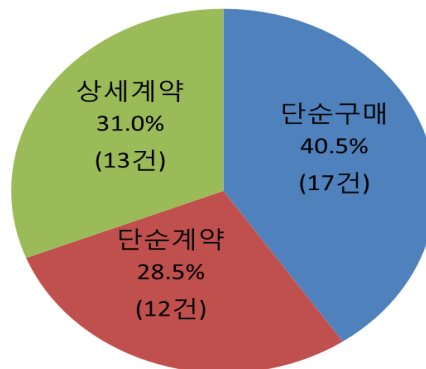
주: 중복응답을 허용하여 조사함.

자료: 기업체 조사 결과

- 상생협력을 추진 중인 기업에 대해서 유형별 추진 실태를 조사한 결과, 농식품 구매가 80.8%로 가장 많았고, 판매가 17.2%, 농어촌 지역사회 공헌이 15.2% 등으로 나타남.
- 기업체에 농산물을 조달하는 법인을 대상으로 구매행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 법인의 40.5%는 단순구매로 조달하고 있으며 59.5%가 계약재배를 하는 것으로 나타남. 종자/품종, 재배 및 영농기술 제휴지원 등을 지원하는 형태의 계약재배를 실시하는 업체는 응답 법인체의 31.0%에 해당함.

그림 4-6. 법인체의 계약재배현황

단위: %(빈도)



자료: 농업법인체 조사 결과

2.2.3. 계약단가 수준

- 계약단가 수준을 조사한 결과, 기업체에서는 ‘시중단가(도매시장) 보다 싸다’는 의견이 대다수(77.8%)로 도출된 반면, 농가에서는 ‘시중단가(도매시장) 보다 비싸다’는 응답이 58.5%에 달함. 계약단가가 기업의 경우 도매시장 구입가격보다는 싸고, 농가의 도매시장 판매가격에 비해서는 약간 높거나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는 형태로 추측됨.

표 4-8. 계약 단가와 시중단가(도매시장) 수준 비교

단위: %(빈도)

구분	시중단가(도매) 보다 싸다	시중단가(도매) 보다 비싸다	시중단가(도매) 와 비슷하다	계
기업	77.8 (21)	7.4 (2)	14.8 (4)	100.0 (27)
농가	9.3 (11)	58.5 (69)	32.2 (38)	100.0 (118)

자료: 기업체 및 농가 조사 결과

2.2.4. 계약서 작성

- 계약재배 시 계약서 작성 여부에 대해서 계약재배를 실시하고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4.8%가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4-9. 농가의 계약서 작성 여부

단위: %(빈도)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계
74.8 (92)	25.2 (31)	100.0 (123)

자료: 농가 조사 결과

- 계약재배를 실시하고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흉작이나 시장가격 변동 등 상황변화로 인해 계약내용의 존속이 어려울 경우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조항이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농가의 45.1%가 포함되어 있다고 응답함. 농가의 절반 이상에서 예외 조항 규정이 없다고 응답하여 예외 조항 규정이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있더라도 유명무실한 조항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4-10. 흉작, 시장가격 변동 등 상황변화에 의한 계약내용 변경 조항 포함 여부

단위: %(빈도)

포함하고 있다	포함하고 있지 않다	계
45.1 (41)	54.9 (50)	100.0 (92)

자료: 농가 조사 결과

- 계약재배를 실시하고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계약재배를 선택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서’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시중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어서’가 17.9%로 나타남.

표 4-11. 농가의 계약재배 선택 이유

단위: %(빈도)

안정적인 판로 확보	시중 가격 보다 높은 가격	소속농가 또는 회원농가의 요구	농자재 및 관련 교육 제공	기타
85.4 (105)	17.9 (22)	9.8 (12)	17.1 (21)	4.1 (5)

주: 중복을 허용한 수치임.
자료: 농가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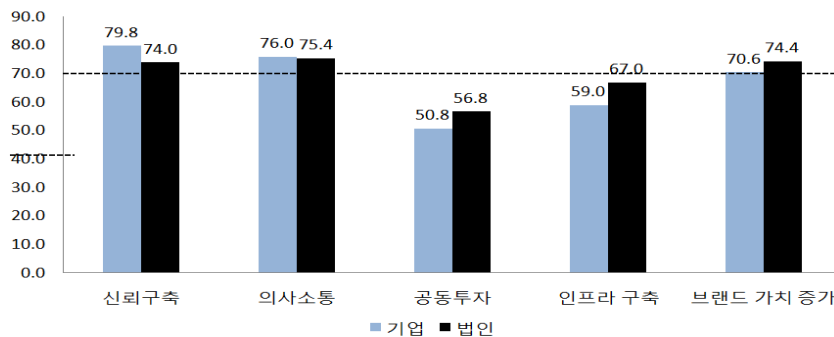
2.3. 상생협력 성과평가

2.3.1. 기업과 농업의 관계측면

- 기업과 농업의 관계측면에서 상생협력의 효과를 평가한 결과 신뢰구축, 의사소통, 브랜드 가치 증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분석됨. 반면, 공동투자,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는 평가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4-7. 기업과 농업과의 관계 측면에서의 상생협력 효과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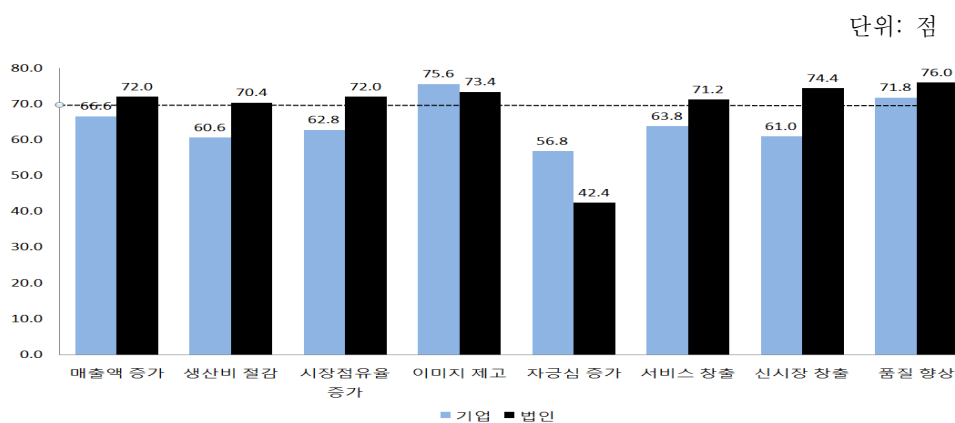


주: 세로축의 점수는 5점 척도를 기준으로 계산한 척도 평균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수치임.
자료: 기업체 및 농업법인체조사 결과

2.3.2. 기업측면

- 기업측면에서 상생협력으로 인한 효과를 분석한 결과, 기업조사에서는 기업의 이미지 제고가 75.6점으로 가장 높게 평가되었고, 기업의 제품 품질이 향상된다는 의견이 71.8점으로 높은 수준임.

그림 4-8. 기업측면에서의 상생협력 효과



주: 세로축의 점수는 5점 척도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수치임.

자료: 기업체 및 농업법인체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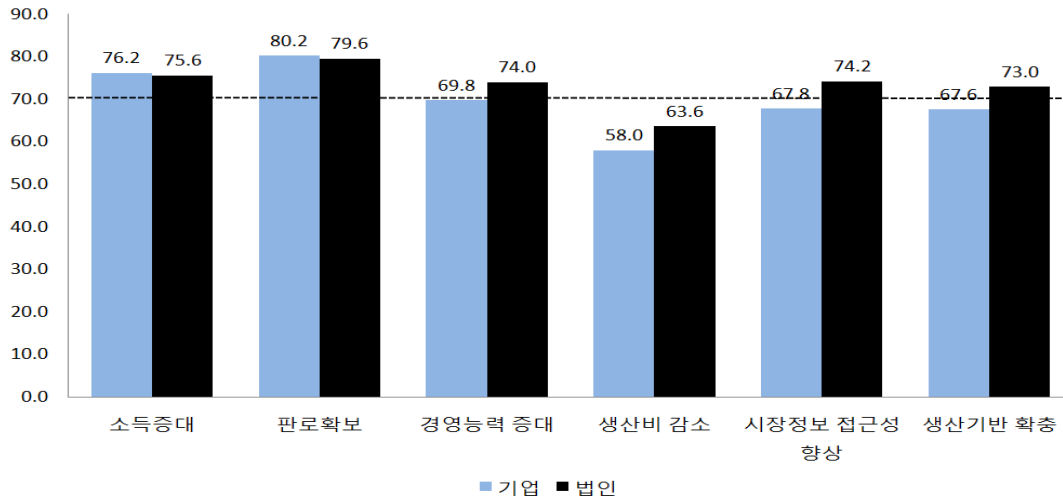
- 농업법인체조사에서는 상생협력의 기업 측면 효과를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특히 품질향상(76.0점), 신시장 창출(74.4점) 등의 효과를 높게 평가함.

2.3.3. 농업측면

- 기업체와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농업측면에서 상생협력으로 인한 효과를 분석한 결과, 안정적인 판로 확보가 각각 80.2점, 79.6점으로 가장 높고, 농업생산자의 연간소득 증대에 대해서도 높게 평가함.
- 농가조사에서는 판로확보를 73.5점으로 가장 높게 평가하였으며, 소득증가가(66.0점)와 고품질 농산물 생산(65.7점)에 대해서는 만족할만한 수준의 성과를 나타내지 못한 것으로 평가됨.

그림 4-9. 농업측면에서의 상생협력 효과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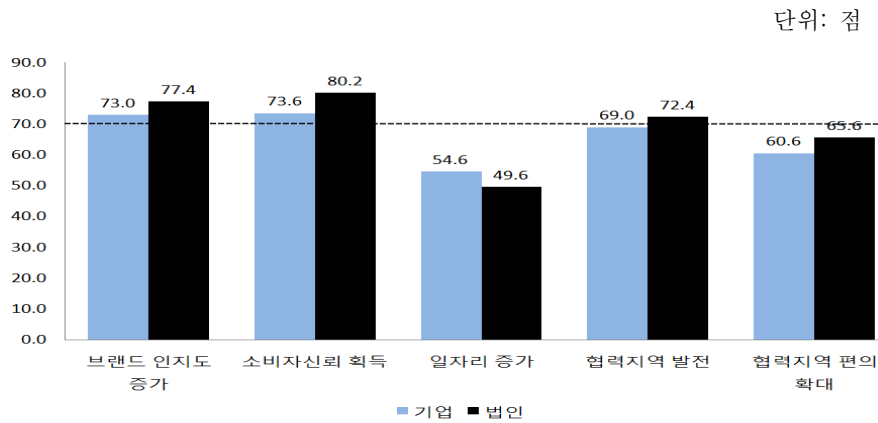
주: 세로축의 점수는 5점 척도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수치임.

자료: 기업체 및 농업법인체조사 결과

2.3.4. 소비자측면

- 소비자측면에서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 효과를 조사한 결과, 기업 입장에서는 소비자의 신뢰 획득이 73.6점으로 가장 높았고, 제품 또는 브랜드 인지도가 증가한다는 의견도 73.0점으로 높게 도출됨.
- 농업법인체조사에서도 소비자의 신뢰 획득이 80.2점으로 가장 높았고, 브랜드 인지도 증가가 77.4점, 협력지역 발전이 72.4점 등으로 높게 나타남.
- 농가조사에서는 소비자의 신뢰제고가 상생협력으로 인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응답이 73.5점으로 높은 수준으로 조사됨.

그림 4-10. 소비자측면에서의 상생협력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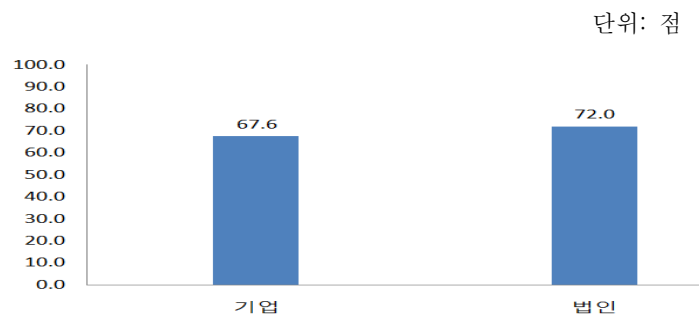
주: 세로축의 점수는 5점 척도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수치임.

자료: 기업체 및 농업법인체조사 결과

2.3.5. 공정한 관계

- 상생협력 과정에서 공정한 관계협력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기업은 67.6 점으로 평가하였으며, 공정한 관계가 어느 정도는 가능할 것이나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됨.
- 농가에서는 상생협력이 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응답이 (55.9%) 공정한 관계가 이루어 질 것이라는 응답(39.6%)에 비해 많아 공정한 관계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임.

그림 4-11. 공정한 관계협력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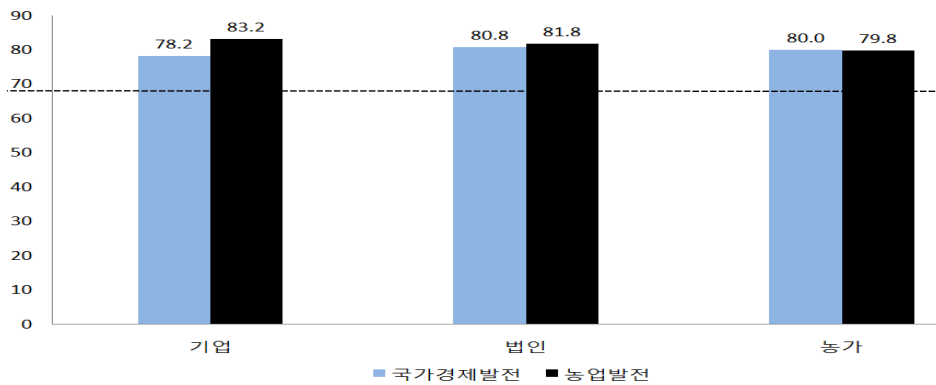
자료: 기업체 및 농업법인체조사 결과

2.3.6. 국가경제발전

- 상생협력으로 인한 국가경제발전 및 농업발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는 기업, 농업법인, 농가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국가경제발전 효과에 대해 기업은 78.2점, 농업법인은 80.8점, 농가는 80.0점으로 평가
 - 농업발전 효과에 대해 기업은 83.2점, 농업법인은 81.8점, 농가는 79.8점으로 평가

그림 4-12. 상생협력의 국가경제발전 및 농업발전 효과

단위: 점



주: 기업과 농업법인조사의 세로축의 점수는 5점 척도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수치이고, 농가조사의 세로축 점수는 문항별 가능 여부를 백분율로 나타낸 점수임.

자료: 기업체 및 농업법인체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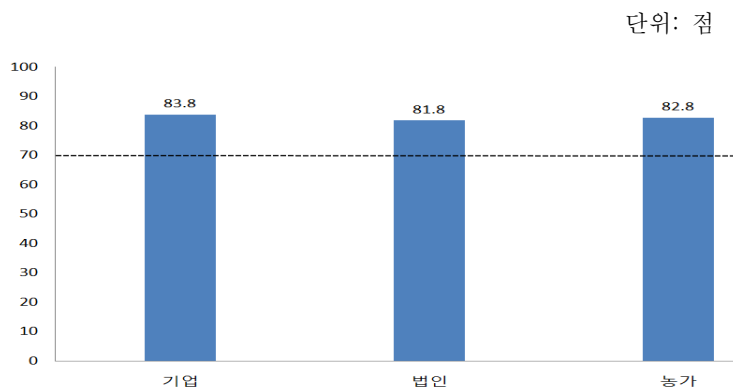
2.4. 상생협력 추진 의향

2.4.1. 상생협력의 필요성

- 상생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기업은 83.8점, 농업법인은 81.8점, 농가는 82.8점으로 모두 80점 이상으로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상생협력 필요 세부 분야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가장 필요한 분야는 구매 및 계약재배로 나타남(기업 39.8%, 농업법인 41.5%, 농가23.2%). 판매 및 판로개척 분야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중도 기업 28.2%, 농업법인 24.4%, 농가 20.5% 순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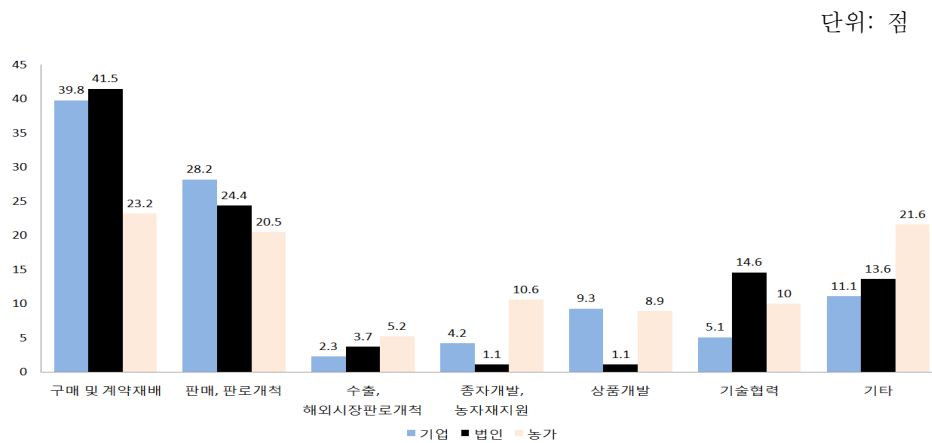
그림 4-13. 상생협력의 필요성



주: 기업과 농업법인조사의 세로축의 점수는 5점 척도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수치이고, 농가조사의 세로축 점수는 문항별 가능 여부를 백분율로 나타낸 점수임.

자료: 기업체 및 농업법인체, 농가조사 결과

그림 4-14. 상생협력이 필요한 세부 분야



주: 1) 세로축은 항목별 답변 비중(백분율)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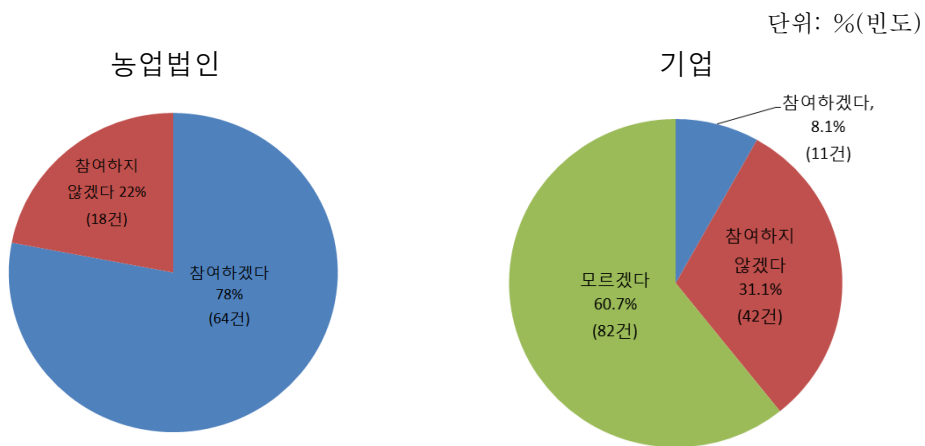
- 2) 기업조사의 경우 ‘기타’ 항목에는 ‘정보서비스, ICT 등 협력’, ‘금융지원’, ‘농어촌 지역사회공헌’ 등이 포함되며, 법인조사와 농가조사의 경우 ‘금융지원’, ‘인력지원’, ‘포장재 및 디자인 지원’, ‘공동출자 사업수립’ 등이 포함됨.

자료: 기업체 및 농업법인체, 농가조사 결과

2.4.2. 참여계획

- 향후 상생협력 참여 계획에 대해 조사한 결과, 농업법인의 경우 참여하겠다는 응답이 78.0%로 대부분 참여 의사를 표명함. 반면 기업에서는 모르겠다는 응답이 60.7%로 상당수가 분명한 계획을 표시하지 않고 있어 기업의 참여 유도를 위해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계획 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그림 4-15. 상생협력 참여 의향



자료: 기업체 및 농업법인체조사 결과

2.4.3. 참여주체별 중요도

- 기업체와 협회, 농가,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 등 주체별 중요도에 대해서 기업과 법인 모두 농가와 중앙정부의 역할을 80점 이상으로 중요하게 평가하였으며, 협력의 직접적 상대인 기업체의 중요도 또한 높게 평가함. 기업 이익단체, 시민사회단체의 중요도는 상대적으로 낮음.

표 4-12. 참여주체별 중요도

단위: 점

주체	백점 환산점수	
	기업	농업법인
(1) 기업체	79.6	79.2
(2) 협회 등 기업 이익단체	71.2	67.7
(3) 농가(농업 생산자)	83.4	83.5
(4) 농업인단체 등 농업 이익단체	75.2	73.1
(5) 지방자치단체	78.6	76.0
(6) 중앙정부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81.4	80.0
(7) 시민사회단체	61.0	63.2

주: 5점 척도를 기준으로 계산한 척도 평균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수치임.

자료: 기업체 및 농업법인체조사 결과

2.5. 상생협력 정책 관련 의견

2.5.1. 정부지원정책의 필요성

- 농업과 기업 간 상생협력에 있어서 정부의 바람직한 역할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기업, 법인, 농가 모두 정부가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여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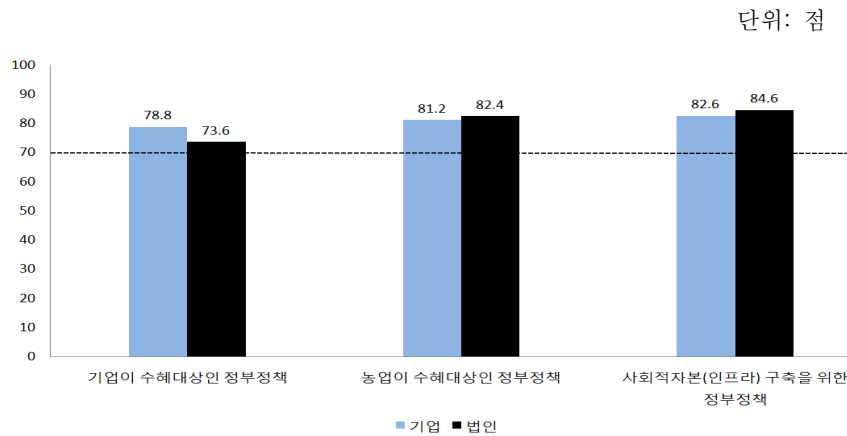
표 4-13. 농업과 기업 간 상생협력에 있어서의 정부 역할

단위: %(빈도)

구분	정부는 신경 쓰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함	정부는 방향과 목표, 비전까지 제시	정부는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	모름/무 응답	계
기업 조사	2.1 (1)	25.0 (12)	72.9 (35)	0.0 (0.0)	100.0 (48)
법인 조사	2.4 (2)	28.0 (23)	65.9 (54)	3.7 (3)	100.0 (82)
농가	3.1 (8)	29.8 (77)	67.1 (173)	0.0 (0.0)	100.0 (258)

자료: 기업체 및 농업법인체, 농가조사 결과

그림 4-16. 정부지원정책이 필요한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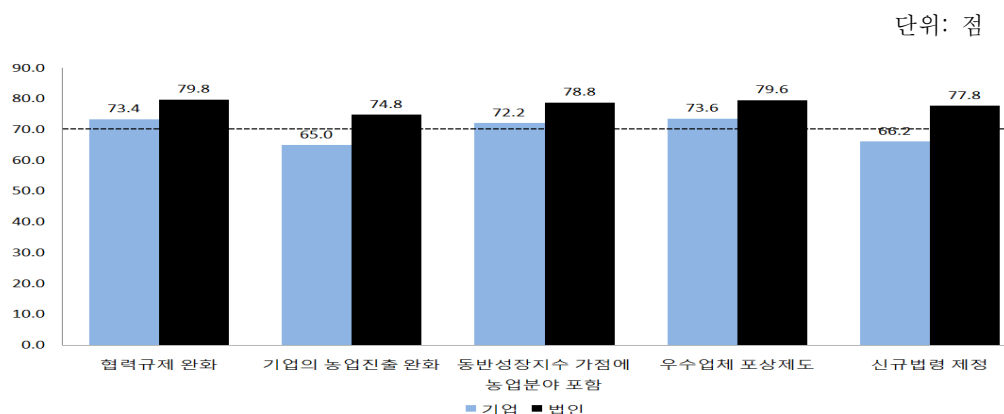
자료: 기업체 및 농업법인체조사 결과

- 기업과 농업법인에서는 정부지원정책이 필요한 분야로서 상생협력 인프라 구축을 각각 82.6점, 84.6점으로 가장 높게 평가하였으며, 농업부문 지원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 기업대상 지원정책에 비해 높게 평가함.
- 농가 대상 조사에서는 농업/농촌을 중점적으로 지원해주어야 한다고 응답한 비중이 52.7%로 가장 높고, 기반이나 제도를 지원해 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41.5%로 나타남. 정부가 기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한다는 응답은 4.6%에 불과함.

2.5.2. 제도개선의견

-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 관련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기업과 농업법인에서 모두 필요성을 높게 평가함. 상생협력 우수업체 포상제도 도입과 동반성장 지수에 농업분야 가점을 포함하는 인센티브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높게 평가함. 상생협력 관련 법령을 제정하거나 기업의 농업진출을 완화하는 것에 대한 평가도 높은 편이나, 기업에서는 사회적 분위기 등을 우려하는 측면이 있어 농업법인에 비해서는 필요성을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함.

그림 4-17. 제도개선 의견



주: 5점 척도를 기준으로 계산한 척도 평균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수치임.

자료: 기업체 및 농업법인체조사 결과

- 상생협력 추진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의견이 고르게 제기되었으나, 기업체에서는 ‘기업의 농업에 대한 협력사업을 확대하도록 기업의 지원제도를 확대’하는 것을 30.9%로 가장 많이 응답함. 그 다음으로 ‘기업과 농업의 협력 공유제도 운영(24.5%)’, ‘네트워크 활성화 및 사회분위기 조성(24.8%)’ 등의 순서로 정부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 농업법인의 경우도 ‘기업의 농업에 대한 협력사업을 확대하도록 기업의 지원제도를 확대(30.5%)’가 가장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하였으나, 그 다음으로 필요한 정책으로 ‘공정한 거래조건 조성(29.6%)’을 제시하여 기업체 조사와 차이를 나타냄.

표 4-14. 상생협력 추진에 필요한 정부 정책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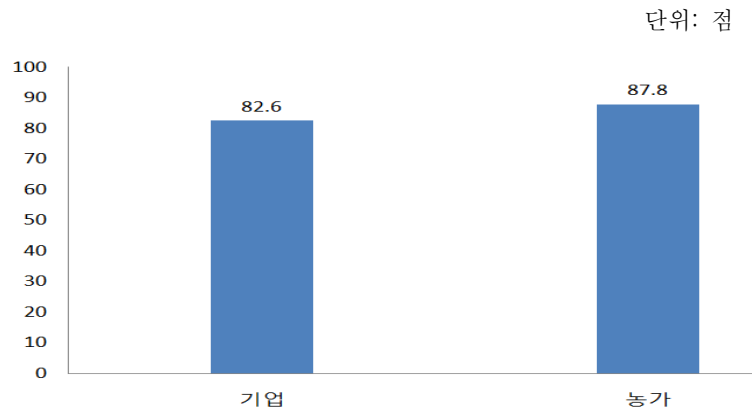
구분	기업지원 제도 확대	공정한 거래 조건 조성	기업과 농업의 협 력 공유제도 운영	네트워크 활성화 /사회분위기 조성	계
기업	30.9	19.7	24.5	24.8	100.0
농업법인	30.5	29.6	22.6	17.3	100.0

주: 5순위까지의 결과를 합산하여 나타낸 것임.

자료: 기업체 및 농업법인체조사 결과

- 성과공유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기업과 농가 모두 80점 이상으로 응답하여 협력사업에 대해 성과를 공유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파악됨.

그림 4-18. 성과공유제의 필요성



주: 5점 척도를 기준으로 계산한 척도 평균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수치임.
자료: 기업체 및 농가조사 결과

제 5 장

국가별 상생협력 법률 및 제도현황

1. 미국

1.1. 미국 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중요성 대두

- 미국에서는 지속가능경영과 유사한 개념인 ‘기업시민정신(Corporate Citizenship)’이 인정되고 있으며, 이는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부문의 자발성에 기초하여 발전되어 왔음. 기업시민정신은 전통적으로 선량한 시민의 자선 및 기부로부터 발전한 개념으로 기업 경영을 통해서 주주의 이익 증대는 물론 사회, 문화, 환경적 책임을 이행하는 것을 의미함. 미국은 기업 활동과 관련하여 정부의 규제를 최소화하고 시장을 중시하는 문화적 특징을 가지고 있어 기업 스스로 혹은 시민단체 주도하에 지속가능경영 확산을 추진하고 있음.
- 미국정부는 사회적·환경적 투자와 사회적 기업가 정신이 만나 재무적 수익과 더불어 사회적·환경적 성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 생태계인 임팩트 이코노미(Impact Economy)를 구축하기 시작함. 이를 통해 고용창출과 더불어 재무적, 사회적 성과 모두를 실현할 수 있는 수입창출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정부차원에서의 ① 사회적 가치 창출을 목

표로 하는 조직의 법적 근거 도입(예: Benefit Corporation 법안), ② 사회적·환경적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자본 조성 및 관련 법률 개정(예: US Small Business Association의 Impact Investing Initiative, 백악관의 사회혁신기금(Social Innovation Fund)), ③ 경제참여자들의 활동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개발(예시: GIIN의 Impact Reporting and Investment Standards, IRIS) 등의 지원책을 도입하고 있음. 특히 지난 2011년 6월에 개최되었던 ‘Summit on the Impact Economy’에서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향후 새로운 시장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기로 함.

- 기업의 이윤과 사회적·환경적 문제해결을 연계하는 기업들이 등장하고 있고, 이들 기업은 사회적 기금을 운용하는 투자자로부터 금융지원을 받고 있음
- 임팩트 이코노미 중 임팩트(Impact)는 경제적 성과와 더불어 사회적·환경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달성하는 것으로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실현하고자 하는 CSV개념과 연계

1.2. 미국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정책 및 법률 동향

- 기존 거버넌스의 경우 기업의 경제적 이익을 최대화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으나, 경제적 이익뿐 아니라 사회적 문제 해결에 대한 요구가 점차 커지기 때문에 법·제도 정비가 이루어짐. 2011년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이와 같은 법·제도 정비의 일환으로 B-Corp법안과 FPC법안을 제정함.¹⁰ 이들 법안은 기존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거버넌스 시스템에서 사회적 이익도 동시에 추구하는 새로운 거버넌스 시스템이 등장하는 계기를 제공함.

¹⁰ 캘리포니아 이외에도 미국 12개 연방정부에서는 보증(Endorsing), 활성화(Facilitating), 파트너링(Partnering), 규제(Mandating)등의 분야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지원하는 50여개 프로그램이 운영 중에 있음.

- **B-Corp(Benefit Corporation)**법안은 경영진의 의사결정 범위를 주주 가치뿐만 아니라 임직원을 비롯한 협력업체, 지역사회, 환경까지 확장하여 사회와 환경 이슈에 대해서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가 가능하도록 장려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제정됨. **B-Corp**의 경영 활동 결과는 사업 연도가 끝난 시점으로부터 120일이 지나기 전에 ‘베네핏 보고서(**Benefit Report**)’를 발행해 제3의 기관으로부터 평가와 인증을 받도록 명시
 - **FPC(Flexible Purpose Corporation)**법안은 비영리 목적을 가진 영리 법인을 허용한 법안으로 법인의 정관에 회사의 영리적 목적 이외에 공익 내지 사회적 목적 사업영역을 명시하여, 주주에 대한 경영진의 법적 책임을 유연하게 만들어 주고자 함. **FPC**의 경우 회사 정관에 사회 환경적 차원에서 특수 목적 사업을 명시하고, 일반회계 기준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며 특별한 인증 의무는 없음. 주주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의 범위를 사회와 환경적 목적으로 확장한다는 차원에서는 **B-Corp**법안과 유사하지만, 기업의 정관에 사회·환경적 차원의 특수목적사업을 명시한다는 점에서 차이
- **B-Corp**은 사회적 가치에의 기여를 기업의 목적의 하나로 내걸고, 높은 수준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자발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새로운 형태의 기업임. **B.C.** 또는 그 밖에 **Social Purpose Corporation, Public Purpose Corporation** 등의 용어를 사용하기도 함.
 - **B-Corp**은 사회와 환경에 실질적으로 적극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기업의 목적으로 삼고, 기업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주주만이 아니라 근로자, 지역공동체,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할 것이 요구됨. **B-Corp**은 제3자가 설정한 높은 수준의 기준에 맞추어 그 기업의 사회 및 환경에 미친 긍정적 성과를 매년 공개해야 함. **B-Corp**을 설립하거나 **B-Corp**으로 전환하려고 하면 주 정부에 등록하여야 하고, 연간보고서를 제출 또는 공시하여야 함. **B Lab**이라는 비영리기관에 의해 평가를 받아야 하는 주도 있음. 개별 주주가 **B-Corp**으로서의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소수주주소송을 허용하기도 함.

- B-Corp으로 등록해도 세제혜택은 전혀 없고, 기업의 목적/책임성/투명성에만 영향을 미침. B-Corp이 되기 위해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B Lab이라는 비영리기관이 인증서를 발급하고 있음. 다음 <표 5-1>은 B-Corp 인증을 취득하기 위한 B-Lab의 평가 항목을 발췌하여 정리한 것임. 평가 항목은 ‘지배구조’, ‘직원’, ‘지역사회’, ‘환경’, ‘임팩트 비즈니스 모델’ 등의 분류에 따라 각각 해당하는 질문으로 구성됨.

표 5-1. B-Corp 평가 항목 예시

구분	문항
지배구조	고객이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고, 질의를 하고, 불평사항을 접수할 수 있는 대중에게 공개된 체제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답변자가 농민/경작자인 경우 “해당되지 않음”을 선택하십시오
직원	귀사의 최저임금 근로자(전일제 직원, 시간제 직원 또는 임시직 직원 모두 포함)가 직전 회계연도에 수령한 임금은 최소임금과 비교해 몇 퍼센트(%) 상승했습니까? 응답자의 국가에 최저임금제도가 없다면 “해당되지 않음”을 선택하십시오.
지역사회	최근 2년 동안 회사가 특정의 기관, 산업 또는 규제개혁을 위하여 노력하고 이를 지원한 바가 있는지 쓰시오.
환경	회사가 협동조합 형태를 갖거나 다른 경작자로부터 농산물을 공급받는지 기입하십시오.
임팩트 비즈니스 모델	사업의 총 몇 퍼센트가 소규모 유통업체를 통해서 창출되었습니까?

자료: <http://www.bcorporation.net>

- B-Corp 인증을 기업이 취득하기 위해서는 지배구조, 근로환경, 지역사회, 환경 기여도 등 4가지 분야에서 평가를 받아야 하며, 총 200점 만점에서 80점 이상이어야 B-Corp 인증을 받을 수 있음. 2014년을 기준으로 전세계 34개국 1,020개 기업이 B-Corp 인증을 취득한 상태이며, 우리나라에서도 보청기 전문회사인 ‘딜라이트’, 스마트폰 게임으로 나무심기를 실현한 소셜벤처 ‘트리플래닛(Tree Planet)’, 가계부채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희망을 만드는 사람들’이 B-Corp 인증을 받은 상태임.¹¹

- 현재 미국 내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뉴욕, 미네소타, 뉴저지, 워싱턴 등 31개 주에서 B-Corp 법안이 입안되어 시행중이며, 켄터키, 노스다코타, 위스콘신 등 9개 주에서는 통과된 상태임. 아래의 표는 B-Corp이 시행중인 주와 통과된 주를 정리한 것임.¹²

표 5-2. 미국의 주별 B-Corp 법안 현황

No.	State	Status	Date
1	Arizona	Effective	2014. 12. 31
2	Arkansas	Effective	2013. 7. 27
3	California	Effective	2012. 1. 1
4	Colorado	Effective	2014. 4. 1
5	Connecticut	Effective	2014. 10. 1
6	Delaware	Effective	2013. 8. 1
7	Florida	Effective	2014. 7. 1
8	Hawaii	Effective	2011. 7. 8
9	Idaho	Effective	2015. 7. 1
10	Illinois	Effective	2013. 7. 1
11	Indiana	Effective	2015. 7. 1
12	Louisiana	Effective	2012. 8. 1
13	Maryland	Effective	2010. 10. 1
14	Massachusetts	Effective	2012. 12. 1
15	Minnesota	Effective	2015. 1. 1
16	Montana	Effective	2015. 7. 1
17	Nebraska	Effective	2014. 7. 18
18	Nevada	Effective	2014. 1. 1
19	New Hampshire	Effective	2015. 1. 1
20	New Jersey	Effective	2011. 3. 1
21	New York	Effective	2012. 2. 10
22	Oregon	Effective	2014. 1. 1
23	Pennsylvania	Effective	2013. 1. 1
24	Rhode Island	Effective	2014. 1. 1
25	South Carolina	Effective	2012. 6. 14
26	Tennessee	Effective	2016. 1. 1
27	Utah	Effective	2014. 3. 13

¹¹ 특히 '딜라이트'는 2013년 인증평가에서 128점을 취득하여 상위 10%내의 착한 기업으로 선정됨.

¹² <http://www.bcorporation.net/what-are-B-Corps/the-non-profit-behind-B-Corps>

표 5-2. 미국의 주별 B-Corp 법안 현황(계속)

No.	State	Status	Date
28	Vermont	Effective	2011. 7. 1
29	Virginia	Effective	2011. 7. 1
30	Washington	Effective	2013. 3. 1
31	West Virginia	Effective	2014. 7. 1
1	Alaska	Introduced	-
2	Iowa	Introduced	-
3	Kentucky	Prefiled	-
4	Maine	Introduced	-
5	New Mexico	Introduced	-
6	North Carolina	Introduced	-
7	North Dakota	Introduced	-
8	Oklahoma	Introduced	-
9	Wisconsin	Introduced	-

자료: National Agricultural Law Center(<http://nationalaglawcenter.org>)

- B-Corp 법안이 통과되어 발효된 31개 주 가운데 가장 먼저(2010년 10월) 법안을 시행중인 곳은 Maryland임. Maryland 지방법령 Chapter 97(Senate Bill 690)에서는 ‘Benefit Corporation’을 일반적인 공공의 이익을 생산하는 기업이라고 명시하면서 구체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1) Providing Individuals or communities with beneficial products or services, 2) promoting economic opportunity for individuals or communities beyond the creation of jobs in the normal course of business, 3) preserving the environment, 4) improving human health, 5) promoting the arts, sciences, or advancement of knowledge, 6) increasing the flow of capital to entities with a public benefic purpose 라고 정의함. 또한 B-Corp으로 선정된 기업은 사회적·공적 사업에 대해 평가받기 위하여 ‘Benefit report’를 매년 제출해야하고 그 결과를 Web 상에 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Minnesota의 ‘House of representatives No. 2582’에서는 B-Corp으로 선정된 기업이 공공의 이익을 실현함에 있어서 공공 이익 달성에 실패했을 경우, 이에 대한 어떤 금전적인 책임도 없음을 명시하고 있음.

- 한편 미국 National Agricultural Law Center에 명시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9개 주(South Dakota, North Dakota, Oklahoma, Iowa, Minnesota, Wisconsin, Nebraska, Missouri, and Kansas)에서는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 기업의 농업에 대한 참여를 경작, 대량구매, 경지 소유, 농자재 생산 등 전반적인 경제활동에 있어서 통제 또는 제한하고 있음.
 - Corporate Farming Laws의 기본목적은 소농의 경제적 다양성을 보장하고 기업에 의한, 또는 기업 형태의 대규모 농업과의 경쟁으로부터 농민을 보호하는데 있음. 하지만 이 법안의 불필요한 제한이나 비효율적인 운영, 시장을 근간으로 하는 자본주의에 반하는 이념들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존재
 - 제한의 범위, 조건 등을 포함한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각 주 별로 상이함.(예를 들어 노스다코타의 연방 헌법 10조 6항(N.D. Cent. Code §§ 10-06.1-01 through 10-06.1-27)에서는 몇몇 비영리기업과 조직을 제외하고는, 기업에 의한 경작이나 목장운영 등의 농업활동을 제한(10-06.1-02. Farming or ranching by corporations and limited liability companies prohibited)

- North Dakota의 기업의 농업 참여관련 법안인 ‘Corporate or limited liability company farming’에서는 기업과 채무 제한 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ies)의 농지 사용이나 소유를 금지하되, 농업이나 목축업 관련 사업으로의 참여는 제한적으로 허용함을 법으로 제정하고 있음.
 - 농업 및 목축업에 기업과 채무 제한 회사가 참여할 수는 있지만 참여하는 기업의 주주가 가까운 친척 관계인 경우일 경우에만 가능하며, 총 주주의 수가 15명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10-06.1-02.)
 - 몇몇 비영리 조직 또는 기관에 한해서는 농지 사용이나 소유를 허용(10-06. 1-09.)
 - 매년 North Dakota 지방정부에서는 총 기업 및 채무 제한 회사의 5%를 무작위로 선별하여 법안의 준수여부를 검사함. 법안이 포함하고 있는 제

반사항들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2만 5천 달러 이하의 벌금을 부여하는 등 일련의 패널티가 부여

- Wisconsin주에서는 ‘Miscellaneous Corporate Provisions(2015)’를 통해서 기업의 농업 부문 참여에 대해 법률에 근거하여 명시하고 있음. North Dakota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Wisconsin에서도 기업(Corporations)과 신탁(Trusts)이 농업의 운영을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것을 금하고 있음.
 - 기업과 신탁이 15명을 초과하지 않고, 기업의 주주가 가까운 친족인 경우에 한해서는 부분적으로 농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가
 - 법안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각 조항 당 1,000달러 미만의 벌금을 부과
- Minnesota의 ‘Minnesota statutes 2014’의 500.24 Farming by business organizations와 Kansas의 ‘2012 Kansas Statutes’, Missouri의 ‘Farming corporations(2014)’등의 지방 법령에서도 기업의 농업부문 참여에 대해서 일정부분의 제한과 허용을 포함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패널티 또한 명시하고 있음.

1.3. 미국의 농업과 기업간 상생협력 사례

- 미국의 농업과 기업간 상생협력 사례로는 ‘General Mills’¹³가 대표적임. 미국의 식료품 제조회사인 General Mills는 2010년부터 소농민들의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지역 소싱 정책을 도입하여 2015년까지 팜오일의 100%를 지역 소싱을 통해 공급하고 있음. 또 사탕수수과 사탕무의 지역 소싱도 ‘지

¹³ 전 세계 100개국 이상에서 100개 이상의 소비자 트렌드를 가진 다국적기업으로서 글로벌 차원의 ‘사회적 책임’을 중요시하며, ‘세계에서 가장 사회적 책임이 있는 식품회사가 되는 것’을 기업의 미션으로 여김.

속가능한 소싱 모델'에 따라 점차 확대되고 있음.¹⁴ General Mills는 원료의 지속가능한 소싱을 보증하고 소농민들의 소득 증대를 지원하기 위해 원료의 원천직접(origin-direct) 투자에 초점을 맞춘 총체적 가치창출 접근법을 통한 농업지원을 기본으로 하며, 사회공헌형과 원료구매형의 중간 형태로 분류할 수 있음.

- General Mills가 발전시킨 총체적 가치창출 모델은 1) 농민들에게는 종자 등의 투입물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했고, 2)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보장했으며, 3) 농민들의 옥수수 수확 전량을 구매하는 약속을 이행함. 이 같은 총체적 가치창출로 농가소득의 증대와 지역사회의 사회경제적 활성화에 크게 기여함. 중국에서는 옥수수 농민들과의 장기적인 프로그램 협력을 통해 총체적 가치창출 모델을 발전시켰고, 이 프로그램을 마다가스카르와 페루에서도 응용하고 있음.
- 미국의 세계 최대 음료회사인 '코카콜라'도 농업과 기업간 상생협력의 사례로 설명할 수 있음. 코카콜라는 음료 공급 가치사슬에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 상생을 추구하고자 함. 이에 대한 실행방안으로 케냐와 우간다의 과일재배 농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젝트 너쳐(Project Nurture)를 계획함. 프로젝트 너쳐는 2010년 1,150만 달러 사업으로, 코카콜라와 세계 최대의 개발협력 재단인 Bill & Melinda Gates Foundation, 비영리기관인 TechnoServe간의 삼자 파트너십 프로젝트임. 코카콜라가 2020년까지 주스의 공급원을 세 배로 증대하는 사업계획 수립 중 개발도상국의 지역 공급이 수입 비용을 절감해 소비자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 수 있다는 전략을 수립함. 마침 Gates Foundation은 설립 목적 또한 빈곤국의 빈곤퇴치를 위한 빈곤층 지원에 있기 때문에, 코카콜라와의 파트너십은 상생적 협력관계가 될 수 있었음.

¹⁴ 코코아의 경우는 복잡한 생산과 프로세싱 때문에 농가로부터 직접 소싱을 하지 않고, 원료 공급자로부터 초콜릿 등의 소스 제품을 구매함.

- 그 결과 코카콜라의 핵심 비즈니스 투자와 재단의 자선 기금을 결합해 총체적인 망고 등의 과일 주스 가치사슬을 구축함. 가치사슬에 참여하는 모든 참여자들은 각자의 역량을 가지고 함께 비즈니스를 추진할 상업적 인센티브를 가지고 있으며, 프로젝트 기간(2010-14)이 종료된 이후에도 가치사슬은 존재하며 상업적 수익도 지속가능할 것으로 예측됨. 지금까지 코카콜라는 농가에 시설개선, 교육 및 시장 정보를 제공하는 등 여러 활동을 시행하였으며, 일자리, 소득 증대, 소득의 안정성, 전문기술훈련, 교육과 보건위생 프로그램 등 복합적인 개발협력의 프로그램들이 가난한 소농민들과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로 나타남. 코카콜라는 농촌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회공헌형(CSR)의 형태로 분류할 수 있음.

2. 일본

2.1. 기업의 농업참여 확대

- 일본의 농업 종사자 수는 1965년 최고 894만 명에서 2012년에는 178만 명으로 집계되어 60여년 동안 약 80%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농업 종사자의 평균연령은 1995년 59.6세에서 2012년에 평균 66.2세로 고령화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임. 한편 일본국민의 식생활 서구화 경향과 수입 농산물 증가로 일본 국내 농업생산액은 1985년 11조 6,300억 엔에서 2010년에는 3분의 2 수준인 8조 1,200억 엔 규모로 축소되었으며, 경지면적과 경지이용률도 완만하게 하락 추세를 보임.
- 일본은 1952년 농지법이 제정되어 자작농 주의를 기본 이념으로 하고 있음. ‘농지는 경작자 스스로가 소유하는 것(자작농 주의)’이라는 기본이념 아래 지주제의 부활을 막기 위하여 농지의 권리취득과 이용에 대하여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으며, 주식회사 등 일반 법인이 농업에 참여하게 된 것은 처음에는 농지를 이용하지 않는 시설형 농업(양돈업, 식물공장, 시설원예 등)으로 한정함. 1993년에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농업생산법인’에 대하여 농업 외부로부터 출자가 인정되었으며, 2001년에 ‘농업생산법인’에 주식회사 형태가 인정되었고, ‘농업생산법인’의 출자구성원에 식품가공업자와 슈퍼 등 농산물 유통업체 등도 허용됨.

- 일본에서는 2000년까지만 해도 주식회사 등 일반법인은 직접 농지를 취득하는 것은 물론이고, 임대조차도 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규제를 받고 있어서 농지 이용에서 기업참여는 매우 어렵게 되어 있었음. 반면 2000년 이후 일본 내 기업의 농업부문 참여에 대한 규제는 완화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각종 제도들이 마련되었음.
- 일본에서 일반기업에게 농업경영의 진입을 최초로 허용한 것은 2003년의 ‘구조개혁특구제도’임. 농업특구지역에 일반 주식회사의 농지임차방식의 영농을 허용함.
- 구조개혁특구에서 기업에 의한 지역농업 진흥효과가 인정되고, 또한 기업의 진입요구가 더욱 높아짐에 따라 2005년 9월 ‘농업경영기반강화촉진법’을 개정하여 임차방식에 의한 농업진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특정법인임대제도’가 도입됨. 기존 농가와의 경합을 피하기 위해 시정촌이 지정한 ‘유휴농지 또는 유휴화가 예상되는 지역’에서 시정촌의 중개로 농지를 알선 받아 경영하는 협정을 체결한 경우에 한정하여 진입을 허용함.
- 농지의 소유와 이용을 분리하여 이용 확대를 도모한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2009년 기업의 임차경영을 완전히 허용하는 농지법 개정이 이루어짐. 기업의 임차경영 완전허용에는 ‘해제조건부 계약’ ‘임원 1인 이상 경작에 종사’ ‘지역사회와 조화 유지’ ‘농지이용에 대한 농업위원회의 감시 강화’ 등을 요

건으로 함. 기업의 농업참여 성과와 문제를 현장에서 검증해가면서 단계적인 진입 허용을 추진하고 있음. 기업측은 전용규제 강화를 전제로 한 농지 소유 허용을 요구하고 있어 향후 쟁점은 기업의 농지소유를 허용하느냐 임차경영을 고수하느냐에 있음.

- 기업의 진입허용과 함께 지역농협도 총회 결의 등의 과정을 거쳐 농지임차에 의한 농업경영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됨.

표 5-3. 일본 기업의 농업분야 참여 확대 흐름

연도	주요 규제내용
농지법 제정 (1952년)	경작목적 농지의 권리이동 규제, 농지전용 규제, 전용목적의 권리이동 규제, 소작지의 소유제한, 경작권의 보호, 소작료 통제
1962년	농지의 권리취득의 최고면적 제한을 완화, 농업생산법인제도·농지신탁제도 신설
1970년	농지의 권리이동 규제의 완화, 농업생산법인제도 요건완화, 농지취득상한 규제의 폐지, 소작지의 소유제한 완화, 소작료의 최고액 통제 폐지, 농지보유합리화 사업 신설
1993년	농업생산법인(주식회사는 불가)에 농업외법인 출자 인정
2001년	농업생산법인의 법인형태에 주식회사(양도제한 있음)를 인정
2003년	구조개혁특구제도실시, 특구지역내 임차경영 허용
2005년	특정법인임대제도, 유희농지 등에 한정하여 임차경영의 전국 확대
2009년	임차경영의 완전허용, 해제조건부 일반기업 등의 진입허용

○ 농업생산법인의 수는 1970년 2,740 법인에서, 1980년 3,179 법인, 1990년 3,816 법인, 2000년 5,889 법인, 2010년 11,829 법인, 그리고 2015년 15,106 법인으로 급증하고 있음.¹⁵

- 2015년 현재 경영유형별로 보면, 미맥이 40%, 채소 19%, 축산 18%, 과수 7%, 기타 16%를 차지¹⁶

¹⁵ 農林水産省 經營局

¹⁶ 경영유형은 주작물의 조수입이 50% 이상 차지하는 작물로 분류하며, 50% 이상인

- 농업생산법인의 경영면적은 35만 1,400ha로서, 1 법인당 23.3ha 수준
- 일반기업의 농업진입도 2009년 임차방식의 농업참여가 전국적으로 허용된 이후, 2010년 364 법인에서 2014년 1,712 법인으로 늘어나고 있음.¹⁷
 - 경영유형별로 보면(2014년), 채소 43%, 복합 20%, 미맥 17%, 과수 9%, 공예작물 4%, 축산 3%, 화훼 3%, 기타 1%를 차지
 - 또한 진입기업의 업무형태를 보면(2014년), 식품관련기업 24%, 농업·축산업 18%, 건설업 11%, NPO법인 11%, 제조업 5%, 도소매업 5%, 교육·의료·복지단체 4%, 기타 서비스업 22% 등
- 그 밖에 농업부문의 기반 확대를 위해 농지보유합리화사업, 농업경영기반강화촉진사업, 농지이용집적 원활화 사업 등을 추진함. 농지보유합리화사업은 이농농가나 규모축소농가 등으로부터 농지보유합리화법인이 먼저 농지를 매입하거나 차입하여 규모확대에 의한 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농업자에게 농지를 임대하는 사업임. 농업기반강화 촉진사업은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농업경영체를 육성하여 농업생산의 상당부분을 담당하게 하는 제도이며, 농지이용원활화사업은 농지 등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집적을 촉진하는 것임.

2.2. 기업참여 촉진을 위한 지원제도

- 기업의 농업진입은 영업이익 증대와 기업 이미지 향상이라는 기업측의 필요성과 지역농업의 유지·발전과 농업의 성장산업화라는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의 필요성에 의해 정부의 지원제도가 정비되고 있음. 농업의 성장산업화

작물이 없는 경우는 기타로 분류함.

¹⁷ 農林水産省 經營局

는 농업노동력이 감소하고 후계자가 부족한 상황에서 기업이 가진 자본력을 비롯하여 유통이나 판매면에서의 유리성을 활용한다면 농업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는 논리임.

- 농업의 성장산업화라는 관점에서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기업 진입이 용이하도록 지원기반을 정비함. ① 농상공연대법과 6차산업화법의 제정, ② 식품재활용법의 개정에 의한 식품관련산업, 특히 유통업체의 진입 유인, ③ 건설업을 대상으로 한 신분야진출모델사업 등이 추진되어 기업의 진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함.
- 일본의 농업 부문 상생협력 관련 제도 중에서는 농상공연계사업이 대표적임. 농상공연계란 농림어업자와 상공업자등이 통상의 상거래관계를 넘어서서 협력하고, 상호 강점을 활용하여 판매할 신상품/신서비스를 개발·생산하고, 수요를 개척하는 것을 의미함. 농상공연계는 2008년 제정된 “중소기업자와 농림어업자와의 연계에 의한 사업활동의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음. 농상공연계의 대상은 중소기업과 농림어업자(공동)로서 ① 신상품의 개발·생산 또는 수요의 개척, ② 신서비스의 개발·제공 또는 수요의 개척을 하고자 하는 경우임. 상담창구, 사업계획의 프로젝트, 계획인정 후의 후속조치는 무료지만 전시회나 상품상담회 등의 판로개척 지원은 기획에 따른 비용이 발생함.
- 농상공연계에 의해 새로운 사업 활동을 전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이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가의 인정을 받으면 국가의 보조금이나 정부계열의 금융기관에 의한 저리의 융자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음. 지원은 원칙적으로 5년 이내임. 보조금은 500만 엔 이내로 보조율은 2/3이며, 융자는 농업개량자금으로 무이자 융자가 가능하고, 상환기간 등을 연장할 수 있음.
- 농상공연계의 사업계획에 관하여 국가의 인정을 받기 위한 요건은 ① 농림

어업자와 중소기업자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실시하는 사업이어야 하고, ② 농림어업자 및 중소기업자 각각의 경영자원을 유효하게 활용하는 것이어야 하며, ③ 신상품/신서비스의 개발, 생산 혹은 수요의 개척을 하는 것이어야 하며, ④ 농림어업자의 경영 개선 및 중소기업자의 경영 향상이 실현될 것 등임.

- 농상공연계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함. 연계사업의 구상단계에서 사업화까지 일관하여 지원을 실시하며, 중소기업 전국 10개소의 지역본부에서 무료로 상담을 함. 상담내용에 따라 비즈니스에 정통한 전문 매니저가 기업의 신상품/신서비스의 개발 등에 대해 사업계획 책정의 노하우를 제공하고, 국가의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줌. 계획이 국가의 인정을 받은 후에는 상품개발 등의 조언을 하는 것 이외에도 전시회, 상품상담회 개최 등 판로개척도 지원함.
- 농상공연계 이외에도 일본은 ‘농지중간관리기구’의 설치를 통해 농지의 집적과 집약화를 추진하여 비용 최소화를 달성하고 향후 10년 동안 농업경영체의 농지이용이 전 농지의 80%를 차지할 수 있도록 농업구조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음. 또한 농지 중간관리기구¹⁸의 정비와 활용(법체계 정비, 예산조치, 현장과의 협의 등을 패키지로 추진)을 강조하고, 경작 방치농지 대책을 강화함.
 - 농지중간관리기구 정비 및 활용의 주요 내용은 ① 농지 소유자가 지역 내에 분산되어 있는 농지이용을 정리하여 농업 경영체에게 집약화 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와 경작방치 농지 등에 대하여 농지중간관리기구가 접수, ② 농지중간관리기구는 필요할 경우 기반정비 등의 조건정비를 하고 농업 경영체(법인경영·대규모 가족경영·마을영농·기업)가 정비된 상태

¹⁸ 농지중간관리기구 : 2013년12월13일 “농지법” 및 “농업경영기반강화 촉진법” 일부를 개정하여 공포함. 기구의 설립과 함께 유휴농지 해소 조치의 개선, 청년층의 취업촉진 강화, 농업법인에 대한 투자 원활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로 농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임차, ③ 당해 농지에 대하여 농지로 계속해서 관리, ④ 업무의 일부를 시정촌 등에 위탁하고 농지중간관리기구를 중심으로 농지 집적·경작방치 농지의 해소를 추진 등

- 경작방치 농지로 되어 있는 농지 이외에 경작하고 있는 소유자의 사망 등에 의한 경작방치 농지가 될 우려가 있는 농지도 대책의 대상으로 함. 농업위원회는 소유자에 대하여 농지중간관리기구에 임대할 의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시작으로 관련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경작방치상태 발생을 방지하여 조기에 해소를 추진

2.3. 계약재배의 안정화사업 도입

- 기업과 농가간의 안정적인 계약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과 농가의 계약 거래 위험을 완화하는 안전망을 구축함.
- 일본은 채소정책 개혁의 일환으로 2002년 채소법을 개정하여 계약거래의 안전장치로서 ‘계약채소 안정공급사업’을 도입함. 계약채소 안정공급사업은 농가와 기업간의 채소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계약거래를 장려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가공용이나 업무용 채소도 대상으로 하는 등 가격이나 수량 변동에 기인한 계약 불이행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응하여 계약이행을 지원하는 제도임.
 - 채소의 생산자와 실수요자(식품가공업체, 외식산업, 양판점 등)간의 계약 거래를 추진하여 실수요자 니즈에 대응하는 공급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가와 실수요자와의 계약거래’를 대상으로 설정
- 사업의 대상채소는 ① 지정채소 가격안정대책의 대상인 지정채소 14품목¹⁹

¹⁹ 일본은 채소생산 출하안정법에 근거하여 채소를 중요도에 따라 ① 지정채소, ② 특

에 추가하여, ② 가공원료용 품종, ③ 간이 처리를 한 채소 등으로, 대상 계약거래는 ① 출하자와 실수요자를 당사자로 하는 지급예약을 실행하기 전에 미리 서면으로 체결한 계약거래, ② 출하자와 중간업자(출하단체 등으로부터 매수한 계약대상 채소를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서면으로 체결한 계약거래임. 출하단체나 생산자가 이 사업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농축산업진흥기구에 등록할 필요가 있지만, 등록은 지정채소 가격안정대책과 동일하며, 이미 동 대책에 등록한 경우는 별도로 등록할 필요는 없음.

- 계약거래를 체결한 서면(계약서)에는 ① 당해 계약의 대상이 되는 지정채소의 종별, ② 계약의 대상이 되는 지정채소의 공급기간, ③ 생산자가 실수요자 등에게 공급하고자 하는 대상채소의 수량, ④ 대상채소의 가격에 관한 사항(가격, 가격의 결정방식 등), ⑤ 계약에 따라 계약수량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부족이 발생한 경우 동일종별에 속하는 지정채소의 공급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해야만 하며, 대상의 실수요자는 가공업자, 외식업자, 소매점과 중간업자인 도매업자, 중도매업자, 상사 등임. 부담비율은 지정채소의 경우 ① 국가 50%, ② 도도부현 25%, ③ 출하단체 등 25%이고, 특정채소는 ① 국가 1/3, ② 도도부현 1/3, ③ 출하단체 등 1/3임.
- 이 사업의 추진은 수량확보형, 가격하락형, 출하조정형의 세 가지 방식으로 생산자·실수요자 등간의 계약거래를 지원함. 각 방식의 주요 목적과 보전방식을 다음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음.

정채소, ③ 기타 특산채소 등 3 종류로 구분하여 관리함. 지정채소는 전국적으로 유통되면서 특히 소비량이 많은 채소를 뜻함. 지정채소는 양배추, 시금치, 파, 양파, 오이, 가지, 토마토, 피망, 양상추, 무, 배추, 당근, 토란, 감자 등 14개 품목이다. 출하량은 996만톤(총출하량의 74%)에 달함.

표 5-4. 계약채소 안정공급사업 형태별 주요 내용

사업형태	목적	보전방식
수량확보형	정량·정가 공급계약을 체결한 생산자가 기상이변 등에 의해 계약수량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 시장출하 예정인 것을 전환하여 계약수량을 확보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보전	① 시장출하 예정인 것을 계약거래로 전환한 때는 평균거래가격과 계약가액과의 차액의 70%를 보전 ② 시장에서 구입한 경우에는 구입가격과 계약가액의 차액의 90%를 보전한다.
가격하락형	시장가격에 연결한 생산자에 대해 가격이 현저하게 하락한 경우에 보전	평균거래가격이 보증기준금액(기준가격의 90%)을 하회한 경우에 보증기준금액과 평균거래가격의 차액의 90%를 보전
출하조정형	일정 수량으로 공급계약을 체결한 생산자가 계약수량을 확보하고, 가격하락 시에 계약 이외의 생산량에 대해 출하조정을 행한 경우 이를 보전	가격이 하락하여 평균거래가격이 발동기준가격(기준가격의 70%)을 하회한 경우에 출하조정을 하였을 때는 기준가격 또는 계약가격 중에 낮은 것의 40%를 보전

자료: 농림수산성(2015) 자료를 토대로 제작성.

- 채소, 특히 노지채소는 기상조건에 따라 작황변동이 심하고, 또한 보존성이 약한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공급량의 변동에 의한 가격이 대폭으로 변화하는 경향이 있으며, 품목 전환도 용이하여 가격 변동에 따라 식부면적도 변동하여 가격 변동이 더욱 증폭되는 특징이 있음. 최근 중국이나 미국, 한국 등으로부터의 수입 농산물에 대응하기 위하여 생산자와 실수요자간의 계약 거래를 지원하고 있으며, 계약거래의 안전장치로서 도입한 ‘계약채소 안정공급사업’은 계약거래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임.

2.4. 일본의 상생협력 사례

2.4.1. 식품제조업체의 원료조달형 사례 : 코지마농업생산법인, 카고메

- 일본 코지마농업생산법인은 고구마를 원료로 하는 영세한 소주 제조업체가 원료의 안정적인 조달을 목적으로 농업법인을 설립하여 인근의 고구마 생산농가와 계약거래를 하는 유형임. 코지마농업생산법인은 고구마 육묘사업, 영농자재 공급, 태풍 등 자연재해 시 손실보전 등을 통하여 농가의 생산안정과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지역농업 유지에 기여한다고 평가받고 있음. 코지마농업생산법인은 원료구매형 중에서 농자재 지원 원료구매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농업법인은 유희농지 등을 활용하여 고구마 생산(29ha)을 하면서 인근 고구마작목반(4개 작목반 56호, 200ha)과 계약거래를 통해 자재공급, 기술지도를 거쳐 주정원료를 확보
- 카고메는 대규모 채소 가공업체의 농업생산 참여모델로서 직영방식, 자회사방식, 계약거래 등 세 가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자사의 직접 생산은 가공용과 신선용으로 구분하고, 전국에 걸쳐 대규모 생산자와 계약거래를 통하여 필요한 물량을 확보함. 생산물은 전량 자사에서 가공 판매하거나 자사 브랜드로 신선 농산물을 판매함.
 - 카고메는 토마토 생산과 가공에서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의 토마토 육종기술과 가공기술을 인정받고 세계 최다의 토마토 품종을 보유
 - 계약 생산자 중 하나인 (주)세라채원(히로시마현 세라정 소재)은 유리온실 18ha에서 토마토를 생산, 전량 카고메로 출하

2.4.2. 대형유통업체의 농업참여 사례 : 세븐팝 토미사토

- 세븐팝 토미사토는 세븐&아이 그룹(편의점 세븐일레븐, 종합슈퍼 이또요카도, 외식업 패밀리레스토랑 등 보유)이 출자하여 만든 농업법인임.
- 세븐팝 토미사토는 직영농장에서 채소를 생산하면서(2ha) 인근 농가(8호)와 계약거래를 통하여 원료 농산물을 확보하며, 생산한 농산물은 자사 슈퍼체인 이또 요카도를 통하여 판매하고, 식품자원을 재활용함.
- 식품재활용법을 활용하여 자사 슈퍼 등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퇴비공장을 설립, 생산한 퇴비는 농가에 공급하는 식품자원의 순환형 모델임.

2.4.3. 외식업체의 농업참여 사례 : 와타미 팜

- 와타미 팜은 선술집 전국체인 ‘와타미푸드서비스’의 농업참여 사례이며 직영농장을 운영하면서 인근농가와의 계약거래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토지이용형 농업의 직영농장 규모는 전국 최대로, (주)와타미팜(와타미 100% 출자)과 농업생산법인 (유)와타미팜(와타미 10% 출자, 나머지는 농가) 등 2개 법인의 운영 중임.
- 채소를 중심으로 유기재배하고, 생산물은 전량 매입하여 와타미 체인점 80%, 외부판매 20%로 처리함. 계약농가와의 계약거래를 포함하여, 직접생산과 가공, 판매를 통합함으로써 생산 과정에서 리스크가 발생하더라도 가공·유통으로 흡수하는 등 위험을 관리함. 또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은 안전·안심을 고려한 생산을 통해 제품을 차별화하고 높은 부가가치를 실현하고 있음. 와타미팜은 단순 계약 원료구매형의 사례로 구분할 수 있음.

2.4.4. 슈퍼마켓의 농업참여형 사례 : 슈퍼마켓 니시야마

- 슈퍼마켓 니시야마는 슈퍼마켓이 주도하면서 관련 부문별로 전문가 집단이 역할을 분담하는 일종의 지역순환형 경영모델임.
- 부문별 협력관계를 보면, 농업생산은 농업생산법인 다케야마, 자재조달은 아다치, 퇴비공급은 니시야마 리사이클센터, 판매는 슈퍼마켓 니시야마 등이 공급체인을 구축하여 참여자 모두에게 이익을 창출하는 방식임.
- 쌀과 채소 등을 유기농법으로 생산하되, 지역에서 생산한 것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지산지소(地產地消)를 지향함. 특히 식품재활용법을 활용하여 음식 쓰레기나 식품제조과정에서 폐기물을 수거하여 퇴비화 하는 등 식품자원 재활용을 슈퍼마켓이 추진하는 것도 특징임.

2.4.5. 프랜차이즈형 농업참여 사례 : 이바라기 배추생산조합

- 이바라기 배추생산조합은 농가가 설립한 배추생산조합 주도의 프랜차이즈 방식임. (유)이바라기 배추생산조합(본부)이 상표 제공, 기술 지도, 자재 공급 등을 행하고, 가맹농가(150호 240ha)는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계약 생산을 하고, 판매는 전량 본부가 처리함.
- 본부의 인원들이 생산지도, 품질관리, 출하분담 등을 담당하며 과잉 시에는 생산조정(산지폐기, 폐기보상)을 실시하고, 부족 시에는 시장에서 구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물량의 안정적인 확보와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있음. 기술지도와 자재 공급을 병행한다는 점에서 이바라기 배추생산조합은 농자재 지원 원료구매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

2.4.6. 건설업의 농업참여 사례²⁰

- 일본의 기업의 농업부문 진출은 건설업 부문에서도 진행됨. 건설업은 토목업과 건축업으로 구분되며, 본사가 가진 노하우를 활용하기 위해 대체로 토목업은 토지이용형 농업에, 건축업은 시설형 농업에 집중하는 경향이 강함.
- 건설업의 낙농경영 사례로는 (유)다나카건설공업(田中建材工業)이 대표적임. (유)다나카건설공업은 홋카이도(北海道) 카미시호로정(上士幌町)에 소재하며, 건설업 경영자원을 대규모 축산경영(建酪複合經營)에 활용한 건설업의 농장직영 사례임. 공공사업에 의존하는 지방건설업이 낙농에 진입하여 대규모 낙농경영으로 발전한 사례이며, 본사(본업)의 경영자원을 농업에 활용하여 경쟁우위를 확립하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다나카건설공업은 공공사업 축소에 대응하여 1992년부터 62두로 낙농경영에 진입하였다. 이후 건설업과 농업을 겸업하면서 20여년이 지난 현재 약 1,100두로 성장
 - 가치사슬을 보면, 건설업의 자갈채취용으로 저가의 농지를 구입하여, 본사의 여력으로 토지개량, 시설의 설계와 정비, 사료생산 등으로 확장함으로써 대폭적인 생산비 절감을 실현
 - 자재조달, 가공, 판매 등은 지역농협에 위탁하는 등 농협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농협이나 낙농가로부터 시설공사 수주를 받는 등 지역과 상생관계를 구축
 - 유가하락 등으로 낙농만을 전업화 하는 경영으로는 생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건설·낙농복합경영으로 비용절감효과와 사업창출효과를 실현한 새로운 비즈니스모델로 평가

²⁰ 八木宏典編. 2013.

- 건설업의 농업경영 사례는 논농업에서도 찾을 수 있음. (주)아이키(愛龜)는 에히메현(愛媛縣) 마츠야마시(松山市)에 소재하며, 도시근교 논농업지대에서 건설업의 경영자원을 활용한 사례임. 아이키 그룹은 2000년에 자회사 애그리를 설립, 본격적으로 농업에 참여하고 있음. 논농업 중심으로 임차를 통하여 현재 50ha라는 대규모 쌀농업을 경영하며, 판로개척, 그룹 전체의 다각경영, 농업 고객을 본사업 고객으로 활용하는 점 등이 주요 특징임. 아이키 그룹은 포장공사 전문업체로서 도로 공사를 통하여 지역주민과 양호한 관계를 구축한 결과로 농가로부터 신뢰를 축적, 농지를 임차하는데 도움을 받음. 지역의 유기자원을 활용, 비료를 생산하는 등 순환형 사회를 구축하고, 또한 지역농협의 영농지도원을 퇴직한 직원을 고용하면서, 쌀 보관은 농협을 이용하는 등 지역과 상생하는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음.
 - 애그리는 연간 정규직 3명에 아르바이트 3~4명으로 농작업을 하고 있으며, 수시로 본사의 인력으로 충당하는 체제이며, 쌀 생산은 친환경 생산에 충실히 하여 다양한 판로를 독자적으로 개척, kg당 200~700엔으로 판매하는 등 차별화를 시도함. 매출액은 연간 1억 엔 정도 수준
 - 판매처는 고급 양판점(1~2kg 포장, 5개소), 호텔(도고온천 2개소), 레스토랑, 돈카츠 체인점, 선술집, 개인(택배), 사내 종업원, 백화점 선물용(소량이지만 홍보효과 기대), 인터넷 판매, 농협 출하(약 10%, 200엔/kg) 등
- 그 밖에 기업(건설업)이 시설형 농업생산법인을 설립하여 진입한 유형으로 (주)야마구치구미(山口組)가 있으며, 서비스형으로 관광목장을 통해 지역활성화를 도모한 유형의 (주)파스트팜이 있음.
 - 야마구치구미가 전개하는 농업진입 비즈니스는 1단계 고부가가치 판매 전략(토마토를 생과용과 가공용으로 브랜드화 직판)과 2단계(미생물 배양토나 재배법을 활용한 농장시스템을 판매)로 구성
 - (주)파스트팜은 유희농지를 관광목장으로 재생하고 염소젖 가공·판매와 정종 제조 등 토지이용형 농업에서 부가가치를 제고시키는 비즈니스 모델

3. 유럽

3.1. 유럽의 CSR 관련 정책

- 유럽에서는 종래 법령준수나 납세, 문화활동이나 기부활동 등은 기업활동으로서 당연하게 여겨져 CSR에 대해서는 그다지 논의되지 않았으나, EU통합에 의해서 실업문제의 심각화가 사회불안이나 경제정체를 일으킬 가능성에 대해 염려하게 됨에 따라 CSR에 관심을 가지게 됨.
- EU집행위는 2001년 처음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녹서를 발표함. 이에 따라 CSR에 대한 국내적, 유럽지역적, 국제적 논의를 시작하고 ‘기업은 그 활동과 이해관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발적으로 사회와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함.
- 2002년 6월에 ‘A business contribution to sustainable development’, 2006년 3월에 ‘Implementing the partnership for growth and jobs: Making Europe a pole of excellence on CSR’이라는 제목의 커뮤니케이션을 발표함으로써 CSR의 도입을 권장함. 더불어 EU집행위 Enterprise and Industry 총국 내 CSR 부서를 신설하면서 유럽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CSR 행동지침을 도입하고 이를 실천하도록 권장함.
- ‘EU의 strategy 2011-14 for CSR’에서는 기존의 CSR 정책이 CSV적인 접근으로 진화해가고 있음을 볼 수 있음. 특히 성공적인 CSR을 위해 기업들은 이해관계자들과 협력을 통해 사회, 환경, 윤리, 인권, 소비자이슈 등을 기업의 비즈니스 활동과 핵심 전략에 녹여내어 사회와의 공유가치창출 극대화의 목표를 지향함.

- 정책당국은 자발적 정책 유도, 필요에 따라서는 강제규율을 통해 기업들을 적절히 지원함. 무역연합과 시민사회 단체는 기업들의 문제를 명확히 하고 개선활동을 위한 압력을 행사하며, 기업과 협력을 통한 문제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음. 소비자와 투자자들은 사회적으로 책임 활동을 하는 기업들에 대한 소비나 투자를 통해 시장을 강화할 수 있음.

3.2. 영국의 상생협력 관련 정책 현황

- 영국의 경우 'Big Society'는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고 개인, 전문가, 시민, 기업들의 수준 높은 책임을 요구하는 사회이며 구성원 스스로가 국가의 통제가 아닌 사회적 책임의식을 원동력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사회임. Big Society는 구성원들의 책임의식을 바탕으로 BSC(Big Society Capital)와 SIB(Social Impact Bond) 등의 사회적 가치 투자를 통해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한다는 관점에서 CSV와 연계가능함.
- 영국정부는 Big Society의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① 지역사회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 ② 주민들이 자신의 지역사회 내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 ③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권력을 이전, ④ 협동조합, 자선단체, 사회적 기업과 같은 조직들을 지원, ⑤ 행정정보를 시민에게 모두 공개 등의 실행 방향을 제시함.
- 영국 정부의 국제적 CSR 정책은 International Institute of Business and Human Rights의 설립 기금을 지원한 것이 대표적임. 영국 국세청은 중동,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의 자체인력을 사용, 시민 정부 수립과 신뢰할 수 있는 세금 시스템 개발에 참여함. 또한 Gift Aid 정책을 통해 개인사업 및 기업들의 기부금에 대해 세금을 면제하며, Payroll giving 정책을 통해 개개인의 자선 기부금에 대한 세금을 면제하여 CSR 관련 세금 인센티브를 마련함.

- 영국은 2000년 7월 ‘영국 연금법(United Kingdom Pension Act)’이 개정되어 연금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윤리적, 사회적, 환경적 측면을 어느 정도 고려했는지에 대한 정보개시를 의무화 함. 연금의 운용에 대해서 사회적 책임투자가 법적으로 강제된 것은 아니지만, 투자규제에 관하여 처음으로 CSR을 언급한 점에서 의의가 있음. 또한 개정된 회사법상 CSR 정보의 제시의무가 추가되어 「기업 활동 재무보고서(Operating and Financial Review)」는 이용 가능한 자원, 기업이 직면한 리스크와 불확실성, 환경, 고용, 사회와의 커뮤니티에 관한 정보를 제시하여야 함.
- 영국은 2005년 사회적 기업, 즉 공동체의 이익을 위한 회사(Community Interest Company, CIC)를 위한 특별한 법제를 도입하였음. 2006년 회사법(The Companies Act 2006) 제 6조가 그것임. CIC는 전통적인 영리회사와 유사한데, ‘공동체의 이익’이 회사의 목적에 추가되고, 자산 제한 조항(asset lock)이 있는 점이 다름. CIC 회사는 회사등록 후, 규제당국에 매년 공동체 이익 리포트를 등록해야 함.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약 만개의 CIC가 등록되어 있음.
- CIC는 영국의 다른 영리회사와 마찬가지로, 보증에 의한 책임제한회사(Company Limited by Guarantee), 주식에 의한 책임제한회사(Company Limited by Share), 주식공개 책임제한회사(Public Limited Company) 중 어느 하나의 형태를 취할 수 있음. CIC가 선택하는 가장 흔한 기업형태는 보증에 의한 책임제한회사(Company Limited by Guarantee)로 소유나 이윤배분이 허용되지 않음. CLS는 제한된 범위에서 이윤배분을 허용하여 영국 상무성(Department of Business)은 이 유형의 사회적 기업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음.²¹

²¹ <https://www.gov.uk/government/news/changes-to-the-dividend-and-interest-caps>.

- CIC가 처음 도입되었을 때 CLS는 이윤배분에 대한 제한을 두었으나, 점차 배당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였음. 2013년 개정을 통해 2014년 말부터 배당에는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며,²² 총 배당을 수익(profits)의 35%로 제한하는 것만 남겨 두고 있음.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CIC 주식을 거래할 시장이 형성될 수 있고,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투자의 유인책이 될 수 있음. 2006년 회사법 제172조에서는 일반적 회사 자체의 이사에게 주주의 이익만이 아니라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고려하여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재량을 주었음.

표 5-5. 영국의 2006년 회사법

제172조 (회사의 성공을 촉진할 의무) ① 회사의 이사는 선의로 전체로서의 회사의 구성원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의 성공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활동하여야 하며, 그렇게 함에 있어서 (다른 무엇보다도)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 유의하여야 한다.

- a) 특정 결정이 장기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 b) 회사 종업원의 이익
- c) 회사에 대한 물품공급업자, 고객 기타 다른 사람과 회사의 영업적 관계를 강화할 필요성
- d) 회사의 활동이 공동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
- e) 회사가 사업활동의 수행에서 높은 수준의 평판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
- f) 회사의 구성원 간에 공정하게 활동할 필요성

② 회사의 목적이 구성원의 이익 이외의 목적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그런 목적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또는 그러한 범위까지는, 제1항은 회사 구성원의 이익을 위해 회사의 성공을 촉진하는 것은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③ 이 조항에 의해 이사에게 부과된 의무는 이사로 하여금 회사의 채권자의 이익을 고려하거나 그 이익을 위하여 활동하도록 요구하는 다른 법률 또는 규정에 따르는 효과가 있다.

자료: 공유가치창출 중점추진방안 연구(2012), 산업정책연구원.

3.3. 독일의 CSR 활동 및 제도 동향

- 독일의 CSR 실천 계획에서는 기존의 CSR 의미에서 보다 확장된 의미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실제로 기업과 사회에 공동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

²² 종래에는 주식의 액면가와 지급할 배당액을 연계하였다고 함. 즉 배당액을 주식의 액면가액의 20%로 제한하였음. 그러나 이 제한이 없어졌다고 함.

을 명시하고 있음. 즉, 장기적인 관점에서 CSR은 기업경쟁력을 강화시키며, 정부의 정책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사회적 이슈를 해결할 솔루션을 제공함.

- 독일정부는 2010년 10월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확대를 위한 국가차원의 CSR 전략 'CSR Action Plan'을 도입함. 'CSR Action Plan'과 관련된 세부추진 목표로는 ① 기업과 공공행정기관의 사회적 책임 풍토 토착화, ② CSR 관련 중소기업의 참여확대, ③ CSR 활동의 가시화 및 신뢰성 고취가 있음.
- 독일에서는 영국과 마찬가지로 연금제도를 개정하여 연금운용 수탁자에 대해서 CSR에 대한 고려의 유무와 정도, 의결권 행사의 방침 등에 대해서 개시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음. 또한 2004년 12월에 상법이 개정되어 기업의 연차재무 보고서의 영업보고에 사업 전개나 회사의 상황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범위에서 고객의 발전, 환경이나 종업원에 관한 정보 등의 비재무지표를 포함할 것을 의무화 하고 있음.
- 특히 독일 제품의 품질인증으로 자리잡게 된 슬로건 "Made in Germany"를 CSR과 연계하여 'CSR-Made in Germany'로 재부각하고 있음. 'CSR-Made in Germany' 슬로건 확대보급과 관련하여 연방정부는 '21세기 글로벌 세계의 핵심도전과제 성취를 위한 대책' 관련 초안을 마련하고, 독일 기업에게 특히 공공입찰 및 구매와 관련하여 CSR 활동을 적극 펼쳐나갈 것을 촉구함.

3.4. 스위스의 농업과 기업간 상생협력 사례

- 스위스의 기업들은 유럽의 기업들 가운데 가장 활발하게 농업과의 상생협력을 시행하고 있음. 스위스에 본사를 두고 있는 다국적 식품기업인 네슬레는 우유, 초콜릿, 과자, 생수, 커피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함. 네슬레는 '과거에는 기업의 지역사회와 환경적 관여는 흔히 의무감이나 단순한 자선

(philanthropy)으로 간주되어, 운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명성을 지키는 데 필요한 추가비용으로 부담된 것으로 보며 공유가치 창출은 이 같은 부담을 주주와 이해관계자들을 위한 장기적인 비즈니스 부가가치로 강화할 것을 재정의함'으로 비즈니스 전략을 설명하고 있음.

- 네슬레는 장기간에 걸쳐서 주주와 사회 전반에 동시에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공유가치 창출로 이해하며, 특히 농업 중에서도 식수, 농촌개발, 영양 등의 분야에 있어서 지원을 집중하며 이를 통해 네슬레에서도 양질의 생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다고 강조함. 네슬레는 사회공헌형으로 구분이 가능하며, 네슬레가 CSV 연례보고서에서 발표한 상생협력 실적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표 5-6. 네슬레의 상생협력 실적

1. 이동건강 프로그램 혜택 이동: 540만명
2. 영양 보건을 위한 개선된 제품 수: 6,692대
3. 네슬레의 금융지원을 받은 농민: 4만 4천명, 지원 금액: 3,780만 달러
4. 네슬레와 직접 비즈니스를 하는 농민 - 69만 94명

자료: <http://www.nestle.co.kr>

- ‘신젠타’는 스위스 바젤에 본사를 두고 있는 종자와 농약, 살충제 등을 판매하는 농업 다국적 기업으로, 생물 공학과 유전자 연구, 농작물 보호 기술에 있어서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전 세계 종자판매 시장 3위를 점유하고 있음. 신젠타는 2010년 이래로 비즈니스와 사회적 성과를 동시에 달성하는 사회적 책임을 꾸준히 강조해 오고 있으며, 이를 통해 농촌 경제의 가치 창출을 달성함.
- 신젠타는 2012년 제품의 안전한 취급과 적용, 토양 침체의 방지, 수자원 보호, 생물다양성 개선 등을 강조하는 ‘자원 효율성 프로그램’에 천 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였으며,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개발도상국과 지역사회의 경제에도 기여하고 있음. 90개 국가에서 27,0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지속가능한 공급 사슬을 통해 전 세계 수천여 개 기업과 공급자들에게 수입을 제공하고 있음. 신

젠타에서는 전체 수입 가운데 70%를 공급자에게 지불하고, 임직원 임금으로 20%를 지출하고 있음. 신젠타의 경우는 사회공헌형으로 구분 가능함.

4. 시사점

- 미국과 일본, 유럽 등 주요국에서도 상생협력을 위한 법률과 제도적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옴.
- 미국의 경우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B-Corp 법안 등 공유가치 창출을 위한 인프라 여건이 구축되어 있음.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에 대한 인증제도를 실시하고 관련 문항에 ‘지역사회’, ‘환경’, ‘임팩트 비즈니스 모델’ 등의 항목을 포함함. 농업과 관련해서 생산자 조직형태와 소규모 농민으로부터 농산물 공급 여부, 인증농산물의 비중 등의 문항을 포함하고 있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큼.
- 일본의 경우 오랜 기간에 걸쳐서 농업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들어 기업이 농업에 참여하는 규제를 완화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또한 농상공연계를 중심으로 정책자금부터 제품개발 및 시장 개척까지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농상공연계사업은 지원의 연속성이나 범위 등에 있어서 중요한 사례로 참고될 수 있음.
- 유럽의 경우 기업의 재무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를 동시에 고려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음. 영국의 경우 중앙정부의 상생협력 추진 정책을 지역사회에 이양함으로써 지역의 협동조합 및 사회적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음. 독일에서는 사회적 책임에 대한 슬로건을 만들어 국민의식 수준을 제고시키고,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의식을 고착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제 6 장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 제도화 방안

1. 추진방향

1.1. 기본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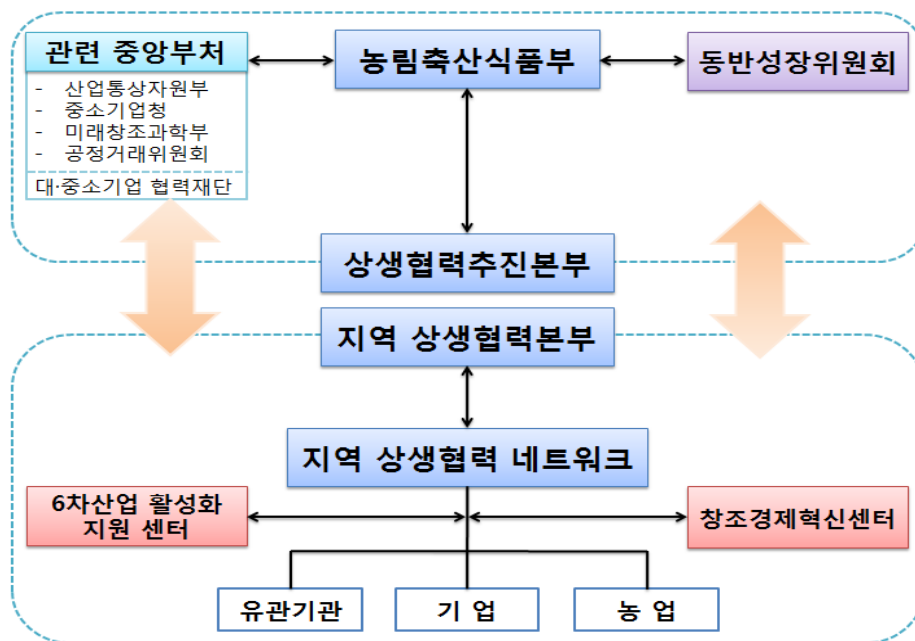
- 농업과 기업은 동반성장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자발적인 공동노력이 전제되어야 함.
- 상생협력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추진되는 것이 필요함.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기업 활동이 기부 또는 자선 중심의 사회적 책임 활동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기업의 경쟁력 제고 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제시되어야 함.
-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은 공정거래를 바탕으로 기술개발, 연구개발, 생산성 향상 노력을 통한 경쟁력 향상을 도모해야 함.
- 정부는 기업들이 상호 신뢰 속에서 협력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법률, 추진체계, 협력기반 마련을 중점 추진해야 함.

1.2. 추진체계

- 2014년 9월 ‘농식품 상생협력 추진본부’ 설립 이후 본부를 중심으로 협약(MOU) 체결 등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 활동이 추진되어 왔으나,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 촉진과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상생협력 추진체계의 정립이 필요함. 현재의 본부차원에서 전국 단위의 상생협력을 통합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상생협약 활성화를 위한 신규 사업을 개발·운영하기 위해 추진체계를 확충할 필요가 있음. 중앙단위의 효율적인 사업 관리와 지역단위에서 특성에 맞는 사업의 발굴과 확산이 요구됨.
-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배정함. 또한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업무와 관련된 중앙부처(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공정거래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등) 및 동반성장위원회와의 효율적인 업무 조정과 추진을 위해 협의함.
- 상생협력 추진본부는 중간지원조직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정·위탁사업을 추진하며 상생협력사업의 운영을 전반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조직 규모 및 구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국가차원에서 제도 운영/평가와 실적 관리를 담당하며, 지역별 상생협력 사례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함. 또한 협력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한 조정 지원을 담당해야 함.
- 상생협력 사업의 국가적 확산을 위해 ‘지역상생협력본부(가칭)’를 서울이외 지역상공회의소에 시·도별 1개소씩 지정하여 설치하여 운영함. ‘지역상생협력본부(가칭)’에서는 지역별 상생협력 이행 관리, 사례 발굴, 정보 공유 등의 역할을 수행하여 지역단위 협력의 플랫폼 역할을 수행함.
- 지역본부를 거점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 등은 지역 상공회의소, 기업

계, 생산자단체 등과 함께 ‘지역 상생협력 네트워크(가칭)’를 구축함. 지역 네트워크에서는 ‘농식품상생경영자문단’과 연계하여 경영컨설팅을 제공하고, 전국 17곳의 지역창조경제센터, 9곳의 6차산업 활성화 지원센터와 연계 사업을 발굴함으로써 기업과 농업의 유기적 협업관계를 창출함. 그 밖에 상생협력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협의회 및 워크숍 개최, 홍보 및 교육 사업 등을 담당함.

그림 6-1. 상생협력정책 추진체계도



2. 정책분야

- 기업간(농업과 기업간) 거래에서 양자간 이해가 항상 일치하지 않으므로 ‘공정거래’를 바탕으로 한 ‘협력’이 중시되어야 함. 공정거래와 협력을 달성하기 위한 상생협력 체제구축도 상생협력의 구성요소가 될 수 있음.
 - 공정거래는 시장경제의 기본적인 준칙으로 소비자 보호와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필수적임. 공정거래는 부당거래를 금지/예방하고, 계약 및 결제 등 거래관행을 선진화·효율화하기 위한 제반 요소를 포괄
 - 동반성장체제 구축은 공정거래와 협력활동이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기반을 조성하는 것으로 환경조성 및 추진체제 구축이 주요 내용

- 9.29. 동반성장 대책에서는 공정거래 질서의 확립, 사업영역의 보호 및 동반성장 전략의 확산, 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 지원, 동반성장 추진점검시스템 구축의 4개 분야로 구분함.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기본계획(2014~16)에서는 3대 전략으로 ① 성장사다리 구축, ② 동반성장문화 확산, ③ 공정거래 정착을 제시함.

-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① 협력 강화, ② 기반 조성, ③ 공정거래 확산의 3개 분야로 구분하여 제시함.

그림 6-2.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3. 농업과 기업의 협력 강화

3.1. 농업과 기업간 상생협력제도 도입

3.1.1. 농식품 상생협력 협약의 체계화

- 농업과 기업이 원료공급, 판매, 수출 등의 과정에서 거래를 함에 있어 자율적인 상생협력 기반 조성을 약속하고 공정거래를 확립하는 협약을 자율적으로 체결하도록 지원환경을 조성함.

- 협약서에는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계약체결관련 사항과 상생협력을 위한 기업의 농업에 대한 지원사항이 내용으로 포함되며, 협약의 절차와 평가 관련 사항이 명시되어야 할 것임. 표준협약서를 작성토록하고, 협약서에는 원료구매, 수출협력, 공동출자, 사회공헌 등 각 분야별 지원내용이 제시되도록 해야 할 것임.
- 협약 체결 후 1년 단위로 평가를 요청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상생협약평가위원회(가칭)’를 구성하여 협약이행을 평가함. 평가항목은 협약서(이행계획서)와 이행실적을 통해 협약내용의 충실도, 이행도 등을 평가하며, 협약을 체결한 농업 대상주체에 대해서 협약의 내용과 이행과정에 대한 협약만족도를 조사하여 참고할 수 있음. 또한 협약이행과정에서 타법에 대해 위법한 사례나 반하는 행위 여부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할 것임. 협약평가의 항목은 협력의 성격과 기업유형을 감안하여 항목별 점수배분을 다르게 설정할 필요가 있음.

표 6-1. 공정거래위원회의 협약 평가항목별 점수배분 사례

평가 항목	세부평가 항목	배 점
1. 협약내용의 충실도 (30점)	(1) 협약 절차 지원 등에 관한 기준 및 표준협약서 반영정도	2점
	(2) 지원내용의 규모·정도	23점
	(3) 원물생산자 직접지원	5점
2. 협약내용의 이행도 (70점)	(1) 협약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상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사항 이행정도(표준계약서 도입여부 포함)	17점
	(2) 상생협력 지원내용 이행정도	43점
	(3) 원물생산자 직접지원 ㉠ 생산기술, 자금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MOU의 이행도(6점) ㉡ 원물생산자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별도 법인 및 재단을 통한 지원실적(4점)	10점
3. 법외반시장조치에 따른 감점	○ 협약기간 중 발생한 행위로 인한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	최대 25점 감점
4. 동반성장에 반하는 행위	○ 임직원이 협력사와 관계에서 뇌물수수, 배임, 청탁 등 기업윤리와 동반성장에 반하는 행위로 사회적 지탄을 받은 경우 행위 1건당 10점 감점	1건당 10점 감점
5. 동반성장에 적극적 참여	○ 기간연장, 협력사 지원, 우수평가 등	최대 8점 가점
6. 만족도조사	○ 협력사의 협약내용 및 이행관련 만족도	10점

자료: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하도급분야)

-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대·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의 성격에 따라 대기업-제조업, 대기업-건설업, 대기업-정보서비스업, 대기업-통신업, 대기업-식품업, 대기업-광고업으로 구분하였으며, 직전년도 매출액이 7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의 1차협력사인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별도 기준표에 의거하여 평가를 진행
- 기업의 협약이행 평가결과는 점수에 따라 등급화하고 평가등급별로 인센티브를 차등 지원함으로써 협약 이행의 활성화를 도모함. 공정위는 협약이행 평가등급을 최우수, 우수, 양호의 3개로 구분하며, 등급에 따라서 직권조사 면제, 시정명령에 대한 공표의무 면제, 모범업체 지정, 표창 수여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 동반성장지수에서는 평가등급을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의 4개로 구분하고, 관련된 다수 부처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음.
-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 협약의 절차와 지원기준은 특별법 제정 시 관련 법 조항에 근거하여 별도 기준으로 설정될 수 있음.

3.1.2. 성과공유제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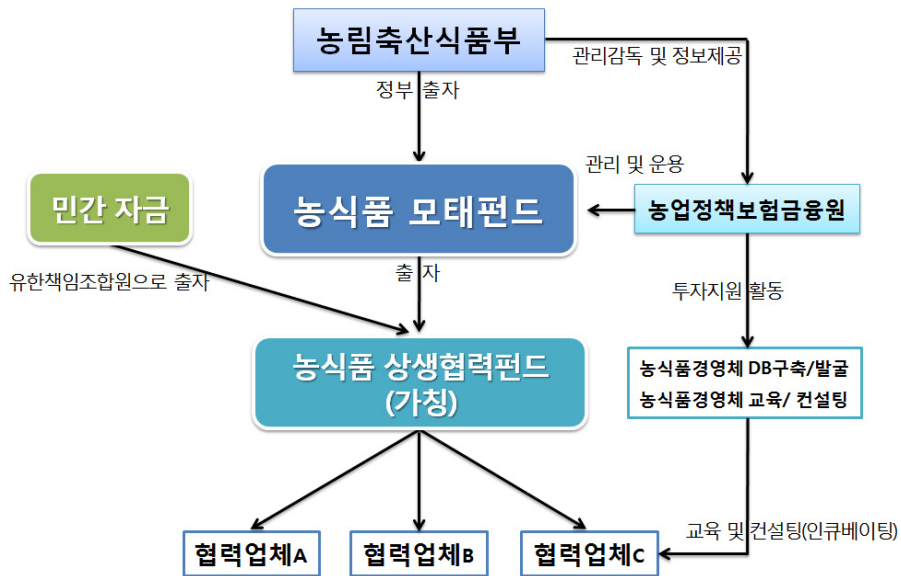
- 성과공유제는 기업과 농업이 공동으로 개선 활동을 수행하고 그 성과를 공유하는 제도임. 기업의 상생협력 활동이 지속적으로 수행되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문화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농업과 기업이 공동으로 상생협력 활동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공동 노력으로 거둔 성과를 사전 계약대로 공정하게 나누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는 성과공유제를 ‘정부는 수탁기업이 원가절감 등 수탁·위탁기업 간에 합의한 공동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탁기업이 지원하고 그 성과를 수탁·위탁기업이 공유하는 계약모델’로 정의하고, 확산 지원을 위해 ‘성과공유 확인제’를 통해 정부지원을 확대하고 있음.

- 성과공유 확인제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성과공유제 시행 여부에 대한 판단, 객관적 실적 측정 및 평가를 위해 성과공유제 확산추진본부에서 도입기업과 성과공유제를 확인하고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성과공유 확인제 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고시, 2012.4.20. 제정)을 근거로 하여 운영
 - 성과공유 확인제는 성과공유제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절차가 진행되며, 과제등록/성과공유 확인/확인서발급의 절차로 진행
 - 2012년 4월~2013년 도입 기업 분석결과 생산성 향상, 수익성 개선 등으로 과제당 평균 7.5억 원의 재무성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
- 농업과 기업의 성과공유제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상생협력 추진본부에 ‘성과공유제 확산 추진’ 업무를 부여하고, 성과공유 확산을 위해 확인제와 정부인센티브 도입이 필요함.
-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 분야별로 다양한 성과공유 모델을 개발하여 확산하는 것이 필요함. 공정거래 자율 준수, 새로운 제품의 생산/개발, 제품의 품질/안전성 향상, 생산비 절감, 국내 마케팅 개선(직거래 모델 발굴), 해외 진출 확대, 생산/관리시스템 개선, 정보공유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농업과 기업의 다양한 성과공유 모델을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보급해야 함.
- 성과공유의 방법으로는 과제 이행 결과의 성과에 대한 현금보상, 원가절감이나 품질/안전성 개선 등에 대한 가치 평가를 통해 구매단가에 반영, 구매물량 보장, 계약물량 확대, 개발품 구매보장, 유통마진 인하, 입점/판매대 제공, 수익계약, 우선구매 등 다양한 방법이 적용 가능함.
- 성과공유제에 대한 기업의 인식제고와 여건 조성을 위해 ‘농식품 성과공유제 확산협의회(가칭)’를 구성하는 등 정보교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사례집 발간 및 홍보를 통해 성과공유제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음.

3.1.3.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 펀드 운영

- 생산성 향상, 신제품 개발, 품질 향상, 인력개발, 마케팅 확대, 해외시장 진출 등의 사업에 대한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기업의 농업과의 상생협력 투자 확대가 필요함.
- 농식품모태펀드의 농식품투자조합에 상생협력 분야를 추가로 구성하여 농식품 상생협력펀드(가칭)를 운영하는 것을 제안함.
 - 주목적 투자대상: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
 - 투자조건과 운영방식은 특수목적분야와 동일수준에서 설정하되 투자금 전액을 상생협력사업에 대한 목적투자에 사용하도록 규정
 - 출자비율은 조합약정금액의 70% 수준으로 하고, 30%는 민간출자 유도
 - 신제품 개발, 신기술·신자재 개발/도입, 종자 개량, 비용절감, 경영 혁신 등의 모델에 적용 가능
 - 투자대상은 상생협력을 조건으로 하는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제3조)의 농림수산식품경영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의 대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을 포함
- 농식품 상생협력펀드(가칭)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민간출자 출연기업에 대해 세제 및 포상 혜택을 부여하고, 모태펀드 홍보 및 투자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상담관 운영, 투자설명회 개최 등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음.
 - 대·중소협력재단의 동반성장 투자재원 출연시 혜택은 “조세특례제한법”(제8조의 3)에 따라 총 출연금액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 “법인세법”제24조에 따른 지정기부금 인정, ‘동반성지수’ 산정시 가점 부여(2014년 1.5점 가점), ‘공공기관 중소기업 지원계획 및 추진 실적 평가’시 중소기업 동반성장 지원실적 가점 부여(총 5점 가점 중 2점 가점(2014)),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의 자금출연 실적 인정, 동반성장 우수사례 정부 포상 및 대외홍보

그림 6-3. 농식품 상생협력펀드(가칭) 운영체계



3.1.4. 동반성장지수 개선

□ 가점부여

- 동반성장지수는 대기업의 다양하고 자발적인 동반성장 활동을 촉진하고 불공정 사례 등 동반성장을 저해하는 행위를 지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용되고 있으나, 농업과 관련된 내용은 동반성장 확산활동에 대해 구체적인 가점을 부여하고 있지 않음.
- 미국에서 B-Corp 법안을 근거로 기업의 사회적/환경적 영향 평가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B-Corp 인증항목에 농업관련 질문항목이 포함되어 있음.

표 6-2. B Lab 평가 항목 중 농업 관련 질문

구분	평가 항목
지역	CM6.8 함께 일하는 공급업체, 유통업체 또는 소매업체에 대하여 사회 및 환경 성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 공식적인 행동강령이나 계약을 보유하고 있나요?
	CM6.15 소규모 농민으로부터 공급을 받거나 또는 회사가 협동조합 형태의 회사인가요?
	CM6.25b 최근 회계연도 동안 경작한 상품 또는 작물의 몇 퍼센트(%)가 다음의 인증을 받았나요? (인증을 받은 작물은 공정거래, 열대우림동맹(Rainforest Alliance), 스타벅스 C.A.F.E., Utz 인증, 국제유기농운동연맹인증, USDA 유기농, 품질보증국제 - 인증유기농, EU 유기농 인증)
환경	EN1.1 회사가 경작농지를 관리하고 있나요?
	EN1.2 회사가 협동조합 형태를 갖거나 다른 경작자로부터 농산물을 공급받나요?

자료: <http://www.bcorporation.net>

- 농업의 중요성과 농업의 한계와 위기를 고려하여 도시와 농촌간, 농업과 기업간 상생협력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상생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사업에 대한 가점 부여가 필요함. 구체적으로는 농촌지역 상생협력 지원 실적과 국산 농수산물 구매 확대 실적을 반영할 수 있음. 농촌지역 상생협력 지원 실적은 농촌지역 지원을 위한 상생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와 농촌지역과의 동반성장 사업 실적을 산정기준에 포함가능함. 국산 농산물 구매 확대 가산점은 기업에서 국산 농산물 구매를 확대한 실적을 기준으로 산정가능함. 평가 직전연도 대비 평가연도 국산 농산물 구매량이 증가하는 경우 가산점을 받음. 전체 농산물 사용실적을 입증하는 구매계약서 등 다양한 자료를 제출하여 가산점을 인정받을 수 있음.
- 실제 기업들도 농업과의 상생협력 내용을 동반성장지수 가점으로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 응답 기업의 58.8%가 필요성을 공감한 바 있어 동반성장지수가점이 농업과의 상생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기업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체감도 조사

- 체감도 조사의 설문문항이 협력 기업의 규모, 모기업의 거래의존도, 성장산업군 여부, 업종 특성 등에 따라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식품관련 기업이 타 업종에 비해 높게 평가되기 어려움.
 - 식품산업은 전체 25,000여 개 기업 중 종업원 수 10인 이상인 사업장이 18%이고, 연 매출 규모가 10억 원 이상인 경우가 14% 수준인 반면, 통신·정보서비스의 경우 10인 이상 사업장이 55%에 이르고, 연 매출 규모가 10억 원 이상인 경우는 65% 수준(2014년 식품의약품통계연보)
 - 협력기업으로부터 조립용 부품을 납품받아 완성품 제조를 하고 있는 통신·정보, 전기·전자, 기계·자동차·조선 등은 모기업에 대한 협력기업의 거래의존도가 80% 수준으로 높은 반면, 식품업과 유통업은 모기업에 대한 거래 의존도가 10% 이하 수준으로 협력업체 체감도 조사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될 가능성 상존
 - 전기·전자, 기계·자동차 등은 높은 성장율을 보이고 있고 해외의 사업장 진출 또한 활발한 반면 식품의 경우 성장율은 3%대로 시장이 정체되어 있고 해외 사업장 진출이 드문 상태
 - 유통업의 경우 적게는 2,000개에서 많게는 3,000개의 협력업체와 협업하고 있음. 따라서 제조업과 유통업이 동일하게 250개의 협력사를 대상으로 체감도 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불공평

- 유통업은 생산자로부터 제품(상품)이 나와서 소비자에게 도달하기까지의 과정을 담당하는 산업임. 평가항목을 보면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하는지, 기술을 공유하고 활용하는지, 공정개선이나 기술지도를 하는지 등 주로 제조와 관련한 질문을 하고 있으나 유통업은 제조역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

표 6-3. 분야별 체감도 조사의 주요 항목 평가

분야	질문	평가
인력	협력기업 임직원의 경영 및 기술역량 향상을 위해 거래 대기업으로부터 교육·연수·훈련 등을 지원 받고 있는 정도	협력기업의 규모가 영세하여 식품협력기업에서 자체 교육 및 훈련 계획 수립이 어렵고, 추가 채용 수요도 적은 사례 발생
	협력기업 임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 자체 교육이나 자체 훈련을 할 경우 시설이나 비용, 강사파견 등 인프라 지원 정도	
	대기업의 인력채용에 대한 지원 정도	
연구 개발	대기업과 기술 활용 또는 공유 정도	식품 협력기업은 영세하여 공동개발사례가 드물고, 대부분 대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이전받아 활용
운영 추진 체계	기술협력, 공동연구와 관련한 상담 또는 기술자료공개 시 기밀유지약정을 사전에 체결하는 정도	식품 협력기업이 보유한 기술수준은 대부분이 공개된 기술이어서 기밀유지약정 사전체결이 의미가 없음(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서 운영 중인 기술자료임치센터의 등록 현황을 보면 총 6,477건 중 식품업의 등록 건수는 0임)
경영 생산	지속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정보나 컨설팅 제공 정도, 생산성 향상을 위해 공정개선이나 기술(품질)지도 정도	거래의존도가 낮은 경우 경영관이나 생산지원이 경영간섭으로 인식 됨
판로 지원	판로확대에 필요한 지원을 정도	성장산업군인 전자, 기계, 자동차의 경우는 해외 사업장을 통해 협력기업과 동반성장 진출을 하고 판로지원 자체가 가능하나, 식품은 성장률이 정체되고 해외 사업장 진출이 많지 않음

자료: 동반성지수 평가대상 식품 및 유통업체 조사결과

- 2014년도에 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체감도 문항에 ‘식품안전을 위한 지원 노력’을 추가하였으나 관련 업계 조사결과 협력기업 현황이 타 업계에 비해 크게 열악하여 구조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농업과 기업의 상생정도를 체감도 조사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국산 농산물 사용과 판로지원을 위해 기업에서 얼마나 노력하는가’, ‘고품질 농산물 사용과 판로지원을 위해 기업에서 농업부문에 얼마나 협력하는가’, ‘기업에서 농업부문과의 거래를 안정적(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편인가’ 등을 조사문항에 추가할 필요가 있음.

□ 지수산정체계 개선

- 업종별 특성에 따라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큰 격차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평가대상을 업종별로 구분하여 업종별 평가를 진행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업종별 상대평가를 바탕으로 기업 평가 등급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 향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상생협약을 체계화하고 참여 기업에 대한 협약이 행정도를 평가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동반성장협약 평가를 대체하여 동반성장지수 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할 것임.
- 체감도조사의 경우 일률적인 문항으로 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산업별로 해당 중앙부처의 협조를 받아 체감도조사 문항을 재작성토록 조사체계를 전환할 필요가 있음.

3.2. 상생협력 지원사업 운영

3.2.1. 기술 지원

- 농업 분야 종자 및 재배기술 개발, 식품산업의 기술 및 제품 개발, 품질관리 및 제조공정 개선, 위생관리 및 유통기한 연장 등에서 기술협력이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산학연 협력기술개발사업과 공공 R&D 성과에 대한 실용화 지원사업의 대상을 선정 시 상생협력기업을 우선 배정함. 또한 상생협력 R&D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의 규제를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함.
 - 농식품 상생협력을 통해 제품 개발, 상품화 등을 추진 시 연구개발과제 선정에 가산점 부여

- 대·중소기업 간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을 참고하여 기업체가 요구하는 기술과 농업부문의 개발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개발대상 기술을 선정하고, 기업체 원료(제품) 구매를 조건으로 정부가 농업부문의 기술개발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 경우 기업의 기술(제품)수요와 농업부문의 노하우를 접목하여 새로운 기술 개발을 활성화할 수 있고, 개발 기술을 매개로 신규 상생협약 체결이 가능할 수 있음.
-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과정에서 기업의 기술을 농업부문에 이전 또는 코칭하고자 할 경우 기술 이전 또는 코칭 소요비용의 30~70%를 정부가 기업에 지원토록 함으로써 기업에서 농업부문으로의 기술 이전이 활성화 되도록 함.
- 농업부문에서 담보력이 부족하나 기술력을 보유하는 경우 기술에 대한 미래가치를 평가하여 보증서를 발급함으로써 기술을 보호하고, 이를 담보로 지원을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중소기업의 경우 기술보증기금 일반화되었으며,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운영하여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정보를 제3의 기관에 보관해두어 분쟁발생 시 기술 개발 사실을 입증하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음.

3.2.2. 자금지원

- 정책자금 융자 시 상생협력 우수기업에 대해 지원 평가를 우대하거나 자금 융자 금리를 인하하는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용할 수 있음.
 - 농식품 원료구매/시설자금 지원 시 금리를 인하하는 방안 검토
- 상생협력 우수 기업과 농업부문을 대상으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감면 등 세제 지원을 고려할 수 있음.
 - 법인체 대상 감면을 상향 조정 또는 감면기간 연장, 부가가치세 감면
 - 공동 투자시 부동산 취득세, 재산세 감면
 - 공동 투자시 양도소득세 면제, 우수 사례 배당소득세 면제 등

3.2.3. 판로/마케팅 지원

- 유통부문 협력은 기업의 전국 유통망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생산/공급하는 구조를 확보할 수 있는 측면에서 농업부문 성장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음. 농업부문에서는 소규모 사업이 대부분이므로 판매 순환구조를 갖추는 것은 단순한 매출증가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생산규모 유지에 기여함.
- 농업과 기업의 유통부문 협력은 지역의 전통상품과 지역브랜드를 전국적으로 확산하는데 기여할 것이며, 대기업입장에서는 제품 구성의 다양화와 품질 차별화를 통해 제품군별로 단단한 라인업을 갖추고 사업역량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됨.
- 지역별로 품질을 인정받고 인지도도 있으나 규모의 한계 때문에 전국유통에 어려움을 겪는 유망한 식품브랜드들을 발굴하여 전국 브랜드로 탄생시킨 CJ의 ‘즐거운 동행’이 대표적인 사례임. 기업의 판로지원은 유통망 확대뿐만 아니라 신뢰도를 배가시켜 제품에 대한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데 기여함. 기업의 OEM 주문방식과는 달리 생산경영체의 브랜드를 살리되 공동브랜드로 기업의 이미지를 입히는 형태의 상생브랜드 활성화가 필요함. 기업의 브랜딩 과정에서 제품의 포장, 디자인 등 다양한 지원이 추진될 수 있음.
- 그 밖에 상생협력제품에 대한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한 홍보 지원, 디자인 및 포장재 비용 지원, 시험·분석지원, 인증지원 등 다양한 지원혜택이 포함됨.

3.2.4. 해외시장 개척

- 해외시장 진출의 경우 기업의 마케팅역량과 유통망 협력 없이는 농업부문 진출이 매우 제약적이므로 기업과 농업부문의 협력전략 마련이 필수적임. 수출단계 상생협력 추진을 통해 농업 및 기업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 수

출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 수출부문 협력유형은 해외시장에 진출한 유통기업에서 농식품 위탁판매를 통해 마케팅 및 물류비용을 지원, 유통업체 해외매장에 대한 농식품 입점을 지원, 해외 농식품 박람회 등에 우선적 참여 기회 제공, 기업에서 현지 상공인 등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농업부문에 정보공유와 현지정착 지원, 홍보 및 판촉활동 지원 등이 있음.
- 정부에서는 농식품 수출의 물류 활성화 사업에서 상생협력 참여기업에 대한 지원한도를 상향하고, 해외 판촉지원 사업에서 상생협력 참여 기업과 농업부문이 공동 신청할 경우 자부담 비율을 축소하고 정부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추진함. 해외 박람회 참가 사업자 선정과 수출업체 신규 유망품목 발굴시에도 수출분야 상생협력 참여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3.2.5. 컨설팅/교육 확대

-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 과정에서 애로사항 등 해소, 협력주체의 역량 강화, 상생협력 성과 제고 등을 목적으로 기업 및 정부 주최로 다양한 분야에 대한 컨설팅/교육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지원분야는 기술, 자금, 계약재배, 판로, 수출 등 상생협력 사업 전반에 해당되며, 컨설팅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함.
 - 식품분야 컨설팅 사업의 지원비율을 50%에서 농공상융합형기업 등에 대한 인센티브 비중을 참고하여 70~90%까지 확대하는 방안
 - 농업과 기업의 협력사업(신상품/신기술 개발사업, 경영안정자금, 신규 시설투자사업, 시설 및 운전자금)을 별도로 신설하여 추진 검토

3.2.6. 정부조달사업 우선 구매

- 정부조달(지원) 사업 참가/평가 시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서류 조사 또는 서류 제출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 동반성장협약 우수평가기업에 하도급 직권조사 및 서면조사 면제
- 또한 정부조달(지원) 농식품 구매 시 상생협력 우수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입토록 규정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음. 미국의 경우도 연방정부구매를 중소기업에 유보하도록 규정하거나, 사회적/경제적으로 취약계층인 사람이 소유한 기업과 계약하도록 규정하는 프로그램이 있음. “연방조달법” 15정 304의 (4)항에서는 55만불 이상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소기업에 하도급을 주도록 규정하고 이와 관련해서 대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도록 규정함.²³
- 농촌사회공헌 인증기업 선정시 상생협력 우수기업을 우선 고려하며, 정책사업 평가 또는 용역 구매 입찰시 가점 등의 혜택을 부여함.

3.3. 규제개선(기업의 농업분야 참여 제약 개선)

□ 대기업의 농업분야 투자 관련 규제 개선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업이 농업법인에 일정 부분 이상 출자 시 해당 법인이 기업의 계열사로 분류되는 문제 발생가 발생하므로 농업계와 기업의 공동출자 모델 확산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필요함.

²³ 임정빈 외(2012).

- 기업이 농업법인 지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거나 법인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인정될 경우 ‘기업집단’으로 분류되며, 기업집단 계열사로 분류 시 공정거래법 및 기타법령상 규제대상이 됨. 또한 “중소기업법”상 각종 지원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며, 법인세 감면 등 농업회사법인으로서의 혜택 수혜도 곤란하게 됨.
 - ‘기업집단’은 동일인이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의미(“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및 시행령 제3조(기업집단의 범위))

- 기업집단 및 계열사의 농업분야 출자 촉진을 원활히 하기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에서 기업집단 제외 대상에 농업회사법인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벤처기업, 기술창업전문회사,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등 일정사유 충족 시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의해 기업집단 범위에서 제외 가능

표 6-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

-
-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로서 동일인이 그 사업 내용을 지배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의하여 당해 회사를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하여는 제3조(기업집단의 범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의하여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이를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회사의 경우 법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를 적용할 때에는 기업집단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및 같은 조 제9호의 자회사 또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8항의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및 같은 법 제11조의2제4항제2호의 자회사로서 회사 설립등기일부터 10년 이내이고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동일인이 회사인 경우 동일인을 포함한다)와 출자 또는 채무보증 관계가 없는 회사
4.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이하 이 호에서 “중소벤처기업”이라 한다)으로서 다목부터 바목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회사
-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연간 매출액에 대한 연간 연구개발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비를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비율이 100분의 5 이상인 중소기업. 이 경우 연간 매출액 및 연간 연구개발비는 다목에 따른 요건해당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손익계산서에 표시된 매출액을 말한다) 및 연구개발비로 하며, 같은 목에 따른 요건해당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그 요건해당일까지의 매출액 및 연구개발비를 연간 매출액 및 연간 연구개발비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 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 특구지역 대기업 진입 규제 완화

- 기업의 농업법인체 투자를 통한 규모화를 위해 농업부문 경쟁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업의 농지소유 및 투자 관련 규제 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농업부문에서의 저항감을 완화시키기 위해 우선적으로 클러스터 및 특구 지역을 중심으로 기업의 투자 확대를 추진함.
- 국가식품클러스터, 농업특구 지역 등에서 기업의 농지소유 및 영입 규제 등

을 완화하여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고 지역의 특화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특구지역에 규제특례를 적용할 경우 다른 법령에 우선할 수 있음.

- 현재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개정에 따라 일부 규제의 완화가 진행
- 특구지역에서 기업의 농업법인 설립규제 및 농지소유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의 적극적인 상생협력 사례를 도출함.
 - 특구 내에서는 영농조합법인(농업인 조합원 5인 이상) 또는 농업회사법인(농업인 지분의 10% 이상)에 대한 설립규제 폐지 검토
 - 농업회사법인의 업무집행조합원의 1/3 이상이 농업인이 아니더라도 농지소유를 허용
 - 대기업의 지주회사 체제가 보편화되고 다각화된 사업부문을 보유한 현실을 감안하여 대기업이 농업회사법인과 공동투자하여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지분을 요건 완화 검토²⁴

²⁴ 현행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 → 자회사 → 손자회사 → 증손회사로의 지분소유에 대한 최소지분율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주회사 체제의 과도한 수직적 확장을 방지하고자 손자회사의 증손회사로의 지분율을 100%로 정하고 증손회사는 국내 계열사 지분을 보유할 수 없도록 함. 다시 말해 손자회사는 증손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하지 못하는 한 증손회사를 설립할 수 없으며 따라서 손자회사가 투자를 유치하여 다른 사업에 진출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임.

표 6-5.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관련 조항

제1장 총칙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특구"라 한다)에 규제특례를 적용할 때 다른 법령에 우선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이 법의 규제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장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제25조(「농어촌정비법」에 관한 특례)
③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농어촌정비법」 제81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특화사업으로 하는 농어촌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농어촌정비법」 제94조제1항에 따라 한계농지등 정비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는 같은 법 제92조 각 호의 시설 외에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25조의2(「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특화사업자인 농업회사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6항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사업을 부대사업으로 할 수 있다.
제26조(「농지법」에 관한 특례)
① 농지소유자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농지법」 제9조에도 불구하고 농지를 위탁하여 경영할 수 있다.
② 특화사업자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농지법」 제23조에도 불구하고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할 수 있다.
③ 특화사업자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농지법」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농업진흥구역 및 농업보호구역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④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농지법」 제3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하는 조건으로 농지의 일시사용을 허가할 수 있는 용도를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⑤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농지법」 제37조에도 불구하고 농지의 전용(轉用)을 허가할 수 있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4. 협력기반 조성

4.1. 농업경영체 역량 강화

- 기업과의 협력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효율적인 상호협력관계를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 육성을 바탕으로 한 안정적인 원료 공급과 계약재배 확대가 뒷받침되어야 함.
- 농업경영체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안정을 위한 구조개선, 소득지원, 정보제공과 농가교육, 생산기반 지원을 통해 품목별 생산자협의체 등 경쟁력 있고 전문성 있는 조직체를 육성해야 함.
- 고품질 원료를 수요하는 기업에서 고급 농식품을 생산지에서 안정적으로 원료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수요기업과 산지의 관련 정보 교환을 활성화함. 지역과 중앙의 추진본부 주최로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 박람회나 구매상담회를 개최하여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것을 지원함.
-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이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계약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농업부문에서 기업의 계약 상대방으로서 역량 강화가 필요함. 지역 상생네트워크를 통해 농업인을 대상으로 계약서 작성방식 및 관련 법률 등 계약관계 준수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추진토록 지원하고, 선진계약문화 캠페인 등을 실시함.

4.2. 상생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고, 상생협력사업 이행과정을 감시하고 정부정책의 성과를 평

가하기 위해 농업/기업/소비자/정부/학계가 참여하는 상생협력추진협의체를 구성·운영할 필요가 있음.

- 상생협력의 확산을 위해 지역별 상생협력 추진체계를 확충하고 지역별 네트워크 활성화를 추진함. 또한 전국 17개 지역 내 창조경제혁신센터 등과의 연계를 통해 효율적·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대기업의 노하우와 경험을 농업과 기업의 협력사업에 적극적으로 접목하고 유기적으로 협업을 추진함.
 - 미래창조과학부의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대기업과의 1:1매칭 시스템으로 대기업은 지역 내 아이디어 구체화와 상품개발, 판로확보 등을 지원
- 지속가능한 소통채널 마련과 실시간 정보공유를 목적으로 상생협력사이트 개설을 검토하고, 활발한 정보공유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상생협력사이트 개설은 온라인 협력업무 활성화, 협력내용의 투명성 제고, 홍보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됨.

4.3. 사회 분위기 조성

-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에 대한 관심과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지역별 설명회 및 구매상담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농식품 상생협력 경영자문단’ 운영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농식품 상생협력 경영자문단’ : 대기업퇴직 임직원/ 중소기업CEO/ 기타 동등자격 보유자 50여명으로 구성, 수출선도조직과 농업회사법인을 대상으로 서면자문과 현장자문을 실시
- 매년 평가되는 협약성과 평가를 바탕으로 상생협력 사례집을 발간하여 배포하고, 우수 기업과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포상토록 함. 포상결과는 정책

인센티브 기준으로 적용되며, 상생협력 홍보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의 필요성과 성과에 대한 기업의 이해와 국민적인 공감대 창출을 위해 상생협력 사례를 중심으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 또한 상생협력으로 비즈니스 및 사회측면에서 큰 성과를 거둔 기업의 경영 및 생산/관리 노하우를 공개/공유함으로써 타 기업체와 농업경영체에 실질적인 확산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5. 공정거래기반 조성

5.1. 표준계약서 보급 추진

- 농산물은 기상여건에 따른 가격 변동성이 커서 거래 당사자 간에 계약 위반이나 분쟁의 소지가 크고, 시장지배력을 가진 주체가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불공정거래가 발생될 소지가 많음. 납품 단가 및 물량 변동 요구, 판촉비 요구, 판촉사원 파견 요구, 수수료 인상 등이 그 예임.
- 농업과 기업 부문에서 계약재배 시 가격, 물량, 품질 조건에서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이를 계약에 반영하고 이행을 보증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되어야 함.
 - “식품산업진흥법” 제13조(계약거래 등 교류협력사업의 증진)에는 농어업 생산자 또는 그 단체와 식품사업자가 식재료의 계약생산·계약공급 등을 위한 교류협력 약정을 체결하는 등의 교류협력사업을 장려
- 농산물의 수급 특성을 반영하고 엄정한 계약의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표준

계약체계 구축 노력이 필요함. 농업과 기업 간 표준계약서 양식을 개발·보급하여 계약서에 의거해 거래하는 관행을 정착해야 함. 표준계약서에는 계약재배 시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변동요인이 거래금액과 물량 조정에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반영되어 명문화될 수 있도록 계약당사자의 의무와 권리, 계약불이행에 따른 패널티조항 등을 상세히 기재할 필요가 있음. 계약서에 기재되는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을 경우 거래조건 변경이 필요한 상황 발생 시 계약내용이 불공정하게 해석될 가능성이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제53조에는 포전매매 계약 시 서면계약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법에 근거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포전매매 계약 시 거래 당사자들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표준계약조건을 제시한 ‘농산물 포전매매 표준계약서’를 고시
 - ‘농산물 포전매매 표준계약서’에서는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사항으로 제시하고, 선도금 지급, 잔금 지급, 위험부담 등을 명시
- 농업과 기업간 안정적인 협력관계가 유지·발전되기 위해서는 수량조건/품질조건/위험부담 관련 내용이 명시된 표준계약관행이 구축되어야 하며, 농산물의 경우 기상요인 등에 의한 생산의 불확실성이 크므로 해당 기준을 엄격하게 제시하기 보다는 일정 수준 이상 변동시 재협의를 여지를 두는 방향으로 검토가 필요함.
- 풀무원의 경우 예를 들어 계약금액은 변동단가를 고려하여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가격변동이 $\pm 30\%$ 까지는 계약금액 지불, 가격변동폭이 $\pm 30\%$ 이상이면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초과부분을 이익측이 지원방식, 만일 가격변동이 $\pm 150\%$ 를 초과하는 경우 가격재협상 등

표 6-6. 농산물 포전매매 표준계약서의 주요 내용

제1조 (매매대금)
① 총 매매대금은 위 금액이며, 잔금지급은 포전매매의 특성을 감안하여 당해농작물의 평균적 생육기간의 2/3가 경과하기 전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양당사자에게 공평하다. 잔금지급기일은 위 기재일이다. 단 매도인과 매수인이 협의하여 중도금을 약정할 수 있다.
제2조 (계약금)
① 포전매매는 선도거래의 성격으로서 계약금이 총 매매대금의 30% 이상 지급되어야 계약당사자 쌍방에게 형평에 맞으며 이 건 계약금은 위 기재금액으로 한다.
제7조 (위험부담)
① 천재지변, 예기치 못한 기상재해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목적물이 멸실, 훼손된 경우에 그 목적물의 손실은 갑이 잔금을 수령한 후에는 을의 부담으로 하며, 그 이전에는 갑의 부담으로 한다.
② 병충해 등으로 인한 목적물의 손상에 대해서는 통상의 관리를 크게 넘는 정도의 병충해침습의 경우, 관리상의 잘못이 아닌, 종자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목적물에 중대한 결점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 쌍방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조수 등 위해 동식물로 인해 발생한 목적물에 대한 손실의 경우에 그 목적물의 손실은 갑의 잔금 수령 후에는 을의 부담으로 하며, 그 이전에는 갑의 부담으로 한다.
③ 위 제2항의 경우에 위해조수에 의한 피해가 사전 미고지로 조수피해예방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지 못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갑에게 책임이 있다.
④ 목적물의 가격 폭락 및 폭등은 포전매매계약의 특성상 대금감액 내지 증액의 사유가 되지 아니 한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 표준계약서에 기초한 계약 체결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법 또는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계약 체결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대·중소기업 상생법의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 협약 절차, 지원 등에 관한 기준’과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 체결 가이드라인’을 참고

5.2.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

- 농업과 기업 간에 공정한 파트너관계를 구축할 때 신뢰 구축, 합리적 성과 배분을 통해 협력활동 확산이 가능함.

- 대·중소기업의 경우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와의 불공정행위는 규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 규정되며, “대·중소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도 ‘수탁·위탁거래의 공정화’가 명시됨.
- 농업과 기업의 경우도 협력사업 당사자 간 경제력의 격차로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생협력 과정에서 거래의 공정화를 보장하기 위한 관련 법률의 제·개정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음. 공정거래가 법률적 범주 내에서 보장되기 위해서는 구두계약 관행이 서면 발급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결제대금 지급, 품질보장, 기술보장 등에서 공정화가 강조되어야 함.
- 불공정거래로 인한 분쟁 발생 시 영세한 규모의 농업경영체에서 크게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분쟁조정협의체 등을 구성·운영하는 등 분쟁의 조정절차를 명시하고, 불공정신고센터를 상생협력 추진본부에 두어 상시적 법률 서비스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과정에서 불공정거래가 확인될 경우 상생협력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되며, 각종 지원정책에서 감점요인으로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임.

6. 법률 제·개정 대안 검토

6.1. 법률 검토의 필요성과 고려사항

- 사회전체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공유가치 창출에 대한 공감대가 확

대되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다수 중앙부처에서 참여하고 있음. 반면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사업은 지금까지 사회적 분위기 확산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법률적 근거가 미흡한 상황임.

- 농업 분야의 관련법은 주로 농업의 현대화, 농업경영의 규모화, 농업과 수요자 간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농업과 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통해 공유가치 창출을 실현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제정되었지만, 적용범위가 제한되어 있음. “식품산업진흥법”에서는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 시책이 부분적으로 반영되어 있음.
- 기업분야의 관련 법률은 기존 시장에서 기업 활동의 공정성, 특히 대·중소기업 간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 이 법률들은 농업분야에도 적용될 수 있으나 부분적이거나 간접적인 효과가 있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대기업이 농업분야에 투자하는 것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여 농업의 현대화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수단의 하나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단점도 있음.
- 전체적으로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을 주된 목적으로 한 법률이 없으며, 기존 법률은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의 요소를 산발적이고 부분적으로 개별 규정에 반영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음. 또한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의 관점하에 마련된 규정들도, 그에 근거하여 다양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나, 정책의 집행체계가 별개로 흩어져 있어서 상호 유기적 연관성을 갖기 어려움.
- 따라서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 제도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법률의 제·개정이 검토될 필요가 있음. 법률개선안은 독립법률 제정 방안과 개별 법률에 관련 규정을 추가하는 개정안의 두 가지 대안을 검토함.

- 제1안은 가칭 ‘농업과 기업 상생협력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이라는 독립 법률을 제정하는 방법임.
 - 상생협력 활성화 정책방향을 특별법에 포함시켜 단일하게 규정하는 방법으로 법률의 목표를 알기 쉽게 하고, 여러 법에 산재해 있는 규정을 조율하기 쉬운 장점
 - 농업분야에 다수의 특별법이 존재하고 있어 추가적인 특별법 제정 자체에 대해 반론이 제기될 수 있으며, 유사정책이 여러 법률에 규정되어 중복성과 불일치의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 존재
 - 독립법으로 할 때 또 다른 방법은 특별법을 두어 새 법률의 목적을 분명히 한 후, 관련 법률의 개별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임

- 제2안은 식품산업진흥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기타 개별 법률에 상생 관련 규정을 추가하는 방안임.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률 중 개정(조문 신설)대상 법률로 검토할 수 있는 법률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식품산업진흥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등
 - 대기기업의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기업집단에서 제외하는 예외규정을 둘 필요가 있을 것
 - 상생협력 관련 정책이 기존의 여러 법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각 정책마다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것도 방법
 - 상생협력 정책 관련 법률 규정이 다수의 법에 흩어져 있어 각 법률에 개별 규정을 두는 개정작업에 어려움 동반
 - 유사정책에 대해 법률 규정이 분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법조항의 일치성과 논리성을 제고 가능

6.2. 가칭 ‘농업과 기업 상생협력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의 제정방향

6.2.1. 기본 방침

-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 활성화의 방향을 ① 농업과 기업의 협력 강화, ② 농업과 기업 간의 공정거래의 확산, ③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을 위한 기반조성으로 설정함.
-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 활성화의 법제화에 있어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참조가능한 모델로 하여 단일한 법률에 상생협력과 관련된 제반 규정을 포함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기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집행기관은 필요에 따라 분산할 수 있도록 함.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따라 관련 타법의 개정 및 타법의 시행령 개정작업의 요청까지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함.
-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과 관련 있는 농업 부분의 기존 법률, 기업 부분의 기존 법률의 제도를 충실히 활용하고, 상호 연계성을 높이도록 하는 것에 유의하도록 함.
- 상생협력의 활성화 사업의 집행기관을 독립적으로 신설하여 제반 업무를 조정하도록 함.

6.2.2. 구성

- 특별법을 제정할 경우 포함될 내용의 개관은 <표 6-7>과 같음.

표 6-7. 특별법 포함 내용

제1장 총칙

- 법률의 목적
- 법률에 사용되는 각종 개념의 정의
-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의 기본방향

제2장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 계획의 수립과 추진

- 기본계획의 수립과 그 내용
- 시행계획의 수립과 그 내용

제3장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을 위한 기본 시책

- 성과공유제
-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 펀드의 운용
-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의 세부 정책의 실시(계약재배, 판로지원,...)
-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 협약제도의 실시
- 기업 규제에 대한 특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지수의 산정과 공개
-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지수 우수기업의 선정과 지원
- 농업·기업 상생협력재단의 설립과 임무

제4장 농업과 기업 간의 공정거래 기반의 조성

- 농업과 기업 간의 표준계약서 사용의 권장
- 납품단가의 결정과 조정(가격 변동요인의 반영 등)
- 농업과 기업 간의 거래의 공정화를 위한 규제(금지행위 등)
- 금지행위 위반의 감시 및 제재

제5장 보칙

제6장 벌칙

부칙

6.2.3. 주요 내용

-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은 다양한 차원에서 진행될 수 있음. 농업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과 여타의 기업 간, 농산물의 생산, 가공·유통, 판매에 참여하는 농업경영체와 식품사업자 간 등 다양한 차원에서 진행됨. 상생협력의 내용도 농산물 및 식품의 생산, 가공·유통, 판매에 직접 참여하거나 기술지원을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협력하는 것이 있을 수 있음. 이들 각각이 모두 상생협력으로 지원되고 권장될 필요가 있음.
- 상생협력을 위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 기본계획에 관여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각 자에게 주어진 역할과 임무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도록 함.
- 농업과 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위해 항시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법률상의 시책에는 성과공유제, 기술지원, 자본지원 등의 다양한 방법이 있고, 이를 위해 협약의 체결 등의 방법이 있음. 기본계획상의 여러 시책은 법률상의 시책을 구체화하는 것이거나 이와 별개의 시책을 마련하여 집행하는 것임.
- 상생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해 상생협력지수를 개발하여 우수기업에 표창과 지원을 하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함. 이 법률안 상의 여러 시책들은 자율성을 토대로 한 것이므로, 시책에 포함된 여러 방안들을 상생협력 지수에 포함시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아울러 농업과 기업 간의 거래 일반의 공정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에 관한 규정을 두었음. 표준계약서, 대금지급규정, 금지행위 등이 그 예임.
- 상생협력을 촉진시키고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률상의 각종 사업을 전담하여 수행할 기관이 명시될 필요가 있음. 단기적으로는 상생협력 추진본

부가 그 역할을 담당하고, 사업의 추진 규모에 따라 조직의 확대 및 승격을 고려해야 할 것임.

- 또한 농업과 기업 간의 거래의 공정화를 추진하기 위해 일정한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와 조정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6.2.4.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잠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과 기업 간 상생협력 관계를 창출·증진시켜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 활동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게 함으로써 농업과 기업의 공동의 이익을 증진시켜 농업과 농촌의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2. ‘기업’이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 가. 농업 이외의 부문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영리회사
 - 나.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 다. “산학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3.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말한다.
5.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업법인을 말한다.
6. ‘농업인 등’이란 제3호, 제4호, 제5호의 농업인, 생산자단체, 농업경영에 종사하는 농업법인을 말한다.
7. ‘식품사업자’란 “식품산업진흥법” 제2조에 따른 식품사업자를 말한다.

8. ‘농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산물을 말한다.
9. ‘상생협력’이란 다음 각 호의 주체 상호간에 기술, 인력, 자금, 구매, 판로 등의 부문에서 서로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하는 공동의 활동을 말한다.
- 가. 농업인과 농업 경영 이외의 사업을 하는 농업법인 사이
- 나. 농업인과 농업법인 아닌 식품사업자 사이
- 다. 농업법인과 식품사업자 사이
- 라. 농업인 등과 기업 사이
- 마. 생산자단체와 식품사업자 또는 기업 사이
- 바.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체 사이
10. 기업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상생협력’ 활동을 수행한다
- 가. 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판매에 기술과 자금을 투자하거나 계약 당사자로 참여(이하 ‘참여기업’이라 한다)
- 나. 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판매에 대한 자문 (이하 ‘협력기업’이라 한다)
11. ‘상생협력지수’란 농업과 기업 간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생협력의 수준을 평가하여 계량화한 지표를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 촉진시책의 기본방향)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의 자율성 보장
2. 농업과 기업의 상호이익에 서로 도움이 되는 상생협력의 촉진
3.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과 농업 간의 협력에서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역할 강화

제2장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추진

제5조(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 추진 기본계획의 수립)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 추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 촉진시책의 기본방향
 2.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의 연차별 목표
 3. 농업과 기업 간 성과공유 및 기술·인력교류의 촉진에 관한 사항
 4. 상생협력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농업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농업과 기업 상생협력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농업과 기업 상생협력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조(농업과 기업 상생협력 추진 시행계획의 수립)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농업과 기업 상생협력 추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지역 실정에 맞게 제1항의 시행계획을 매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시행계획 추진실적과 시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3년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다음 기의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제안하여야 한다.
-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⑤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그 추진실적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농업과 기업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시책 추진

제7조(상생협력 성과의 공평한 배분)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등과 참여기업 간에 합의한 공동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참여기업이 지원하고 그 성과를 농업인등과 참여기업이 공유하는 계약모델(이하 ‘성과공유제’라 한다)의 확산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성과공유제의 확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성과공유제 확산 추진기구(이하 ‘추진기구’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③ 추진기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성과공유제에 대한 연구·조사
 2. 국내외 우수사례의 발굴·확산
 3. 성과공유제를 도입하는 참여기업에 대한 교육·컨설팅
 4. 그 밖에 성과공유제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추진기구가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성과공유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입찰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제8조(농업과 기업 간의 기술협력 촉진)

- ① 정부는 농업과 기업 간의 공동 기술개발, 기업의 구매 약정 등 기업의 협력이 수반되는 기술개발 등 기업과 농업 간의 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참여기업 또는 협력기업의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실시하지 아니하는 기업의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을 농업인

등에게 이전하도록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술거래기관에 예산, “산학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산학협력 촉진·지원기관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농업에 대한 기업의 자본 참여 등)

- ① 정부는 농업회사법인 및 식품사업자의 경영 자율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업이 농업회사법인 및 식품사업자에 자본 참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 ② 정부는 농업인등 및 식품사업자의 기술개발, 설비투자 등 경영지원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자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지원)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자문하거나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농산물의 계약생산·계약공급에 관한 사항
 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의 식품의 국내외 판로지원
 3. 농업인등의 경영·마케팅 및 법률에 대한 자문
 4. 기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의 사업에 대한 지원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 협약체결의 지원)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등과 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협력 및 참여의 내용과 방법, 추진체계, 홍보 등이 포함된 협약체결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상생협력 협약체결의 세부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독점규제 및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대한 특례)

- ①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기업이 사전에 공개한 합리적인 기준에 맞추어 농업인등 및 식품사업자(“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제외한다)를 지원하는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제7호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 ②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기업이 사전에 공개한 합리적인 기준에 맞추어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그 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기업집단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3조(농업과 기업 상생협력 실태조사)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하면 농업과 기업 상생협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농업인 등, 식품사업자, 기업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농업과 기업 상생협력지수의 산정·공표)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업과 농업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참여기업 및 협력기업의 상생협력의 수준을 평가하여 계량화한 농업과 기업 상생협력지수(이하 ‘상생협력지수’라 한다)를 산정하여 공표할 수 있다.
- ② 상생협력지수의 산정 방법 및 공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생협력지수를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상생협력추진협의회’가 산정·공표하는 상생협력지수로 대체할 수 있다.

제15조(상생협력 우수기업 선정·지원)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과 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생협력 우수기업 및 상생협력확산에 기여한 자(이하 ‘상생협력우수기업 등’이라 한다)를 선정하고 포상하는 등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 ② 상생협력우수기업등의 선정 방법 및 절차, 상생협력 우수기업 지원시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공공기관의 농업인등에 대한 협력 촉진)

-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매년 농업인등의 지원계획과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제출한 농업인등의 지원계획과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결과를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시 반영할 수 있다.
- ④ 공공기관은 농업과 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담 지원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7조(농식품 상생협력 추진본부의 설립)

- ① 정부는 농업과 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식품 상생협력 추진본부(이하 ‘추진본부’라 한다)을 설립한다.
- ② 추진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이 법에 따른 농업과 기업 간의 상생협력에 관한 기획 및 집행
 2. 농업과 기업 간 협력사업의 개발 및 운영 지원
 3. 제9조에 따른 기술협력 촉진사업의 관리·운영 및 평가 지원
 4. 제19조부터 제23조에 따른 농업과 기업 간 거래의 공정화 지원
 5. 농업인등과 참여기업 간 분쟁의 자율적 조정 지원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위탁하는 사업
- ③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상생협력추진협의회 설치)

- ① 농업과 기업 간 상생협력과 관련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협력을 도출하고 상생협력의 문화를 조성 및 확산하기 위하여 재단에 상생협력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1. 상생협력지수의 산정 및 공표에 관한 사항
 2.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을 위해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의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상생협력 추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협의회는 제2항의 업무를 정부기관이나 추진본부 등으로부터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수행한다.
- ④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로 정한다.

제4장 농업과 기업 간 거래의 공정화

제19조(표준계약서의 사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업이 농업인등과 거래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의 내용, 대금의 금액, 대금의 지급 방법, 지급기일, 검사 방법, 대금 등 계약내용 변경 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거래유형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개발하여 농업과 기업 간의 거래에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표준계약서에 포함될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납품대금의 지급 등)

- ① 농업인등에 대해 기업이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기일은 그 납품에 대한 검사 여부에 관계없이 물품 등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의 최단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 ② 납품대금의 지급기일을 약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물품 등의 수령일을 그 대금의 지급기일로 정한 것으로 보며, 제1항을 위반하여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에는 물품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그 대금의 지급기일로 정한 것으로 본다.

- ③ 기업이 납품대금을 60일이 지난 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 ④ 기업이 납품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거나 어음대체결제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할인료를 농업인등에 지급하여야 한다.
- ⑤ 기업이 물품의 하자 등을 이유로 농업인등에 적법한 항변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에 대해 대항할 수 있다.

제21조(검사의 합리화)

- ① 기업이 검사시설의 개선 및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의 자질 향상을 도모하고 객관적이며 타당성 있는 검사기준을 정하여 농업인등이 납품한 물품 등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검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기업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불합격한 물품 등에 대하여는 그 불합격 사유를 즉시 문서로 농업인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품질보장 등)

- ① 농업인등은 시설을 개선하고 기술을 향상시켜 기업으로부터 생산을 위탁받은 식품의 품질을 개선하고 규격에 맞는 제품을 납품기일 이내에 납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농업인등은 식품을 표준화하고 합리적인 원가계산제도에 따라 적정한 가격 결정과 품질관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준수사항)

- ① 기업은 농업인등에 식품의 생산을 위탁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농업인들이 책임질 사유가 없는데도 식품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대금을 깎는 행위
 2. 대금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3. 농업인들이 납품하는 식품과 같은 종류이거나 유사한 식품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대금을 정하는 행위
 4. 식품의 생산을 위탁한 후 경제상황 변동 등의 이유로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받은 기업이 같은 이유로 농업인등에 추가비용이 드는데도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식품대금을 증액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6. 품질의 유지 또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업이 지정하는 물품 등을 강제로 구매하게 하는 행위
 6. 대금을 지급할 때 그 대금의 지급기일까지 금융기관으로부터 할인을 받기 어려운 어음을 지급하는 행위
 7. 식품에 흠이 없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물량을 통상적으로 발주하는 수량보다 현저히 감소시키거나 발주를 중단하는 행위
 8. 대금을 지급하는 대신 기업이 제조하는 제품을 받을 것을 요구하는 행위
 9. 기업이 수출용으로 농업인등에 발주한 식품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내국신용장 개설을 기피하는 행위
 10. 식품의 생산을 의뢰한 후 생산된 식품에 대한 발주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하는 행위
 11. 농업인들이 납품한 물품에 대한 검사를 할 때 객관적 타당성이 결여된 검사기준을 정하는 행위
 12. 기업이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해당 농업인등이 그 사실을 관계 기관에 고지하였다는 이유로 거래 물량을 줄이거나 거래의 정지 또는 그 밖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 ② 농업인등은 기업으로부터 식품의 생산을 위탁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업으로부터 위탁받은 식품의 품질·성능 또는 납품기일에 관한 약정을 위반하는 행위

2. 납품할 식품의 가격을 부당하게 인상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
3. 그 밖에 거래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제24조(농식품 상생협력 추진본부에 대한 조치신청 등)

- ① 농업인등은 기업이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 또는 제22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제17조에 따라 추진본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추진본부는 제1항의 요구를 받으면 우선적으로 그 내용을 검토하여 당사자 간의 분쟁을 조정에 회부하거나 법률 위반이 있을 경우 해당 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제25조(농업과 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 개선)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과 기업 간의 거래 과정에서 기업이 제18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을 이행하고 있는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기업에 개선을 요구하고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현금결제 확대 등 결제조건이 양호하고 공정한 거래 관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평가된 기업에 대하여는 정부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포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6조(분쟁의 조정)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업과 농업인등 간에 분쟁이 생겼을 때에는 기업·농업인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식품 상생협력 추진본부에 분쟁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19조에 따른 약정서 및 물품 수령증에 관한 사항
 2. 제20조에 따른 납품대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
 3. 제21조에 따른 물품 등의 검사에 관한 사항

4. 제23조에 따른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에 관한 사항

(제1안)

- ② 농식품 상생협력 추진본부는 양 당사자의 조정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농식품 상생협력 추진본부가 한 권고에 대해 즉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양 당사자가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간주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 권고의 절차, 즉시 이의의 기간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안)

- ② 농식품 상생협력 추진본부는 제1항에 따른 조정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검토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기업·농업인등에 그 시정을 권고하거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 ③ 농식품 상생협력 추진본부는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기업·농업인등이 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그 명칭 및 요지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에 따른 검토 및 시정권고나 시정명령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

제27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식품 상생협력 추진본부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제28조(서류의 비치)

- ① 기업, 농업인등은 농업과 기업 간의 거래에 관한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서류의 범위 및 비치기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자료의 제출 등)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 기업 또는 농업인등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사업장 및 공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시설 및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 제19조부터 제23조에 따른 거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경우
 2. 그 밖에 거래의 공정화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농식품 상생협력 추진본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 일시, 조사 목적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조사하여야 하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그 공무원의 성명, 출입시간, 출입 목적 등을 적은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6장 벌칙

제30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6조제3항 본문에 따른 공표 후 1개월이 지날 때까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3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

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에 관해 제1안과 제2안이 있는데, 그 중 제1안에 따를 때 벌칙 규정(제30조, 제31조)을 두지 않고 제2안에 따를 때 벌칙규정(제30조, 제31조)을 둠)

제32조(과태료)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8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그 서류에 거짓 사항을 적은 자
 2. 제29조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6.3. 개별 법률을 개정하는 방법

6.3.1. 기본 방침

- 개별 법률을 개정하는 경우에도 가급적 산발적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의 대상인 농업은 식품산업이 아닌 농업경영체도 포함됨. 이 때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률 중 개정(조문 신설)대상 법률로 검토할 수 있는 법률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식품산업진흥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등임. 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은 농업 및 식품산업 육성의 방향을 정하는 기본법이기 때문에, 여기에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이 포함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오히려 그 하위 법률격인 “식품산업진흥법”이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률만을 대상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 제도 중 일반적인 것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주 대상으로 해서 개정하도록 함.
- 기업의 분야별 상생협력 촉진 시책은 “식품산업진흥법”에 포함시키도록 함.
- 농업과 기업 상생펀드에 관한 내용은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조문을 신설함.
- 기업 파트에서 본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방안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관

련 규정을 신설함.

- 이 경우 위 제1안의 독립법률 제정안에서 제1장, 제2장을 제외함. 제3장 이하의 규정이 포함됨.
- 규정을 둔 이유는 제1안과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함.

6.3.2. 개별 법률에 포함될 내용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포함될 내용

- 농식품 상생협력 협약제도
-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지수의 산정과 공개
-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지수 우수기업의 선정과 지원
- 농업·기업 상생협력재단의 설립과 임무

[개정안 가안]

제6장의2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의 촉진을 위한 특례

제27조의3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 협약체결의 지원)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 농업경영을 수행하는 농업법인, 생산자단체(이하 농업인 등이라 한다)과 농업 이외의 영역에서 영리목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자(이하 기업이라 한다) 간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협력 및 참여의 내용과 방법, 추진체계, 홍보 등이 포함된 협약체결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상생협력 협약체결의 세부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의4 (농업에 대한 기업의 자본 참여 등)

- ① 정부는 농업회사법인 및 식품사업자의 경영 자율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업이 농업회사법인 및 식품사업자에 자본 참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 ② 정부는 농업인등 및 식품사업자의 기술개발, 설비투자 등 경영지원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자지원을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의5 (농업과 기업 상생협력 실태조사)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하면 농업과 기업 상생협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농업인등, 식품사업자, 기업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27조의6 (농업과 기업 상생협력지수의 산정·공표)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업과 농업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참여기업 및 협력기업의 상생협력의 수준을 평가하여 계량화한 농업과 기업 상생협력지수(이하 ‘상생협력지수’라 한다)를 산정하여 공표할 수 있다.

- ② 상생협력지수의 산정 방법 및 공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생협력지수를 제27조의9제2항제1호에 따라 ‘상생협력추진협의회’가 산정·공표하는 상생협력지수로 대체할 수 있다.

제27조의7 (상생협력 우수기업 선정·지원)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과 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생협력 우수기업 및 상생협력확산에 기여한 자(이하 ‘상생협력우수기업 등’이라 한다)를 선정하고 포상하는 등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 ② 상생협력우수기업등의 선정 방법 및 절차, 상생협력 우수기업 지원시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7의8 (농식품 상생협력 추진본부의 설립)

- ① 정부는 농업과 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식품 상생협력 추진본부(이하 ‘추진본부’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② 추진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2. 이 법에 따른 농업과 기업 간의 상생협력에 관한 기획 및 집행
 2. 농업과 기업 간 협력사업의 개발 및 운영 지원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위탁하는 사업
- ③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본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의9 (상생협력추진협의회의 설치)

- ① 농업과 기업 간 상생협력과 관련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협력을 도출하고 상생협력의 문화를 조성 및 확산하기 위하여 재단에 상생협력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1. 상생협력지수의 산정 및 공표에 관한 사항
2.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을 위해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의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상생협력 추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협의회는 제2항의 업무를 정부기관이나 농식품 상생협력 추진본부 등으로부터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수행한다.
- ④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로 정한다.

□ “식품산업진흥법”에 포함될 내용

- 성과공유제
-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의 세부 정책의 실시
- 농업과 기업 간의 표준계약서 사용의 권장
- 농업과 기업 간의 거래의 공정화를 위한 규제(금지행위 등)
- 금지행위 위반의 감시 및 제재

[개정안 가안]

제4장의2 식품산업의 진흥과 공정거래에 관한 특례

제30조의2 (상생협력 성과의 공평한 배분)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경영을 하는 농업경영체와 식품사업자 간, 농업경영체 또는 식품사업자와 농업 이외의 영역에서 영리목적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이하 기업이라 한다) 간에 합의한 공동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기업이 지원하고 그 성과를 농업경영체, 식품사업자, 기업이 공유하는 계약모델(이하 ‘성과공유제’라 한다)의 확산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성과공유제의 확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성과공유제 확산 추진기구(이하 ‘추진기구’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추진기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성과공유제에 대한 연구·조사
2. 국내외 우수사례의 발굴·확산
3. 성과공유제를 도입하는 참여기업에 대한 교육·컨설팅
4. 그 밖에 성과공유제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추진본부가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성과공유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입찰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제30조의3 (농업과 기업 간의 기술협력 촉진)

① 정부는 농업과 기업 간의 공동 기술개발, 기업의 구매 약정 등 기업의 협력이 수반되는 기술개발 등 기업과 농업 간의 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참여기업 또는 협력기업의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실시하지 아니하는 기업의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을 농업인등에게 이전하도록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술거래기관에 예산, “산학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산학협력 촉진·지원기관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0조의4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자문하거나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농산물의 계약생산·계약공급에 관한 사항
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의 식품의 국내외 판로지원
3. 농업인등의 경영·마케팅 및 법률에 대한 자문
4. 기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의 사업에 대한 지원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의5 (표준계약서의 사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업이 농업인등과 거래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의 내용, 대금의 금액, 대금의 지급 방법, 지급기일, 검사 방법, 대금 변경 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거래유형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개발하여 농업과 기업 간의 거래에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표준계약서에 포함될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의6 (납품대금의 지급 등)

- ① 농업인등에 대해 기업이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기일은 그 납품에 대한 검사 여부에 관계없이 물품 등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의 최단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 ② 납품대금의 지급기일을 약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물품 등의 수령일을 그 대금의 지급기일로 정한 것으로 보며, 제1항을 위반하여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에는 물품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그 대금의 지급기일로 정한 것으로 본다.
- ③ 기업이 납품대금을 60일이 지난 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 ④ 기업이 납품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거나 어음대체결제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할인료를 농업인등에 지급하여야 한다.
- ⑤ 기업이 물품의 하자 등을 이유로 농업인등에 적법한 항변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에 대해 대항할 수 있다.

제30조의7 (검사의 합리화)

- ① 기업이 검사시설의 개선 및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의 자질 향상을 도모하고 객관

적이며 타당성 있는 검사기준을 정하여 농업인들이 납품한 물품 등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검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기업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불합격한 물품 등에 대하여는 그 불합격 사유를 즉시 문서로 농업인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0조의8 (품질보장 등)

- ① 농업경영체 또는 식품사업자는 시설을 개선하고 기술을 향상시켜 기업으로부터 생산을 위탁받은 식품의 품질을 개선하고 규격에 맞는 제품을 납품기일 이내에 납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농업경영체 또는 식품사업자는 식품을 표준화하고 합리적인 원가계산제도에 따라 적절한 가격 결정과 품질관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0조의9 (준수사항)

- ① 기업은 농업경영체 또는 식품사업자에 식품의 생산을 위탁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농업경영체 또는 식품사업자가 책임질 사유가 없는데도 식품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대금을 깎는 행위
 2. 대금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3. 농업경영체 또는 식품사업자가 납품하는 식품과 같은 종류이거나 유사한 식품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대금을 정하는 행위
 4. 식품의 생산을 위탁한 후 경제상황 변동 등의 이유로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받은 기업이 같은 이유로 농업경영체 또는 식품사업자에 추가비용이 드는데도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식품대금을 증액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6. 품질의 유지 또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업이 지정하는 물품 등을 강제로 구매하게 하는 행위
 6. 대금을 지급할 때 그 대금의 지급기일까지 금융기관으로부터 할인을 받기 어려운 어음을 지급하는 행위

7. 식품에 흠이 없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물량을 통상적으로 발주하는 수량보다 현저히 감소시키거나 발주를 중단하는 행위
 8. 대금을 지급하는 대신 기업이 제조하는 제품을 받을 것을 요구하는 행위
 9. 기업이 수출용으로 농업경영체 또는 식품사업자에 발주한 식품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내국신용장 개설을 기피하는 행위
 10. 식품의 생산을 의뢰한 후 생산된 식품에 대한 발주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하는 행위
 11. 농업경영체 또는 식품사업자가 납품한 물품에 대한 검사를 할 때 객관적 타당성이 결여된 검사기준을 정하는 행위
 12. 기업이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해당 농업경영체 또는 식품사업자가 그 사실을 관계 기관에 고지하였다는 이유로 거래 물량을 줄이거나 거래의 정지 또는 그 밖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 ② 농업경영체 또는 식품사업자는 기업으로부터 식품의 생산을 위탁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업으로부터 위탁받은 식품의 품질·성능 또는 납품기일에 관한 약정을 위반하는 행위
 2. 납품할 식품의 가격을 부당하게 인상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
 3. 그 밖에 거래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제30조의10 (농식품 상생협력 추진본부에 대한 조치신청 등)

- ① 농업경영체 또는 식품사업자는 기업이 제30조의5부터 제30조의8까지의 규정 또는 제30조의9를 위반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의8의 농식품 상생협력 추진본부(이하 ‘추진본부’라 한다)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추진본부는 제1항의 요구를 받으면 우선적으로 그 내용을 검토하여 당사자 간의 분쟁을 조정에 회부하거나 법률 위반이 있을 경우 해당 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제30조의11 (농업과 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 개선)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과 기업 간의 거래 과정에서 기업이 제30조의5부터 제30조의9까지의 규정을 이행하고 있는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기업에 개선을 요구하고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현금결제 확대 등 결제조건이 양호하고 공정한 거래 관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평가된 기업에 대하여는 정부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포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0조의12 (분쟁의 조정)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업과 농업인등 간에 분쟁이 생겼을 때에는 기업·농업인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진본부에 분쟁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19조에 따른 약정서 및 물품 수령증에 관한 사항
 2. 제20조에 따른 납품대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
 3. 제21조에 따른 물품 등의 검사에 관한 사항
 4. 제23조에 따른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에 관한 사항

(제1안)

- ② 추진본부는 양 당사자의 조정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추진본부가 한 권고에 대해 즉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양 당사자가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간주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 권고의 절차, 즉시 이의의 기간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안)

- ② 추진본부는 제1항에 따른 조정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검토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기업·농업인등에 그 시정을 권고하거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 ③ 추진본부는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기업·농업인들이 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그 명칭 및 요지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에 따른 검토 및 시정권고나 시정명령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포함될 내용

-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 펀드의 운용

[개정안 제안]

제4조 (국가의 책무)

- ① 국가는 농림수산식품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농업회사법인 및 식품사업자의 경영 자율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업이 농업회사법인 및 식품사업자에 자본 참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8조 ①

5의1.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투자조합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포함될 내용

- 농업과 기업 상생지수 우수기업의 특례

[개정안 제안]

제15조(대·중소기업 상생협력지수의 산정·공표)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상생협력지수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의6에 따른 농업과 기업 상생협력지수로 대체할 수 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포함될 내용

○ 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 관련 규정

[개정안 제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 ⑦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기업이 사전에 공개한 합리적인 기준에 맞추어 농업경영체 및 식품사업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제외한다)를 지원하는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안 제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 ⑥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기업이 사전에 공개한 합리적인 기준에 맞추어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그 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기업집단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 7 장

요약 및 결론

1. 연구결과의 요약

- 전통적으로 시장 경제 하에서의 기업의 목적은 이윤 추구라고 이해되어 왔으며, 그 과정에서 사회에 대한 책임을 고용이나 납세 등의 방법을 통해 달성할 수 있다고 보았음. 오늘날 기업의 영향력이 확대되기 시작하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었고, 범위 역시 과거의 자선사업이나 사회공헌 등에서 나아가 윤리적,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책임을 포괄하는 의미로 확장됨.
- 우리나라의 상생협력은 경제양극화의 해소를 주요 골자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주로 논의되어 옴. 2006년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발효되었으며, 최근 들어서는 대기업의 상생협력 참여에 있어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음.
- 국내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은 2000년대 초반 ‘1사 1촌 운동’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2014년부터는 정부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됨. 하지만 그 동안의 농림축산식품부 주도 사업 추진은 농업-기업간 상생협력 분위

기 조성 및 협력 사례 창출에 집중하였고, 실질적인 성과 창출과 확산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본 연구는 농업과 기업의 협력이 지속되기 위해서 소비자 관점에서의 기업 이미지 제고 측면뿐만 아니라 기업이 사회에 기여하는 경제적 파급효과 측면도 고려한 각종 인센티브 마련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농업과 식품 기업 간 상생협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률 및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제2장에서는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 추진배경과 필요성에 대해 제시함.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은 농업의 비중 축소와 식량안보 위기, 식품산업과의 연계성 약화, 소비자의 국산품 선호 경향에 대한 기업의 대응 필요성, 타 산업에 비해 미약한 상생협력 환경 조성 등을 배경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됨.
- 상생협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농업측면과 기업측면으로 구분하여 강조할 수 있음. 농업측면에서는 판매망 확대, 지역브랜드와 전통식품의 전국적 확산, 농사소득의 안정화, 농업의 경쟁력 제고 등의 측면에서 상생협력의 필요성을 정리할 수 있으며, 기업측면에서는 불확실성 감소, 거래비용의 감소, 제품 구성의 다양화와 품질 차별화, 상생협력 당사자 간 신뢰제고 등의 부분에서 상생협력이 필요하다고 제시할 수 있음.
- 제3장에서는 상생협력 관련 법률 및 정책 현황에 대해 정리함. 농업과 기업 간 상생협력 관련 법률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주관부처에 따라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음. 농림축산식품부의 경우 “농지법”과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대표적이며, 산업통상자원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이 있음.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관련 추진정책을 부처별로 구분하여 제시함.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초과이익공유제’, ‘성과공유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청에서는 상생협력 지원, 동반성장 네트워크 확대 구축, 공정거래 제도 활용도 제고, 지역특화발전 특구 등에 집중하고 있음.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관행 근절, 중소기업에 대한 부당한 차별 배제 및 시정,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 실적 평가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동반성장위원회에서는 동반성장지수 산정 및 평가, 중소기업 적합업종 등을 시행하고 있음.
- 2014년 농업미래성장산업 대토론회(11.19.)와 경제부처 정책점검회의(10.6)를 계기로 농업계와 기업 간의 상생협력 기반 구축을 위해 다양한 협력 부문에서 MOU가 체결됨. 또한 대한상공회의소와 농림축산식품부, 농협중앙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공동으로 ‘농식품 상생협력 추진본부’를 설치하여 농업계와 기업간의 상생협력 추진 기본방안을 마련하였으며, 농업계와 기업체,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상생협력 추진 사례를 조사하고 지역별로 설명회를 개최함. 2015년 9월에는 상생협력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그 동안의 상생협력 추진 성과에 대해 조명하였으며, 향후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와 6차산업화지원센터, 중소기업지원센터 등과 연계한 포괄적인 상생협력 추진을 계획 중에 있음.
- 제4장에서는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 추진 실태와 성과 평가에 대해 제시함.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을 광의의 개념에서 ① 기업의 농촌사회 기여(CSR), ② 기업의 농업법인 설립, ③ 농업에서 융복합산업화: 6차산업화 포함, ④ 농업과 기업의 협력활동으로 구분하고, 협의의 개념에서는 ④ 농산물 생산 및 판매과정에서의 기업과의 협력활동과 농업과 기업의 공동투자 사례를 농업과 기업 간 협력활동으로 구분함.

- 상생협력 활동 분야는 생산(가공/외식)분야, 유통분야, 수출분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상생협력 내용은 사회적 책임활동, 원료 구매, 농자재 지원, 판로 및 마케팅(교육, 홍보 등) 지원, 제품/기술 개발, 자본 투자로 나눌 수 있음. 상생협력 분야와 협력 내용을 기준으로 유형을 구분한다면 ① 사회공헌형, ② 단순계약 원료구매형, ③ 농자재 지원 원료구매형, ④ 국내 판로지원형, ⑤ 수출협력형, ⑥ 기술제휴형, ⑦ 공동출자형 등 7가지 유형으로 구분 가능함.
- 상생협력의 농업 부문 지원대상으로는 법인, 생산자단체/조합, 지방자치단체 공사 등을 설정하였으며, 기업부문 지원대상은 규모에 제한을 두지 않음. 상생협력 참여 주체는 농업-기업, 농업-기업-연구기관(대학, 연구소 등), 농업-기업-지방자치단체(중앙정부), 농업-기업-연구기관-지방자치단체 등의 형태로 구분할 수 있음.
- 기업체와 농가를 대상으로 상생협력 현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 상생협력 참여 주체의 형태는 농식품 구매가 80% 이상으로 가장 많았고(중복응답 허용), 사업적 필요성에 의해 참여한다는 계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됨. 법인의 계약재배현황을 살펴본 결과, 단순 구매가 40.5%, 상세계약이 31.0%, 단순계약이 28.5%로 나타남. 농가의 계약서 작성은 작성한다는 응답이 74.8%로 나타났으나, 기상환경이나 시장가격 등의 상황변화에 의한 계약내용 변경 조항에 대해서는 계약서 상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과반 수 이상인 54.9%로 조사됨.
- 상생협력 성과를 기업과 농업의 관계측면, 기업측면, 농업측면, 소비자측면, 공정한 관계측면, 국가경제발전 측면 등에서 조사함. 기업과 농업과의 관계측면에서는 신뢰구축이, 기업측면에서는 이미지 제고 및 품질향상이, 농업측면에서는 안정적인 판로 확보가, 소비자 측면에서는 소비자신뢰 획득이 가장 효과가 클 것으로 조사됨. 공정한 관계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농가조사 결과 상생협력이 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응답이 많았

- 고, 국가경제발전 효과에 대해서는 기업과 법인, 농가 조사 결과 모두 긍정적으로 도출됨.
- 상생협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기업과 법인, 농가 모두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필요한 세부 분야로는 구매 및 계약재배가 가장 필요한 분야로 조사됨. 상생협력 추진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정부가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상생협력 추진에 필요한 정부 정책으로는 기업지원제도 확대, 공정한 거래 조건 조성, 기업과 농업의 협력 공유 제도 운영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제5장에서는 미국과 일본, 유럽의 국가별 상생협력 법률 및 제도현황에 대해 서술함. 미국에서는 기업의 경제적 이익 추구 뿐 아니라 사회적 문제 해결에 대한 요구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2011년 B-Corp법안과 FPC법안을 제정함. B-Corp법안은 경영진의 의사결정 범위를 협력업체, 지역사회, 환경까지 확장하여 사회 이슈에 대해서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하는 목적에서 제정됨. B-Corp의 활동 결과는 ‘베네핏 보고서(Benefit Report)’를 발행함으로써 제3의 기관으로부터 평가와 인증을 받도록 함. FPC법안은 비영리 목적을 가진 영리 법인을 허용하여 회사의 영리적 목적 이외에 공익 내지 사회적 목적 사업영역을 명시하도록 함.
 - 미국의 농업과 기업간 상생협력 사례로는 ‘General Mills’, ‘코카콜라’ 등의 경우가 대표적임. 식료품 제조회사인 General Mills는 2010년부터 소농민들의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지역 소싱 정책을 도입하여 2015년까지 팜오일의 100%를 지역 소싱을 통해 공급하고 있으며, 원료의 지속가능한 소싱을 보증하고 소농민들의 소득 증대를 지원하기 위해 원료의 원천직접(origin-direct) 투자에 초점을 맞춘 총체적 가치창출 접근법을 통한 농업지원을 펼치고 있음. General Mills의 사례는 사회공헌형과 원료구매형의 중

간 형태로 분류 가능함. 코카콜라의 경우 음료 공급 가치사슬에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 상생을 추구했는데, 구체적으로는 농가에 시설개선, 교육 및 시장 정보를 제공하는 등 여러 활동을 시행하였으며, 일자리, 소득 증대, 소득의 안정성, 전문기술훈련, 교육과 보건위생 프로그램 등 복합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함. 코카콜라는 농촌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회공헌형(CSR)의 형태로 볼 수 있음.

- 일본에서는 2000년 초반까지 일반법인의 경우 농지를 직접 취득 또는 임대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어 기업의 농업참여는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이후 일본 내 기업의 농업 참여에 대한 규제는 각종 제도들을 바탕으로 완화의 흐름을 보이고 있음. 2003년 ‘구조개혁특구제도’를 통해서 농업특구지역에 일반 주식회사의 농지임차방식의 영농을 허용한 것에서 시작하여, 2005년 9월 ‘농업경영기반강화촉진법’을 개정하여 임차방식에 의한 농업진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특정법인임대제도’가 도입하였고, 2009년에는 기업의 임차경영을 완전히 허용하는 농지법 개정에 이르렀음.
- 일본의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 제도로는 2008년 제정된 “중소기업자와 농림어업자와의 연계에 의한 사업활동의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농상공연계사업’이 대표적임. 이 사업에 의해 새로운 사업 활동을 시작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이 국가의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정부계열의 금융기관에 의해 저리의 융자 혜택을 보는 등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짐.
- 노지채소는 기상조건에 따라 작황변동이 심하고, 또한 보존성이 약한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공급량의 변동에 의한 가격이 대폭으로 변화하는 경향이 있다는 문제의식 하에 일본에서는 채소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고 계약거래의 안전장치로 ‘계약채소 안정공급사업’을 도입함. 이 사업은 가격이나 수량 변동에 기인한 계약 불이행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응하여 계약이행을 지원하는 제도로 이해할 수 있음.

- 일본의 상생협력 사례는 식품제조업체의 원료조달, 대형유통업체의 농업참여, 건설업의 농업참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남. 코지마농업생산법인과 카고메는 식품제조업체의 원료조달 형태의 상생협력 사례임. 코지마농업생산법인은 고구마 육묘사업, 영농자재 공급, 태풍 등 자연재해 시 손실보전 등을 통하여 농가의 생산안정과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지역농업 유지에 기여함. 카고메는 대규모 채소 가공업체의 농업생산 참여모델로서 직영방식, 자회사방식, 계약거래 등 세 가지 방식으로 운영됨.
- 세븐팜 토마시토는 대형유통업체의 농업참여 사례임. 농업법인인 세븐팜 토마시토는 자사 슈퍼 등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퇴비공장을 설립하고, 생산한 퇴비를 농가에 공급하는 식품자원의 순환형 모델임. 와타미 팜은 외식업체의 농업참여 사례로서, 계약농가와 계약거래를 포함하여, 직접 생산과 가공, 판매를 통합함으로써 생산면에서 리스크가 발생해도 가공·유통으로 흡수하는 등 위험 관리를 실시하고 있음. 슈퍼마켓의 농업참여 사례로는 슈퍼마켓 니시야마가 대표적임. 슈퍼마켓 니시야마는 쌀과 채소 등을 생산하되, 지역에서 생산한 것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것을 추구함. 또한, 식품제조과정 상의 폐기물을 수거하여 퇴비화 하는 등 식품자원 재활용도 강조하고 있음. 건설업에서도 농업부문에 참여하고 있음. (유)다나카건설공업(田中建材工業)은 건설업의 자갈채취용으로 저가의 농지를 구입하여, 본사의 여력으로 토지개량, 시설의 설계와 정비, 사료생산 등으로 확장함으로써 대폭적인 생산비 절감을 실현함.
- 유럽의 정책당국은 자발적 정책 유도외, 필요에 따라서는 강제규율을 통해 기업들을 적절히 지원하고 있음. 영국의 경우 정부 주도하에 **International Institute of Business and Human Rights**의 설립 기금을 지원하는 등 국제적 **CRS** 정책을 마련함. 또한, ‘영국 연금법(**United Kingdom Pension Act**)’을 개정하여 연금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윤리적, 사회적, 환경적 측면을 어느 정도 고려했는지에 대한 정보개시를 의무화하였으며, 사회적 기업, 즉 공동

체의 이익을 위한 회사(Community Interest Company, CIC)를 위한 특별한 법제를 도입함.

- 독일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확대를 위한 국가차원의 CSR 전략 'CSR Action Plan'을 도입하여 ① 기업과 공공행정기관의 사회적 책임 풍토 토착화, ② CSR 관련 중소기업의 참여확대, ③ CSR 활동의 가시화 및 신뢰성 고취를 목표로 운영 중임. 또한, 독일에서는 기업에게 공공입찰 및 구매와 관련하여 CSR 활동을 적극 펼쳐나갈 것을 유도하는 'CSR-Made in Germany' 슬로건을 확대 보급함.
- 스위스의 농업과 기업간 상생협력 사례로는 네슬레와 신젠타의 사례가 대표적임. 사회공헌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 네슬레의 사례는 농업 중에서도 식수, 농촌개발, 영양 등의 분야에 있어서 지원을 집중하며, 이를 통해 네슬레에서도 양질의 생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다고 강조함. 신젠타는 개도국과 지역사회 경제 기여를 위해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속가능한 공급사슬을 통해 전 세계 수천여 개 기업과 공급자들에게 수입을 제공하고 있음.
- 제6장에서는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 제도화 방안에 대해 제시함. 농업과 기업은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공동노력이 전제되어야 하며, 정부는 기업들이 상호 신뢰 속에서 협력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법률, 추진체계, 협력기반 마련을 중점 추진해야 함.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배정하며, 상생협력 추진본부는 중간지원조직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정·위탁 사업을 추진함. 서울 이외 지역상공회의소에 지역상생협력본부(가칭)을 설치하여 지역별 상생협력 이행 관리, 사례 발굴, 정보 공유 등의 역할을 수행하여 지역단위 협력의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 활성화를 위해 ① 협력 강화, ② 기반조성, ③ 공정

거래 확산의 3개 분야에 있어서 정책과제를 제시함. 협력 강화를 위해서 상생협력 협약의 체계화, 성과공유제 실시, 상생협력 펀드 운영, 동반성장지수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생협력제도 도입이 우선되어야 하며, 기술/자금 지원, 판로/마케팅 지원, 컨설팅/교육 확대 등의 지원사업이 운영되어야 함. 또한, 대기업의 농업분야 투자 관련 규제 개선, 특구지역 대기업 진입 규제 완화 등의 규제 개선이 필요함. 기반조성 방안으로는 농업경영체 역량강화, 상생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사회분위기 조성이 필요한 것으로 정리하였으며, 표준계약서 보급 추진,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 등 공정거래 확산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 제도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법률의 제·개정이 검토되어야 함. 법률개선안은 독립법률 제정 방안과 개별 법률에 관련 규정을 추가하는 가정안의 두 가지 대안을 제시함. 제1안은 가칭 ‘농업과 기업 상생협력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이라는 독립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며, 제2안은 식품산업진흥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기타 개별 법률에 상생 관련 규정을 추가하는 방안임.
- 특별법 제정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참조가능한 대체모델로 하여 단일한 법률에 상생협력과 관련된 제반 규정을 포함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며, ① 농업과 기업의 협력 강화, ② 농업과 기업 간의 공정거래의 확산, ③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을 위한 기반조성을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 활성화의 방향으로 설정함.
- 개별 법률을 개정하는 방법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식품산업진흥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 대상 법률로 검토함.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 제도 중 일반적인 것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주 대상으로 해서 개정하였으며, 기업의 분야별 상생협력 촉진 시책은 식품산

업진흥법에, 농업과 기업 상생펀드에 관한 내용은 농림수산물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기업 파트에서 본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 촉
진을 위한 방안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관련 규정을 신설 또는 개정함.

2. 결론 및 정책 시사점

- 농촌지역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심화되고 FTA 등 시장개방으로 농업의 위
기감이 고조됨에 따라 농업의 타 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협업모델 구축의 필
요성이 확대됨.
-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은 이전에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육성사업이나 농
촌사회공헌인증제 등을 통해 실시되었지만, 중소기업에 제한적으로 실시되
거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음.
- 2014년부터 농업부문에서는 농업과 기업이 협력하여 공유할 수 있는 가치
를 창출하는 상생협력활동이 정부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됨. 상생협력은
분야와 내용에 따라서 사회공헌형, 단순계약 원료구매형, 농자재지원 원료
구매형, 국내 판로지원형, 수출협력형, 기술제휴형, 공동출자형의 7가지로
유형화 될 수 있음.
- 농업과 기업간 상생협력의 기본 방향은 ① 자발적인 공동노력이 전제되어
야 하며, ②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하고, ③ 공정거래를 바탕으
로, ④ 정부는 협력기반 마련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함.
- 추진체계는 상생협력 추진본부가 사업 운영을 전반적으로 담당하며, 시도별로

지역상생협력본부(가칭)를 설치하고 지역상생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여 ‘6차 산업 활성화 지원 센터’나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유기적 협업관계를 창출함.

-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협력 강화, 협력기반 조성, 공정거래 확산으로 구분하여 제시함. 협력 강화를 위한 세부 추진과제는 상생협력제도 도입, 상생협력 지원사업 운영, 규제 개선임. 협력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농업경영체 역량 강화, 상생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사회 분위기 조성이 추진되어야 함. 공정거래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표준계약서 보급을 추진하며, 불공정거래를 감시를 강화해야 함.
- 새로운 상생협력제도로는 상생협력 협약 체계화, 성과공유제 도입, 상생펀드 운영, 동반성장지수체계를 개선 등이 제안됨. 기술, 자금, 판로/마케팅, 해외시장 개척, 컨설팅/교육 확대, 정부조달사업 우선 구매 등의 전 분야에서 농업과 협력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상생협력을 지원하는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며, 농업부문 경쟁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업의 농업분야 참여 제약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 제도화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의 제·개정을 통해 근거마련이 필요함. 법률개선안은 독립법률을 제정하는 방법과 식품산업진흥법 및 상생법 등 개별 법률에 상생관련 규정을 추가하는 방법이 있음. 독립법안 제정은 법률목표를 분명히 하고 다수 법률에 산재된 규정을 조율하기 쉬운 장점이 있는 반면, 추가적인 특별법 제정에 대해 반론이 제기될 수 있음. 개별 법률 개정안은 유사규정이 여러 법률에 분산 규정되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으나, 다수 법률 개정작업의 어려움이 지적됨.
- 이 연구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이 활성화를 목적으로 법률 및 제도화 틀을 제시하였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둘 수 있음. 이 연구에서는 타 산업 및 외국 사례, 농업분야 유사사례 등을 검토하고 농민, 법인,

기업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제시함으로써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 활성화의 토대를 제시함. 이 연구가 기업과 농업 부문 관련 입법의 제정 및 개정에 활용되고 향후 세부 정책수립과 집행 등에 있어서 참고가 될 것을 기대해 봄.

부 록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의 조문별 취지

조문	취지
<p>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p> <p>이 법은 농업과 기업 간 상생협력 관계를 창출·증진시켜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 활동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게 함으로써 농업과 기업의 공동의 이익을 증진시켜 농업과 농촌의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우리나라의 농업은 소농중심이였기 때문에, 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판매의 각 단계에서 농업·농촌과 기업 간의 관계가 긴밀하게 형성되지 않았음.</p> <p>·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판매의 각 단계에 기업의 참여가 더 적극적으로 요구되며, 그 참여가 상생협력적인 방향이라면, 농업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며, 동시에 기업의 입장에서 새로운 사업영역을 개척하게 될 것임. 즉 공동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음.</p> <p>·즉, 농업과 기업의 관계가 공유가치창출이 가능한 형태로 전개됨으로써 농업과 농촌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음.</p> <p>·이 법은 이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임.</p>
<p>제2조(정의)</p> <p>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p> <p>2. ‘기업’이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p>	<p>·농업은 농작물재배, 축산, 임업 등 1차산업으로 정의함. 1차산업인 농업과 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주된 목표로 하기 위한 것임(1호).</p> <p>·기업은 1차 산업 이외의 부문에서 영리활동을 하는 회사로 정의. 동시에 산학협력단 등이 보유한 기술을 농업에 활용하는 것을 도모하기 위해 이를 나. 다. 목에 별도로 정의함(2호).</p>

<p>가. 농업 이외의 부문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영리회사 나.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연구기관 첨단기술지주회사 다. “산학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p> <p>3.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p> <p>4. ‘생산자단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말한다.</p> <p>5.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업법인을 말한다.</p> <p>6. ‘농업인 등’이란 제3호, 제4호, 제5호의 농업인, 생산자단체, 농업경영에 종사하는 농업법인을 말한다.</p> <p>7. ‘식품사업자’란 “식품산업진흥법” 제2조에 따른 식품사업자를 말한다.</p> <p>8. ‘농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산물을 말한다.</p> <p>9. ‘상생협력’이란 다음 각 호의</p>	<p>·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에 참여하는 농업측의 주체는 농업인, 생산자단체,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법인 등인데, 이를 정의하였음(3호 내지 5호).</p> <p>·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에서 농업측의 주체는 농업인, 생산자단체,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법인으로 정의하되, 이를 총칭할 때에는 ‘농업인 등’으로 함(6호).</p> <p>·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에서 식품사업자는 농업측의 참여자가 되기도 하고, 기업측의 참여자가 되기도 하는 이중성을 가질 것임. 이 때 식품사업자의 정의는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름(7호).</p> <p>·농산물은 농업생산으로부터 나온 1차산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의 정의에 따름(8호).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에서 주안점은 농산물의 생산, 유통, 가공, 판매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정의한 것임.</p> <p>·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에 참여하는 주체가 다양할 수 있음을 밝히는 것이 필요함. 이를 통해 농산물의 생산, 유통, 가공, 판매 등에 참여하는 여러 주체들의 창의적인 상생협력을 촉진하려는 것이 이 법의 목적임을 분명하게 하기 위한 것임. 또한 각 주체들이 상생협력하는 방법도 기술지원이나 기술참여, 인력참여, 자금지원 내지 투자, 구매 및 판매 등 다양하다는</p>
---	--

<p>주체 상호간에 기술, 인력, 자금, 구매, 판로 등의 부문에서 서로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하는 공동의 활동을 말한다.</p> <p>가. 농업인과 농업 경영 이외의 사업을 하는 농업법인 사이</p> <p>나. 농업인과 농업법인 아닌 식품사업자 사이</p> <p>다. 농업법인과 식품사업자 사이</p> <p>라. 농업인 등과 기업 사이</p> <p>마. 생산자단체와 식품사업자 또는 기업 사이</p> <p>바.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체 사이</p> <p>10. 기업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상생협력’ 활동을 수행한다</p> <p>가. 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판매에 기술과 자금을 투자하거나 계약 당사자로 참여(이하 ‘참여기업’이라 한다)</p> <p>나. 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판매에 대한 자문 (이하 ‘협력기업’이라 한다)</p> <p>11. ‘상생협력지수’란 농업과 기업 간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생협력의 수준을 평가하여 계량화한 지표를 말한다.</p>	<p>것을 밝히려는 것임(9호).</p> <p>·상생협력의 한 주체인 기업 측이 상생협력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힘으로써 이하의 법률 규정의 독해에 오해가 없도록 함. 상생협력의 방법은 농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판매에 기술, 자금을 투자하거나 계약의 한 당사자로 참여할 경우에는 참여기업이라 함. 한편 농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판매에 대한 자문(여기에는 계약상의 의무 없이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함)을 수행하는 경우 협력기업이라 함. 가령 O 마트에서 1주일에 한번씩 마트의 빈 공간을 임대하여 농업인 등이 농산물을 직접 판매하게 하거나 중소 식품사업자로 하여금 식품을 판매하게 하는 경우에는 참여기업이 될 것임. 공기업에서 주말에 기업의 빈 공간을 무상으로 빌려주어 주말농산물시장을 개설하게 하는 경우에는 협력기업이라 할 수 있을 것임.</p> <p>·상생협력지수는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방법은 위 10호에서 밝힌 것처럼 참여와 협력이 있음) 지수를 정하여 기업의 노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함. 자율성과 상호이익의 증진(공유가치창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지수를 개발하여, 상생협력을 하는 우수한 기업을 포상하게 하거나 그 명칭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자율성을 신장시킬 수 있을 것임.</p>
---	---

<p>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p>	<p>·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 정책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음. 이 규정은 이런 활동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생협력에 필요한 법률상의 시책 이외의 시책을 수립할 책무가 있음을 명시하려는 것임.</p>
<p>제4조(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 촉진시책의 기본방향)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의 자율성 보장 2. 농업과 기업의 상호이익에 서로 도움이 되는 상생협력의 촉진 3.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과 농업 간의 협력에서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역할 강화 	<p>·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의 원칙을 정한 규정임.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 정책은 농업 및 기업측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하며, 어느 일방의 희생이 아니라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이어야 함을 정한 것임. 향후 수립할 기본계획이나 이에 따른 시책은 이 원칙에 입각해야 함.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역시 상호이익이 되는 방향에서 농업 부문과의 상생협력을 강화해야 하지만, 자율성보다는 선도성에 더 강조점을 두고자 한 것임.</p>
<p>제2장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추진 제5조(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 추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 추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p>	<p>·농업과 기업 간의 공유가치창출을 지향하는 상생협력은 기존에 있는 시장질서(가령 supply chain 등)의 내용을 변경시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장질서를 창출하는 과정도 포함함. 오히려 이 부분이 더 중요할 수도 있음(가령 6차 산업의 창출 등). 따라서 국가가 기본방향을 계획하여 가용 가능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여러 자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p>

<p>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p> <p>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 촉진시책의 기본방향 2.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의 연차별 목표 3. 농업과 기업 간 성과공유 및 기술·인력교류의 촉진에 관한 사항 4. 상생협력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농업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p>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농업과 기업 상생협력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농업과 기업 상생협력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p>	<p>필요함. 따라서 농업 부문의 주무부서인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p> <p>·기본계획의 수립기간은 계획시행 후 성과가 나기까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간격을 두고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정부가 바뀌더라도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3년으로 하였음(이상 제1항).</p> <p>·기본계획에는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여야 함(1호). 또한 상생협력의 연차별 목표를 설정하여 계획의 적절성을 점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함(2호). 농업과 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통해 달성될 성과가 양 측에 모두 이익이 되도록 성과공유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계획이 필요함(3호). 상생협력의 여러 모델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타에 귀감이 되는 모델들은 모두 우수사례로 선정하여 홍보하고 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4호).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선도성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도 계획이 필요함(5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에 일일이 열거하지 않고 주무관청인 농림축산식품부의 재량에 맡기기 위해 6호를 두었음.</p> <p>·농림축산식품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지만, 기본계획에 따른 시책의 수행에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지원이 필요하거나 그 기관의 정책과의 연계가 필요한 경우 등이 있음(가령 중소기업진흥이나 창업 관련한 산업통상부 및</p>
--	---

	중소기업청의 관련 정책과의 연계 등). 동시에 상생협력과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와도 협력과 지원이 필요함. 이를 확보하기 위해 3항을 둔 것임.
<p>제6조(농업과 기업 상생협력 추진 시행계획의 수립)</p> <p>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농업과 기업 상생협력 추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p> <p>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지역 실정에 맞게 제1항의 시행계획을 매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p> <p>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시행계획 추진실적과 시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3년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다음 기의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제안하여야 한다.</p> <p>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⑤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그</p>	<p>·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중앙행정기관의 협의 하에 참여와 협조를 합의한 경우 그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기본계획에 포함될 것임. 이 때 그 기본계획상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참여와 협조하기로 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여기에 해당될 중앙행정기관으로는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위 등이 있을 것임.</p> <p>·시·도지사의 해당 지역에 있는 기업, 관공서, 학교, 공기업 등과 농업 간의 상생협력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임. 기본계획이 농림축산식품부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시·도지사의 재량 하에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임.</p> <p>·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시행계획의 성과가 제대로 보고되어야 다음 회차의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임. 동시에 여러 시·도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의 성과를 상호비교하여 우수한 사례를 알게 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차기의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임(3항). 이 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전</p>

<p>추진실적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국 단위, 전 행정부처의 업무 중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 추진을 위한 업무를 모니터링하고 상호 대화할 수 있는 플랫폼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것임.</p> <p>·시행계획의 세부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함(5항).</p>
<p>제3장 농업과 기업 상생협력 추진을 위한 시책 추진</p> <p>제7조(상생협력 성과의 공평한 배분)</p> <p>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 등과 참여기업 간에 합의한 공동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참여기업이 지원하고 그 성과를 농업인 등과 참여기업이 공유하는 계약모델(이하 ‘성과공유제’라 한다)의 확산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성과공유제의 확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성과공유제 확산 추진기구(이하 ‘추진기구’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p> <p>③ 추진기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성과공유제에 대한 연구·조사 2. 국내외 우수사례의 발굴·확산 3. 성과공유제를 도입하는 참여기 	<p>·제3장은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항시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시책이기 때문에, 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한 것임. 제3장에 규정한 시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또는 제3장에 규정한 것 이외의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2장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도록 하는 것임.</p> <p>·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의 기본모델은 농업과 기업 모두에 이익이 되는 것(공유가치의 창출)임을 분명히 함으로써 농업과 기업 부문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려는 것임. 구체적 모델을 농업과 기업부문에서 자발적으로 창출할 수도 있겠지만, 주무부서인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계약모델을 개발하여 널리 홍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그 근거를 마련하는 규정임(1항).</p> <p>·농업과 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통해 공유가치가 창출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여 확산하기 위해 상생협력 추진본부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함. 상생협력 추진본부는 1) 농림축산식품부의 한 부서에서 직접 수행할 수도 있고, 2) 상생협력재단에 위탁할 수도 있고, 3) 다른 기</p>

<p>업에 대한 교육·컨설팅</p> <p>4. 그 밖에 성과공유제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p> <p>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추진기구가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성과공유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입찰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p>	<p>관에 위탁할 수도 있을 것임. 그 가능성을 열어 두기 위해 제2항을 두었음.</p> <p>·상생협력 추진본부의 주된 임무는 공유가치 창출 모델을 개발하거나 이미 시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상생협력모델을 개발하여 확산하며, 기업의 참여를 권유하는 업무를 수행할 것임. 현재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와 관련된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있음. 이를 명문으로 규정한 것임(3항).</p> <p>·상생협력 추진본부를 농림축산식품부 밖의 별도 기관에 위임할 경우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한 지원을 하게 하고(제4항), 성과공유제 계약 모델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음(5항).</p>
<p>제8조(농업과 기업 간의 기술협력 촉진)</p> <p>① 정부는 농업과 기업 간의 공동 기술개발, 기업의 구매 약정 등 기업의 협력이 수반되는 기술개발 등 기업과 농업 간의 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참여기업 또는 협력기업의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실시하지 아니하는 기업의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을 농업인등에게 이전하도록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의 이</p>	<p>·기업, 공공기관, 산학협력단 등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농업과 결합하는 것은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의 주된 시책 중의 하나임. 따라서 기술로써 농업인 등과 협력하거나 자문하는 상생협력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한 지원가능성을 열어 두고자 한 것임(1항).</p> <p>·공공기관이나 대학이 보유한 기술을 농업에 전수하거나 이전하는 것을 촉진시키기 위해 인센티브가 제공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두었음(2항).</p>

<p>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술거래 기관에 예산, “산학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산학협력 촉진·지원 기관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p>제9조(농업에 대한 기업의 자본 참여 등)</p> <p>① 정부는 농업회사법인 및 식품사업자의 경영 자율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업이 농업회사법인 및 식품사업자에 자본 참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p> <p>② 정부는 농업인등 및 식품사업자의 기술개발, 설비투자 등 경영 지원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자 지원을 할 수 있다.</p>	<p>·농업 부문에 대기업의 자본이 투입되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음. 농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도 있지만, 기업에 의한 농업인 시장의 축소도 우려될 수 있기 때문임. 따라서 대기업 등이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거나 식품사업자로 참여하거나 또는 기존 농업회사법인 및 식품사업자에 자본출자를 통해 참여하는 것을 가로막는 각종의 규제(가령 독점규제법 등)를 완화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하여 예외를 인정하려는 것임(1항).</p> <p>·농업부문 모태자본이 상생협력을 지향하는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 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근거규정을 두고,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세부 규정을 둘 수 있게 함(2항).</p>
<p>제10조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지원)</p> <p>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자문</p>	<p>·제1항의 각호에 있는 것들은 상생협력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임. 농산물의 계약생산, 계약공급은 농업인의 입장에서는 수요 예측이 가능할 수 있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안정적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임. 식품의 국내외</p>

<p>하거나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p> <p>1. 농산물의 계약생산·계약공급에 관한 사항</p> <p>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의 식품의 국내의 판로지원</p> <p>3. 농업인들의 경영·마케팅 및 법률에 대한 자문</p> <p>4. 기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p> <p>② 제1항의 사업에 대한 지원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p>	<p>판로지원 역시 영세한 식품사업자가 자력으로 개척하기 어려운 부분임. 그 밖에 농업인 등에 대한 경영, 마케팅, 농업 경영 관련 법률자문 등도 필요함. 그 밖에도 기업의 장점이 농업에 접목될 수 있는 사항들이 있음. 이들 각 사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자문하고 재정지원하는 것을 농림축산식품부가 수행하여야 할 기본 시책으로 설정한 것임(1항).</p> <p>·지원업무의 세부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정책수립과 집행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함.</p>
<p>제11조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 협약체결의 지원)</p> <p>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 등과 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협력 및 참여의 내용과 방법, 추진체계, 홍보 등이 포함된 협약체결을 지원할 수 있다.</p> <p>② 상생협력 협약체결의 세부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p>	<p>·상생협력을 지속적으로 담보하기 위해서는 참여 주체들이 상호 협약서를 맺고 그 약정에 기초하여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p> <p>·농림축산식품부는 협약서의 내용, 협약 추진, 홍보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2항).</p>
<p>제12조(독점규제 및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대한 특례)</p> <p>①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기업이 사전에 공개한 합리적인 기준에 맞추어 농업인등 및 식품사업자(“독점규제</p>	<p>·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에 대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실효성을 높이는 방법일 것임. 그러나 대기업의 참여가 기존의 농업인 등의 시장을 잠식하는 형태로 진행되지 않도록 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거나 시장을 확장하는 형태로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참여방법 등 세부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p>

<p>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제외한다)를 지원하는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p> <p>②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기업이 사전에 공개한 합리적인 기준에 맞추어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그 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기업집단에서 제외할 수 있다.</p>	<p>·대통령령으로 정한 세부기준에 따라 대기업 등이 농업과의 상생협력에 참여할 경우 대기업의 지원이 불공정거래에 해당되지 않도록 하고, 자본출자로 참여하는 농업회사법인 등이 독점규제법상의 기업집단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함. 다만 그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그 때마다의 실정에 맞추어 추진할 수 있게 함(1항, 2항).</p>
<p>제13조(농업과 기업 상생협력 실태조사)</p> <p>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하면 농업과 기업 상생협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농업인등, 식품사업자, 기업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p>	<p>·농업과 기업 간의 상생협력의 현황, 문제점 등에 대한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음. 그 임무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부여할 필요가 있음.</p>
<p>제14조(농업과 기업 상생협력지수의 산정·공표)</p> <p>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업과</p>	<p>·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은 제4조에서 설정한 상생협력의 대원칙인 자율성, 상호이익의 증진이 가능하도록 유도하고, 동시에 다양한 방법</p>

<p>농업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참여기업 및 협력기업의 상생협력의 수준을 평가하여 계량화한 농업과 기업 상생협력지수(이하 ‘상생협력지수’라 한다)를 산정하여 공표할 수 있다.</p> <p>② 상생협력지수의 산정 방법 및 공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p> <p>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상생협력추진협의회가 산정·공표하는 상생협력지수로 대체할 수 있다.</p>	<p>으로 창의적으로 상생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상생협력지수를 개발하여, 그 지수를 기준으로 모범이 되는 모델기업을 표창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를 위한 규정임.</p> <p>·상생협력지수는 상생협력추진협의회가 산정·공표하는 상생협력지수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제3항).</p>
<p>제15조(상생협력 우수기업 선정·지원)</p> <p>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과 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생협력 우수기업 및 상생협력 확산에 기여한 자(이하 ‘상생협력 우수기업 등’이라 한다)를 선정하고 포상하는 등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p> <p>② 상생협력 우수기업 등의 선정 방법 및 절차, 상생협력 우수기업 지원시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p>	<p>·기업들을 더 많이 농업과의 상생협력에 참여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이것이 자율성을 기초로 한 공유가치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여러 지원시책이 필요함.</p> <p>·이를 위한 방법은 ‘농업·기업 상생협력 기업’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에서부터, ‘농업·기업 상생협력 우수기업’ 또는 ‘농업·기업 상생협력 모범기업’ ‘농업·기업 상생협력 선도기업’ 등 각 특색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포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p> <p>·우수기업 선정이 또 다른 잠재적 규제로 전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p>

<p>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p>	<p>부령에서 우수기업의 유형과 표시방법, 포상방법 등을 정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임.</p>
<p>제16조(공공기관의 농업인등에 대한 협력 촉진)</p> <p>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매년 농업인등의 지원계획과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제출한 농업인등의 지원계획과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p> <p>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결과를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시 반영할 수 있다.</p> <p>④ 공공기관은 농업과 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담 지원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공공기관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자원으로써 농업과의 상생협력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을 것임.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 농업과의 상생협력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선도성에 부응하도록 하기 위해 이 규정을 두었음.</p>
<p>제17조(농식품 상생협력 추진본부의 설립)</p> <p>① 정부는 농업과 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식품 상생협력 추진본부(이하 ‘추진본부’이</p>	<p>·“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추진체계에서 실무집행기관은 대·중소기업상생협력재단이며, 이 재단에 성과공유제 확산추진본부를 두고 성과공유제에 관한 계약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 이 재단에 동반성</p>

<p>라 한다)을 설립한다.</p> <p>② 추진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 법에 따른 농업과 기업 간의 상생협력에 관한 기획 및 집행 2. 농업과 기업 간 협력사업의 개발 및 운영 지원 3. 제9조에 따른 기술협력 촉진사업의 관리·운영 및 평가 지원 4. 제19조부터 제23조에 따른 농업과 기업 간 거래의 공정화 지원 5. 농업인등과 참여기업 간 분쟁의 자율적 조정 지원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위탁하는 사업 <p>③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본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p> <p>⑤ 추진본부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p>	<p>장위원회를 두고 있음. 이런 모델을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에서도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p> <p>·전체적인 정책입안의 책임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더라도, 이를 집행하는 기관을 두는 것이 사업의 지속성과 전문성에 필수적이기 때문임. 더구나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과 관련된 관련 법률이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의 여러 법률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이들 간의 관계를 조율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도 집행기관이 있어야 할 것임.</p> <p>·이 법률안 제안에서는 대·중소기업상생협력재단을 모델로 하였지만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임무에는 차이가 있음.</p> <p>·특히 제2항 6호의 지정·위탁사업으로 성과공유제 확산추진기구 사업을 농식품 상생협력추진본부가 맡을 수도 있고, 상생협력 지수의 개발 등의 임무를 수행할 수도 있을 것임. 요컨대 이 법률안에 포함된 각종의 사업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임.</p>
<p>제18조(상생협력추진협의회의 설치)</p> <p>① 농업과 기업 간 상생협력과 관련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협력을 도출하고 상생협력의 문화를 조성 및 확산하기 위하여 추진본부에 상생협력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p>	<p>·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모델로 하여, 농식품 상생협력 추진본부의 산하에 상생협력추진협의회를 두어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협력을 도출하고자 함.</p> <p>·상생협력의 방법, 상생협력 기업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특히 표시와 포장 등) 등을 강구하기 위해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협력과 합</p>

<p>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p> <p>1. 상생협력지수의 산정 및 공표에 관한 사항</p> <p>2.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을 위해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의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p> <p>3. 그 밖에 상생협력 추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③ 협의회는 제2항의 업무를 정부기관이나 추진본부 등으로부터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수행한다.</p> <p>④ 협의회는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로 정한다.</p>	<p>의를 끌어내는 것이 필요함.</p> <p>·협의회는 재단 산하에 두지만,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하여 공신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함(3항).</p>
<p>제4장 농업과 기업 간 거래의 공정화</p> <p>제19조(표준계약서의 사용)</p> <p>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업이 농업인등과 거래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의 내용, 대금의 금액, 대금의 지급 방법, 지급기일, 검사 방법, 대금 등 계약내용 변경 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p>	<p>·농산물 관련 계약은 다른 유형의 계약과 달리 특수성이 있음. 환경적 요인에 의해 농산물의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정이 적절하게 계약에 반영될 필요가 있기 때문임. 동시에 농업인이 소농인 경우 계약 내용을 교섭할 대등한 관계에 없을 수 있음.</p> <p>·이런 사정을 감안하여 농산물거래에 적합한 표준계약서를 개발하여 기업과의 거래에서 활용될 수 있게 권장할 필요가 있음.</p> <p>·표준계약서의 활용은 자율성에 기반하여 활용하도록 하되, 상생협력지수의 산정에서 표준</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거래유형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개발하여 농업과 기업 간의 거래에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표준계약서에 포함될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p>	<p>계약서를 채택하는 것도 일정한 점수로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p>
<p>제20조(납품대금의 지급 등)</p> <p>① 농업인등에 대해 기업이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기일은 그 납품에 대한 검사 여부에 관계없이 물품 등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의 최단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p> <p>② 납품대금의 지급기일을 약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물품 등의 수령일을 그 대금의 지급기일로 정한 것으로 보며, 제1항을 위반하여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에는 물품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그 대금의 지급기일로 정한 것으로 본다.</p> <p>③ 기업이 납품대금을 60일이 지난 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p> <p>④ 기업이 납품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거나 어음대체결제 방식으</p>	<p>·이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에서 수탁-위탁 거래에는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동일한 규정을 두고 있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음.</p> <p>·농업인등과 기업 간의 거래 중 위 두 법이 적용되는 경우 동일한 효과가 생김. 이 규정은 위 두 법이 적용되지 않는 여타의 거래로서 농업인등과 기업 간의 거래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기업에 큰 부담이 되지 않음. 이 법에서의 기업은 영리회사이므로(위 법안 제2조 참조) 자연인이 농업인등과 거래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p> <p>·이 규정은 거래의 계약법적 효력만이 문제됨. 이를 위반하더라도 형사적 제재나 행정법상의 제재는 가해지지 않음.</p>

<p>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할인료를 농업인등에 지급하여야 한다.</p> <p>⑤ 기업이 물품의 하자 등을 이유로 농업인등에 적법한 항변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에 대해 대항할 수 있다.</p>	
<p>제21조(검사의 합리화)</p> <p>① 기업이 검사시설의 개선 및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의 자질 향상을 도모하고 객관적이며 타당성 있는 검사기준을 정하여 농업인등이 납품한 물품 등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검사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② 기업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불합격한 물품 등에 대하여는 그 불합격 사유를 즉시 문서로 농업인등에 통보하여야 한다.</p>	<p>·기업이 농업인등과 거래하면서 물품을 납품 받을 때 검사의 공정성을 기하도록 할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임. 이 규정이 기업에게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음. 오히려 거래의 공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기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임.</p>
<p>제22조(품질보장 등)</p> <p>① 농업인등은 시설을 개선하고 기술을 향상시켜 기업으로부터 생산을 위탁받은 식품의 품질을 개선하고 규격에 맞는 제품을 납품 기일 이내에 납품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② 농업인등은 식품을 표준화하고 합리적인 원가계산제도에 따라 적</p>	<p>·기업과 거래하는 농업인 등의 주의의무를 규정한 것임. 일반 거래에서 계약의 효력으로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내용의 것이므로 농업인등에게 부담이 되지 않음.</p>

<p>정한 가격 결정과 품질관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p>	
<p>제22조(품질보장 등)</p> <p>① 농업인등은 시설을 개선하고 기술을 향상시켜 기업으로부터 생산을 위탁받은 식품의 품질을 개선하고 규격에 맞는 제품을 납품 기일 이내에 납품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② 농업인등은 식품을 표준화하고 합리적인 원가계산제도에 따라 적정한 가격 결정과 품질관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p>	
<p>제23조(준수사항)</p> <p>① 기업은 농업인등에 식품의 생산을 위탁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업인등이 책임질 사유가 없는 데도 식품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대금을 깎는 행위 2. 대금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3. 농업인등이 납품하는 식품과 같은 종류이거나 유사한 식품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대금을 정하는 행위 4. 식품의 생산을 위탁한 후 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과 농업인등의 거래에서 상호 준수하여야 할 공정거래의 내용을 적어 둔 것이며, 어느 일방에게 부담이 되는 내용이 아님. ·기업 간 거래에서도 계약의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며, 불공정거래를 방지하는 여러 특별법이 있음(“약관규제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이 규정은 기업과 농업 간의 거래에서 준수하여야 할 공정거래의 표준적인 내용을 규정한 것임.

상황 변동 등의 이유로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받은 기업이 같은 이유로 농업인등에 추가비용이 드는데도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식품대금을 증액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6. 품질의 유지 또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업이 지정하는 물품 등을 강제로 구매하게 하는 행위

6. 대금을 지급할 때 그 대금의 지급기일까지 금융기관으로부터 할인을 받기 어려운 어음을 지급하는 행위

7. 식품에 흠이 없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물량을 통상적으로 발주하는 수량보다 현저히 감소시키거나 발주를 중단하는 행위

8. 대금을 지급하는 대신 기업이 제조하는 제품을 받을 것을 요구하는 행위

9. 기업이 수출용으로 농업인등에 발주한 식품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내국신용장 개설을 기피하는 행위

10. 식품의 생산을 의뢰한 후 생산

<p>된 식품에 대한 발주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하는 행위</p> <p>11. 농업인등이 납품한 물품에 대한 검사를 할 때 객관적 타당성이 결여된 검사기준을 정하는 행위</p> <p>12. 기업이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해당 농업인등이 그 사실을 관계 기관에 고지하였다는 이유로 거래 물량을 줄이거나 거래의 정지 또는 그 밖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p> <p>② 농업인등은 기업으로부터 식품의 생산을 위탁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1. 기업으로부터 위탁받은 식품의 품질·성능 또는 납품기일에 관한 약정을 위반하는 행위</p> <p>2. 납품할 식품의 가격을 부당하게 인상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p> <p>3. 그 밖에 거래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p>	
<p>제24조(농식품 상생협력 추진본부에 대한 조치신청 등)</p> <p>① 농업인등은 기업이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 또는 제22조제</p>	<p>·사인 간의 분쟁이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조정, 알선, 중재 등 비사법적 방법 (Alternative Disputes Resolutions)을 채택하는 것이 점차 선호되고 있음.</p>

<p>1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제17조에 따라 농식품 상생협력 추진본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p> <p>② 농식품 상생협력 추진본부는 제1항의 요구를 받으면 우선적으로 그 내용을 검토하여 당사자 간의 분쟁을 조정에 회부하거나 법률 위반이 있을 경우 해당 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과 기업 간의 분쟁에서도 비사법적 분쟁 해결의 방법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농식품 상생협력 추진본부는 구속력 있는 분쟁해결수단을 제공하지 않지만, 당사자의 관계를 알선, 조정할 수 있도록 함.
<p>제25조(농업과 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 개선)</p> <p>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과 기업 간의 거래 과정에서 기업이 제18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을 이행하고 있는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기업에 개선을 요구하고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현금결제 확대 등 결제조건이 양호하고 공정한 거래 관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평가된 기업에 대하여는 정부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포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과 기업 간의 분쟁이 있을 때 이를 구속력 있게 해결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정부가 개선방안을 권고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함. 이는 행정지도의 형식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임. ·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행정지도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둔 것임. · 권고를 따르도록 하기 위해 제재를 가하기 보다는 다양한 포상 및 지원을 함으로써 권고수용을 유도할 수 있을 것임. 가령 이런 항목도 상생협력지수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임.

<p>제26조(분쟁의 조정)</p> <p>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업과 농업인등 간에 분쟁이 생겼을 때에는 기업·농업인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식품 상생협력 추진본부에 분쟁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p> <p>1. 제19조에 따른 약정서 및 물품 수령증에 관한 사항</p> <p>2. 제20조에 따른 납품대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p> <p>3. 제21조에 따른 물품 등의 검사에 관한 사항</p> <p>4. 제23조에 따른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에 관한 사항</p> <p>(제1안)</p> <p>② 농식품 상생협력 추진본부는 양 당사자의 조정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농식품 상생협력 추진본부가 한 권고에 대해 즉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양 당사자가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간주한다.</p> <p>③ 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 권고의 절차, 즉시 이의의 기간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분쟁의 일방 당사자가 조정을 원하고 상대방도 이에 응한다면 분쟁조정의를 장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농식품 상생협력 추진본부가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임.</p> <p>·제1항은 분쟁조정대상을 정한 것임.</p> <p>·분쟁조정신청이 있을 때 그 이후의 절차에서 강제성 있게 하는 방식이 있고(“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취하는 방식), 보다 더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이 있음.</p> <p>·제1안으로는 자율적 처리방식(후자)을, 제2안으로는 전자를 각각 규정하였음.</p>
---	--

<p>(제2안)</p> <p>② 농식품 상생협력 추진본부는 제1항에 따른 조정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검토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기업·농업인등에 그 시정을 권고하거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p> <p>③ 농식품 상생협력 추진본부는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기업·농업인등이 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그 명칭 및 요지를 공표하여야 한다.</p> <p>④ 제2항에 따른 검토 및 시정권고나 시정명령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5장 보칙</p> <p>제27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p> <p>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식품 상생협력 추진본부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p>	
<p>제28조(서류의 비치)</p> <p>① 기업, 농업인등은 농업과 기업</p>	<p>·모든 농산물 거래를 서류화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농업인 등과 기업 간의 거래에 관하여</p>

<p>간의 거래에 관한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서류의 범위 및 비치기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p>	<p>만 서류화하도록 규정한 것임.</p>
<p>제29조(자료의 제출 등)</p> <p>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 기업 또는 농업인등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사업장 및 공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시설 및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p> <p>1. 제19조부터 제23조에 따른 거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경우</p> <p>2. 그 밖에 거래의 공정화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농식품 상생협력 추진본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p> <p>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 일시, 조사 목적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조사하여야 하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p>	<p>·농업인등과 기업의 거래의 공정화에 관하여 실태를 파악하거나 분쟁에 관하여 조사를 하여야 할 경우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법에 규정하고자 한 것임.</p> <p>· 다만 그 조사는 피조사자의 업무에 지장이 가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해 제2항을 둔 것임. 제3항은 조사의 절차를 규정한 것임.</p>

<p>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그 공무원의 성명, 출입시간, 출입 목적 등을 적은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p>	
<p>제6장 벌칙</p> <p>제30조(벌칙)</p> <p>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제26조제3항 본문에 따른 공표 후 1개월이 지날 때까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p>	<p>·벌칙 규정은 분쟁조정 신청이 있을 때 그 이후의 절차에 강제성을 둘 경우 벌칙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벌칙 규정을 둔 것임. 즉 제26조에 관하여 제2안에 따른 것임.</p> <p>·그러나 분쟁조정 절차를 자율화한다면, 벌칙 규정은 불필요함.</p>
<p>제31조(양벌규정)</p> <p>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벌칙 규정은 분쟁조정 신청이 있을 때 그 이후의 절차에 강제성을 둘 경우 벌칙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벌칙 규정을 둔 것임. 즉 제26조에 관하여 제2안에 따른 것임.</p> <p>·그러나 분쟁조정 절차를 자율화한다면, 벌칙 규정은 불필요함.</p>

<p>제32조(과태료)</p> <p>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8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그 서류에 거짓 사항을 적은 자</p> <p>2. 제29조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p> <p>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p>	<p>·농식품 상생협력 추진본부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벌로써 제재를 가하고자 함.</p>
<p>부칙</p> <p>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참고 문헌

- 강신겸, 황명철. 2004. 「농업 농촌발전과 기업의 역할」. 삼성경제연구소.
- 강정석, 이환성, 이화진. 2012. 「공생발전 성과 모니터·환류 방안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강충한 외. 2014. “농촌을 대상으로 한 공유가치창출(CSV) 활동의 유형화”. 「벤처창업연구」 제9권 제6호. pp.171-181.
- 고상두, 황지환. 2012. 「공생발전의 이론적 위상 정립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공정거래위원회. 2015. ‘동반성장지수 평가결과 발표 보도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2015.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 (하도급분야)’.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 국가통계포털(<http://www.kosis.kr>)
- 권준철, 장영하, 최용전. 2013. “상생협력 경제생태계를 위한 공정계약관리제도 제안 - 공정 계약관련 신 공증 및 소송대행제도 제안” 「한국정보통신설비학회 학술대회 발표대회논문집」. pp.100-103.
- 김관수 외. 2012. 「식품기업의 국내산 원료농산물 안정적 조달시스템 구축방안」.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 김금숙. 201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유형별 사례분석”. 「의사결정학연구」 제19권 제1호. pp.111-130.
- 김기찬 외. 2006.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이론적 모형 설계-건강하고 지속가능한 기업생태계 구축”. 「중소기업연구」 제28권 제2호. pp.381-410.
- 김기찬 외. 2012. “동반성장 정책 평가 및 향후 동반성장 추진방안 연구”.
- 김동환, 류상모. 2013. “대형유통업체 영업규제가 농수산업에 미치는 영향”. 한국유통학회 동계학술발표대회 논문.
- 김미복, 김수석. 2011. “농업부문 조세체계와 개선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용렬. 2011.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지원 실효성 확보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용렬. 2011. “지역단위의 농공상 연대방안과 확대가능성”.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의영, 장승진. 2012. 「공생발전 구현을 위한 정부·산업·학계·시민 참여협력방안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김재은 외. 2012. 「공유가치창출 중점추진방안 연구」. 지식경제부.
- 김창현, 박종택, 변필성, 구형수. 2012. 「인구저성장시대의 도·농 상생발전 전략 연구」. 국토연구원.

- 김태곤, 최병옥, 양찬영. 2013. 「기업의 농업참여 실태와 상생협력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현철, 전인우. 2011.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과 생산성의 관계”. 『생산성논집』 제25권 제1호. pp.197-224.
- 농림축산식품부. 각 연도.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
- 농림축산식품부. 2014. “6차산업화 지원정책 매뉴얼”.
- 농림축산식품부, 중소기업청. 2012.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설명회 자료’.
- 농림축산식품 사업시행지침서(<http://www.manual.agrix.go.kr>).
- 동반성장위원회. 2015.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투자재원’.
- 동반성장위원회 백서. 2012.
- 류인철, 강한수, 최용석. “2012. SSM과 중소상인 상생 협력 방안의 연구”. 『지역발전연구』 제12권 제1호. pp.1-35.
- 문정훈, 정한나라, 이동민, 이성철, 조종표. 2013.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과 산지 농·축산인 공동마케팅을 통한 상생 방안 연구”. 농림축산식품부.
- 맹경, 김혁. 2014.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정부역할 유형 분석 및 적용- 중국 정부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18권 제2호. pp.117-142.
- 민승규, 최숙희, 심창섭. 2006. 「농촌 자생력 강화를 위한 기업의 역할」. 삼성경제연구소.
- 박병진, 김도희. 2013. “공유가치창출(CSV) 관점에서 본 CJ제일제당의 동반성장 추진사례”. 『Korea Business Review』 제17권 제2호. pp.73-99.
- 박윤희 외. 2012. “교육훈련을 통한 대기업 및 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방안”.
- 백종현, 권순범, 최병구. 2012. “대기업-중소기업의 상생협력 정책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이벤트연구방법론을 기반으로”. 『지식경영연구』 제13권 제5호. pp.139-160.
- 산업연구원. 2015.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지원실태와 육성과제”. 산업경제정보.
- 산업정책연구원. 2012. “공유가치창출 중점추진방안 연구”. 지식경제부.
- 산업통상자원부. 2015. ‘2015년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시행계획 고시’.
- 송창석 외. 2012. 「국내 대·중소기업간 공생발전 촉진, 방해 요인에 대한 사례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안병일. 2010. “지역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방향”. 『농업생명과학연구』 제44권 제2호. pp.75-84.
- 양승룡. 2014. “무역이익공유제: 쟁점과 추진방향”. 국회세미나.
- 유창조. 2014. “사회공헌활동의 진화과정과 경영성과에 관한 종합 고찰”. 『마케팅연구』 제29권 제2호. pp.55-78.
- 이동민 외. 2013. “농식품 분야의 공동창업을 통한 공유가치창출(CSV) 사례연구”. 『벤처창업연구』 제8권 제2호.

- 이동주 외. 2012.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협력적 HRD Model 개발 연구”.
- 이문성, 박상범, 전인우. 2011.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 협력동인, 경영성과의 상호관련성 분석”. 『한국물류학회지』 제21권 제5호. pp.347-371.
- 이상창. 2011. 『기업의 전략적 사회공헌활동을 통한 도농교류 활성화 계획』.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종열, 서진완, 정준호. 2012. “계층분석법(AHP)을 활용한 지역연계협력사업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연구』 제16권 제1호. pp.411-429.
- 이종욱, 김기찬, 송창석, 박지윤. 2009. 『기업생태계 경쟁력과 상생협력 증진 방안』. 지식경제부.
- 이준일. 2012. “공생발전과 헌법”. 『공법학연구』 제13권 제3호. pp.3-30.
- 임영균, 이정희. 2006. “대형유통점과 중소유통점 간의 상생협력- 갈등이슈와 규제방안의 검토를 중심으로”. 『한국유통학회 하계통합학술대회 발표논문집』. pp.3-20.
- 임정빈 외. 2012. “식품 대·중소기업과 유통업체간 상생발전방안”. 서울대학교 산한협력단.
- 전인우 외. 2007. 『업종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지수개발 선행연구』. 산업통상자원부.
- 정기화. 2013. “공생발전을 위한 법의 역할”. 『저스티스』 제134권 제2호. pp.239-260
- 정완진. 2011. “상생협력을 위한 협력지수의 개발과 활용”. 『한국환경경영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pp.29-48.
- 정영태. 2013.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전략”. 동반성장위원회.
- 주현 외. 2011.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정책과제”.
- 최은성, 박은진, 안영훈. 2012. 『공생발전을 위한 보호, 규제 등 제도의 합리화방안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각 연도. 『농림수산물수출입 동향 및 통계』.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4. 『식품산업 원료소비 실태조사』.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5. 『식품산업주요지표』.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4. 『식품소비행태조사』.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3. 『식품수급표』.
- 한국유통물류진흥원. 2007. 『유통분야 상생협력 프로그램 개발 연구』. 산업통상자원부.
- 한정화, 이종욱, 김기찬, 강은구. 2006.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발전모델』. 산업통상자원부.
- 현대호, 권건보. 2012. 『공생발전의 체계적 추진에 관한 입법개선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 Alfranca O., Huffman W. E. 2003. “Aggregate private R&D investments in agriculture: The role of incentives, public policies, and institutions”.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52(1):1-21.
- Campbell J. L. 2007. “Why would corporations behave in socially responsible ways? An institutional theory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Th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32(3):946-967.

- Coase R. H. 1937. "The Nature of the Firm". *Economica*: pp.386-405.
- Coase R. H. 1952. "The Nature of the Firm", in *Readings in Price Theory*, Stigler and Boulding, editors . Chicago, R. D. Irwin.
- Crane, A., Palazzo, G., Spence, L. J. 2014. "Contesting the value of creating shared value". *California management* 56(2):130-153.
- FSG. 2011(Retrieved 2013). "Creating shared value in action". from <http://www.fsg.org/>.
<http://www.bcorporation.net>
<https://www.gov.uk/government/news/changes-to-the-dividend-and-interest-caps>.
<http://www.maff.go.jp>
<http://www.nestle.co.kr>
- Kremer M., Zwane A. P. 2002. "Encouraging technical progress in tropical agriculture"
 Human Development Report 2011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
- Kvistgaard L. T. 2013. "Creating Shared Value: A post-positivistic analysis of Michel E. Porter's meta-theoretical eclecticism". Copenhagen Business School.
- Matten D., Moon J. 2008. "Implicit and explicit CSR: A Conceptual Framework for a Comparative Understanding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Th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33(2):404-424.
- Matthey H., Royer JS. 2001. "Testing the impact of corporate farming restriction on the Nebraska hog industry". *Agricultural Economics Working papers* 33.
- Min-Dong Paul Lee. 2008. "A review of the theories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ts evolutionary path and the road ahead". *International Journal of Management Reviews* 10(1):53-73.
- Naseem A., Spielman D. J., Omamo S. W. 2010. "Private sector investment in R&D: A review of policy options to promote its growth in developing-country agriculture". *Agribusiness* 26(1):143-173.
- Nathan Wittmacck. 2006. "Should Corporate Farming be Limited in the United States?: An Economic Perspective". *Major Themes in Economics Spring* 2006:45-59.
- National Agricultural Law Center(<http://nationalaglawcenter.org>)
- Porter, M. E. and Kramer, M. R. 2011. "The big idea: Creating Shared Value". *Harvard Business Review* 89(Jan-Feb):62-77.
- Sako. M. 1992. "Prices, quantity and trust: inter-firm relations in Britain and Japan".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C2015-28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 제도화 방안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인 쇄 2015. 11.
발 행 2015. 11.
발행인 최 세 균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061-820-2000 <http://www.krei.re.kr>
인 쇄 세일포커스
02-2275-6894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